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과 2014년 9월 계약 체결한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안 성 아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연 구 진

책임연구원

안성아(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이승엽(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라도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영덕(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이재박(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강사)

연구보조원

최영한(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

김찬미(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이승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

한지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

문다은(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학사 과정)

CONTENTS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19
2. 연구 목적 ····· 21
3. 조사범위 ····· 22
   가. 지원주체 범위 ····· 22
   나. 장르 범위 ····· 22
   다. 사업 범위 ····· 23
4. 조사절차 ····· 23
   가. 공공부문 조사절차 ····· 24
   나. 민간부문 조사절차 ····· 24

제2장 예술지원의 근거와 메커니즘

1. 예술지원의 근거와 논리 ····· 27
   가. 공공지원의 이론적 근거 ····· 27
   나. 민간지원의 이론적 근거 ····· 29
2. 예술지원의 재원 구조 ····· 31
   가. 공공재원 ····· 31
   나. 민간재원 ····· 34
3. 예술지원의 주체 ····· 36
   가. 중앙정부 ····· 36
   나. 지방자치단체 ····· 43
   다. 민간 ····· 45
4. 예술지원의 유형 ····· 49
   가. 지원대상에 따른 유형 ····· 49
   나. 지원목적에 의한 유형 ····· 49
   다. 문화예술의 생태 구조에 따른 유형 ····· 50
   라. 지원방식에 의한 유형 ····· 51

제3장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1. 개요 ····· 55
2. 공공부문 지원 체계 ····· 55
3. 조사범위 ····· 57
   가. 지원주체 범위 ····· 57
   나. 장르 범위 ····· 58
   다. 사업 범위 ····· 59
   라. 재원(예산내역) 범위 ····· 63
4. 자료수집 ····· 64
5. 규모 산출 방법 ····· 66
6. 2013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 ····· 67
   가. 총규모 ····· 67
   나. 지원 구조 ····· 67
   다. 사업유형별 규모 ····· 70
   라. 사업유형별 실행주체 ····· 88
   마. 지역별 규모 ····· 94
   바. 창작 유형 장르 분석 ····· 97
7. 2012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 ····· 98
   가. 총규모 ····· 98
   나. 사업유형별 규모 ····· 99
   다. 사업유형별 실행주체 ····· 117
8. 2012년, 2013년 지원규모 비교 ····· 123
   가. 주체별 비교 ····· 123
   나. 유형별 비교 ····· 124
9. 수혜현황 ····· 125
   가. 조사범위 ····· 125
   나. 사업유형별 수혜현황 ····· 126
10.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 129
   가. 조사방법 ····· 129
   나. 조사결과 ····· 129

제4장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1. 개요 ····· 137
   가. 조사목적 ····· 137
   나. 조사대상 ····· 137
2. 민간지원규모 관련 보고서 고찰 ····· 138
3. 조사방법 ····· 144
   가. 조사방법 ····· 144
   나. 조사범위 ····· 144
4.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 146
   가. 민간지원 사업유형별 규모 ····· 146
   나. 총 지원규모 ····· 147
   다. 민간지원 유형 및 장르별 규모 ····· 148
   라. 민간지원 지원방식별 규모 ····· 150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조사의 의미 ····· 155
2. 조사결과의 의미 ····· 158
3. 정책적 시사점 ····· 167
4.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 168

붙임 1. 공공기관 예산서 조사대상 ····· 170

참고문헌 ····· 178

표 목차

제2장 | 예술지원의 근거와 메커니즘

표 2-1 2014 국가 예산 분야 및 세부 내역 ····· 31
표 2-2 문화체육관광부 최근5년 간 부문별 재정추이 ····· 33
표 2-3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 33
표 2-4 문예진흥기금 최근 5년간 추이 ····· 34
표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크라우드펀딩 현황 ·· 35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 37
표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지원사업 ····· 39
표 2-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지원사업 ····· 40
표 2-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4 지원사업 ····· 41
표 2-10 예술경영지원센터 2014 지원사업 ····· 42
표 2-11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 43
표 2-12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사업 예 ····· 44
표 2-13 지역별 문화재단 현황 ····· 45
표 2-14 상위 30대 그룹 주요 재단 및 사업 ····· 46
표 2-15 2013 한국메세나협회 주요 사업 내역 ····· 47

제3장 |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표 3-1 조사대상 지원주체 ····· 58
표 3-2 사업유형 구분 ····· 61
표 3-3 조사대상 기관 ····· 64
표 3-4 예산서 구조 ····· 64
표 3-5 전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71
표 3-6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75
표 3-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79
표 3-8 광역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83
표 3-9 기초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85
표 3-10 시·도문화재단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87
표 3-11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88
표 3-12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89
표 3-13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90
표 3-14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91
표 3-15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92
표 3-16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93
표 3-17 전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100
표 3-18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104
표 3-19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108
표 3-20 광역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112
표 3-21 기초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114
표 3-22 시·도문화재단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 116
표 3-23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117
표 3-24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118
표 3-25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119
표 3-26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120
표 3-27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121
표 3-28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 122
표 3-29 사업유형별 수혜자 유형 ····· 125
표 3-30 수혜자 조사대상 기관 ····· 126
표 3-31 창작사업 수혜현황 ····· 126
표 3-32 향유사업 수혜현황 ····· 127
표 3-33 교육사업 수혜현황 ····· 127
표 3-34 예술인 복지사업 수혜현황 ····· 128
표 3-35 사업유형별 담당 부처 및 소관기관 ····· 129

제4장 |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표 4-1 상위 30대 그룹 주요 재단 및 사업 ····· 139
표 4-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지출현황 ····· 140
표 4-3 분야별 기부현황-기부금 ····· 141
표 4-4 2013년도 한국메세나협회 직접조사 기업의 '자체 지원 현황' ····· 143
표 4-5 2013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지원 현황 ····· 143
표 4-6 한국메세나협회 조사 사업유형 ····· 145
표 4-7 민간지원 세부사업별 비중 ····· 147
표 4-8 2013 민간기업 지원규모 ····· 148
표 4-9 기업, 재단의 장르별 지원규모 ····· 149
표 4-10 사업유형 및 장르별 지원 현황 ····· 150
표 4-11 지원유형별 민간지원규모 ····· 151

제5장 | 정책적 시사점

표 5-1 조사대상 기관 ····· 155
표 5-2 예술지원 총규모 ····· 158
표 5-3 공공부문 주체별 창작지원 현황 ····· 160
표 5-4 공공부문 주체별 교육 및 향유 지원 현황 ···· 160
표 5-5 예술지원사업의 1차 및 2차 수혜자(안) ····· 169

그림 목차

제1장 | 서론

그림 1-1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재정 증가 추이 ····· 19
그림 1-2 민간기업 문화예술지원 추이 ····· 20
그림 1-3 조사절차도 ····· 23

제2장 | 예술지원의 근거와 메커니즘

그림 2-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기금 구조 ····· 32
그림 2-2 민간재원 구조 ····· 34
그림 2-3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 36
그림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38
그림 2-5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2014년 2월 기준) ····· 44
그림 2-6 문화접대비 제도 문화활동비 지출액 ····· 48

제3장 |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그림 3-1 공공예술지원 전달 흐름 ····· 56
그림 3-2 예술지원체계 3단계 모형 ····· 56
그림 3-3 문화예술 장르 구분 ····· 58
그림 3-4 문화예술지원사업 유형 ····· 59
그림 3-5 공공부분 조사대상(기관 및 사업) ····· 60
그림 3-6 공공부문 조사절차 ····· 65
그림 3-7 주체 간 예산 이전 구조 ····· 66
그림 3-8 2013 총 지원규모 ····· 67
그림 3-9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 67
그림 3-10 예산 흐름도 ····· 68
그림 3-11 전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 70
그림 3-12 전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 70
그림 3-1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 ····· 72
그림 3-14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 (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 72
그림 3-15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 73
그림 3-16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 73
그림 3-17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 74
그림 3-18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 74
그림 3-19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 ·· 76
그림 3-20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 (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 76
그림 3-21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 77
그림 3-22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 77
그림 3-23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 78
그림 3-24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 78
그림 3-25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 80
그림 3-26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 80
그림 3-27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 81
그림 3-28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 81
그림 3-29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 82
그림 3-30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 82
그림 3-31 기초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 84
그림 3-32 기초자치단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 84
그림 3-33 시·도문화재단 사업 중분류 유형화 ····· 86
그림 3-34 시·도문화재단 사업 소분류 유형화 ····· 86
그림 3-35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88
그림 3-36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89
그림 3-37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90
그림 3-38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91
그림 3-39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92
그림 3-4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93
그림 3-41 지역별 규모 분석 ····· 94
그림 3-42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합계) 규모 분석 ····· 95
그림 3-43 광역(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규모 분석 ·· 96
그림 3-44 기초자치단체 규모 분석 ····· 96
그림 3-45 창작지원 장르별 분석 ····· 97
그림 3-46 2012 총 지원규모 ····· 98
그림 3-47 전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 99
그림 3-48 전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 99
그림 3-49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01
그림 3-50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 (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 101
그림 3-51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02

그림 3-52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 102
그림 3-53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 103
그림 3-54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 103
그림 3-55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 105
그림 3-56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 (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 105
그림 3-57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06
그림 3-58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 106
그림 3-59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 107
그림 3-60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 107
그림 3-61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09
그림 3-62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 109
그림 3-63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10
그림 3-64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 110
그림 3-65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 111
그림 3-66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 111
그림 3-67 기초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13
그림 3-68 기초자치단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 113
그림 3-69 시·도문화재단 사업 중분류 유형화 ····· 115
그림 3-70 시·도문화재단 사업 소분류 유형화 ····· 115
그림 3-71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117
그림 3-72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118
그림 3-73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119
그림 3-74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120
그림 3-75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121
그림 3-76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 122
그림 3-77 주체별 사업실행비 ····· 123
그림 3-78 중분류 유형별 사업실행비 ····· 124
그림 3-79 소분류 유형별 사업실행비 ····· 124

제4장 |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그림 4-1 민간부문 조사절차 ····· 138
그림 4-2 2012년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비율 ····· 139
그림 4-3 문화진흥 기부대상 ····· 142
그림 4-4 문화진흥 기부분야 ····· 142
그림 4-5 민간지원 사업유형별 비중 ····· 146
그림 4-6 기업과 재단 지원 비중 ····· 148
그림 4-7 세부유형별 민간지원규모 ····· 149
그림 4-8 지원유형별 민간지원규모 ····· 150

제5장 | 정책적 시사점

그림 5-1 공공 및 민간부문 예술지원 흐름도 ····· 156
그림 5-2 문체부를 중심으로 본 주요 예술지원사업 흐름도 ····· 157
그림 5-3 총 지원규모의 변화 ····· 158
그림 5-4 주체별 사업실행비 ····· 159
그림 5-5 공공부문의 유형별 예술지원 분포 ····· 159
그림 5-6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분포로 본 자체지출 (이전비 포함) ····· 160
그림 5-7 민간부문 예술지원 형태 ····· 161
그림 5-8 주체별 공공투입과 시장지원 비교 ····· 161
그림 5-9 주체별 시장지원 분석 ····· 162
그림 5-10 기업과 재단 지원 비중 ····· 163
그림 5-11 주체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교 분석 ····· 163
그림 5-12 주체별 하드웨어 건립과 하드웨어 운영 비교 분석 ····· 164
그림 5-13 주체별 하드웨어 건립/운영/지원 분석 ····· 165
그림 5-14 주체별 소프트웨어 분석 ····· 165
그림 5-15 주체별 축제운영과 축제지원 비교 분석 ····· 166
그림 5-16 주체별 축제운영/지원 분석 ····· 167

요약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4. 민간부분 예술지원 현황
5. 정책적 시사점

요약

1. 연구 배경

가. 문화예술지원규모 확대

□ 공공지원규모 확대

○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문화예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013)로 다른 분야 대비 높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연평균 증가율 8.6%, 2008~2013)

○ 지자체에서도 1997년 경기문화재단 설립 이후 현재 시·도문화재단 13개, 기초권 문화재단 46개로 예술지원기관이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초권 재단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민간지원규모 확대

○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2000년에 600억 수준에서 2010년 대 들어 1,600억 수준으로 증가함. 2012년에 비해 2013년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한 기업의 수 및 지원규모도 증가세를 보임

나. 공공·민간 총규모 지표 부재

□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총규모 지표의 부재

○ 지원규모 및 사업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예술지원의 내용 및 총규모를 대변하는 객관적 지표는 부족함

○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2014년 1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과 지역,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기초통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임

2. 연구 목적

가. 총규모 및 지원체계 파악

□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총규모와 지원체계 파악

○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이전,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총규모 및 예산 지원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공공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문화재단 등 여러 행정 레벨과 사업 주체가 얽혀 있음

– 민간 부분은 기업과 재단 간 지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고 자료가 비공개인 경우가 많음

○ 이에 공공·민간의 전체 문화예술지원 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총 지원규모 및 사업내용을 분석하고자 함. 공공의 경우에는 재원의 출처 파악, 기관 간 관계, 수혜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서 지원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정책적 시사점 제공

□ 공공·민간 예술지원의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파악

○ 2012, 2013년 공공·민간 영역의 주요 문화예술지원사업 규모 및 사업유형 조사를 통하여 국내 문화예술지원의 전체 규모 및 사업내용 파악

○ 지원주체별, 사업별, 장르별 지원규모 파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예술지원의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 마련

3.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가. 공공지원체계

□ 공공부문지원체계 분석 프레임

○ 예술지원주체의 역할에 따라 '예산 편성', '지원/관리', '집행'으로 구분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을 레벨1, 사업 지원기관을 레벨2, 집행기관을 레벨3로 유형화시킴

– 현재 기초문화재단은 시설관리 성격이 강해 레벨3에 포함시킴

그림 | 공공예술지원 전달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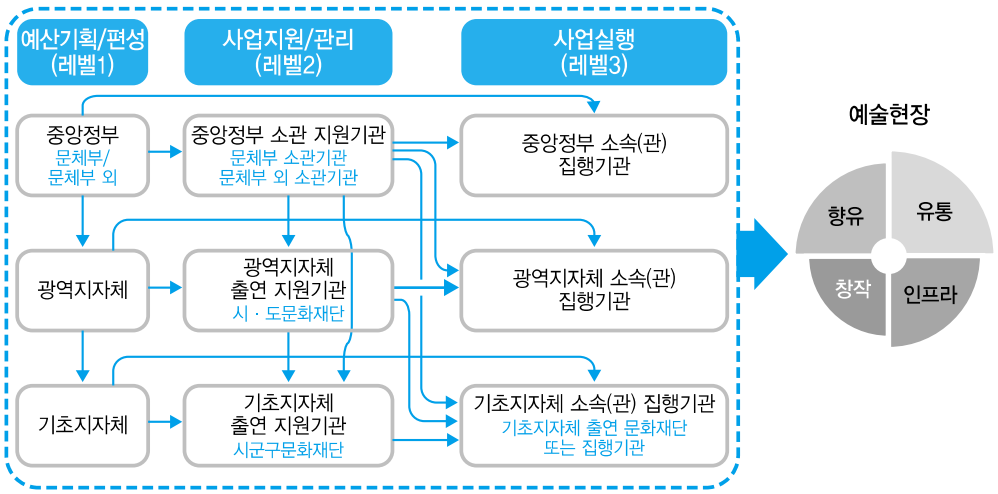

나. 조사범위

□ 지원주체 범위

○ 위 지원체계 중 조사범위는 레벨1과 레벨2에 속한 기관으로 한정

– 레벨3의 기관들은 상위 기관에 예결산 보고를 하므로 조사범위 내 기관을 통해 레벨3의 지원내역 파악 가능함

□ 사업범위

○ 예술지원 목적 사업과 예술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이 포함되며, 타목적 지원사업(예. 재래시장 살리기, 도시재생 등)은 제외

○ 구체적으로 '창작', '유통/매개', '교육 및 향유', '예술인 복지',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됨

표 | 사업유형 구분

창작지원	작품(프로그램)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예술인복지지원
	단체(운영)지원		전문인력양성
	예술인지원	**하드웨어 건립**	공연장건립
	레지던시		미술관건립
유통/매개 지원	공연장지원		기타기반시설건립
	미술관지원		복합시설건립
	기타기반시설지원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공연장운영
	축제지원		미술관운영
	국제교류지원		기타기반시설운영
	컨설팅		공연단체운영
	정보소통		축제운영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향유지원		공공예술기관지원
	생활예술지원		예술교육기관지원
	문화예술교육	**기타**	기타

□ 장르범위

○ 예술 장르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관련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박물관, 도서관, 콘텐츠, 문화재 등은 제외

○ 단, 향유사업의 경우에는 콘텐츠도 포함됨

□ 재원(예산내역) 범위

○ 문체부 예산서상 문화예술부문 중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며, 영화발전기금 등은 제외 (문체부 예산서상 문화예술부문 1,746,138백만 원 중 760,563백만 원(43.6%)에 해당됨)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부서 하위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 문화예술과(국), 문화예술정책과(국) 등 문화예술과 하위 사업을 모집단으로 두고 사업별 예산을 파악하였음(단, 시설(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 예산이 타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함)

다. 조사방법

□ 세출예산서 기준 지원사업 조사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등 265개 예술지원기관의 세출예산서(본 예산서 기준)를 전수 조사,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선별, 해당 예산 파악

○ 수혜현황 자료는 문체부 소관기관과 광역문화재단(레벨2 기관)에 대해서 공개자료 또는 자료 요청을 통해 수집함

□ 지원규모 추정

그림 | 총 지원규모 추정 방법

총 지원규모 = 문체부 직접사업 예산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직접사업 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 시·도문화재단 자체사업 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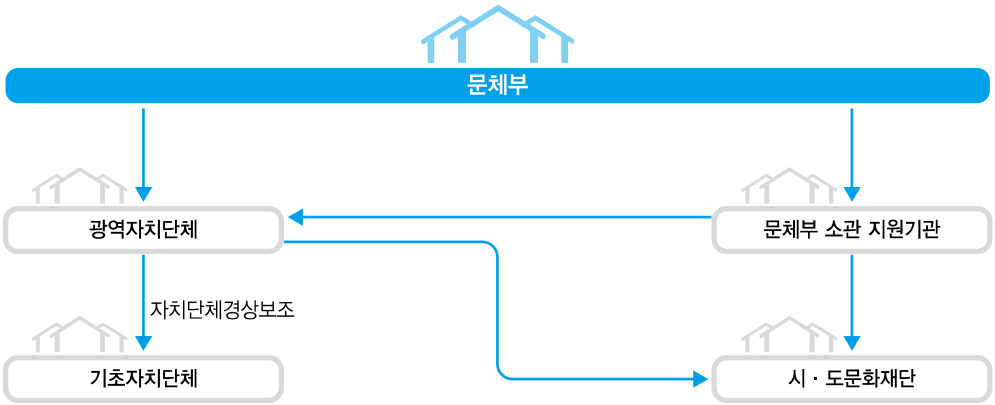

○ 총 지원규모는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별 지원액을 지원주체별로 합산한 후 기관 별 중복되는 예산(예. 경상보조, 민간위탁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계

라.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 총규모

○ 2013년 공공지원 총규모는 2조 348억 원, 2012년 공공지원 총규모는 1조 8,355억 원으로 2013년에 10.9% 증가함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문체부 14.7% 증가, 광역자치단체 3.5% 감소, 기초자치단체 11.7% 증가,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33.9% 증가, 시·도문화재단 11.9% 증가함

□ 지원 구조

그림 |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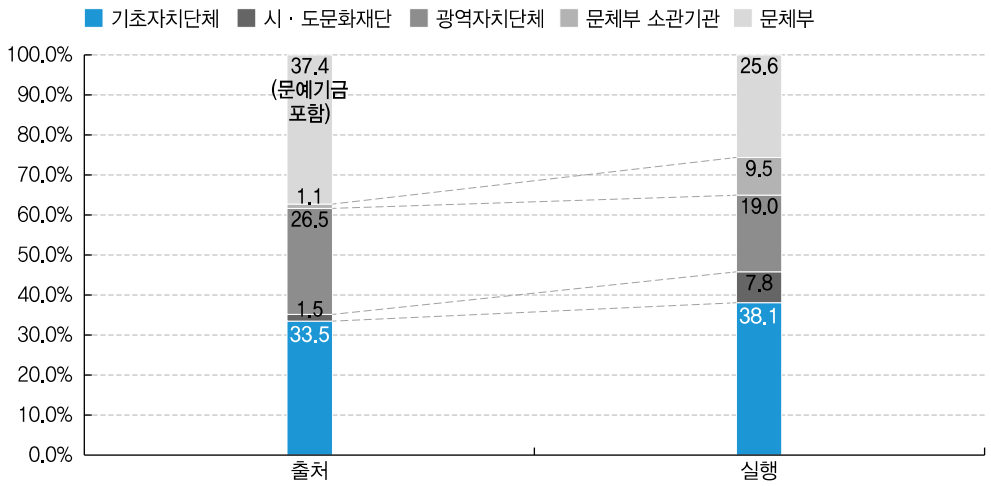

○ 2013년 총규모인 2조 348억 원 중 37.4%는 문체부(문예기금 포함)가 부담하였으며, 25.6%는 직접 실행

– 재원의 출처 측면에서는 문체부 37.4%, 광역자치단체 26.5%, 기초자치단체 33.5% 등으로 정부가 압도적

– 사업실행의 측면에서 보면 문체부 25.6%, 광역자치단체 19%, 기초자치단체 38.1%인 반면 문체부 소관기관이 9.5%, 시·도문화재단 7.8% 등으로 바뀜

그림 | 예산 흐름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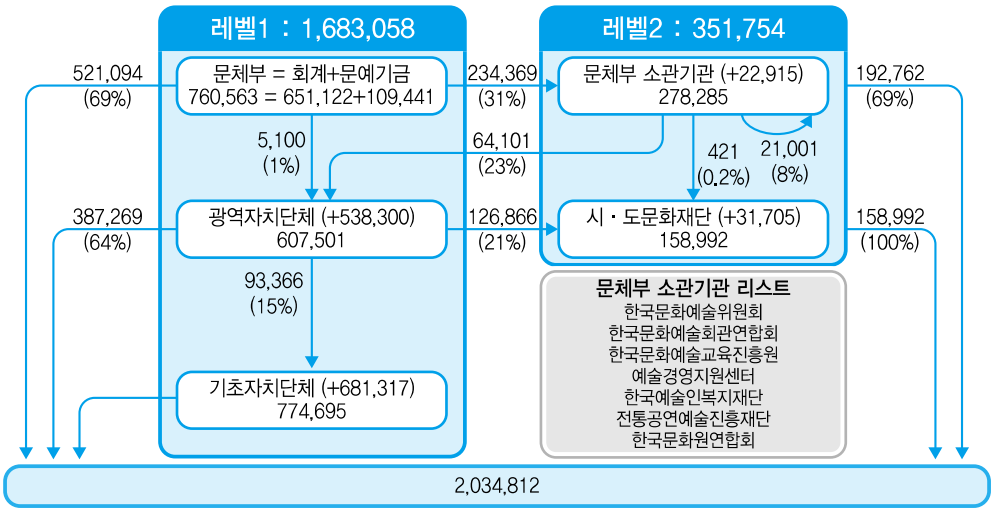

□ 사업유형별 규모

○ 2013년 경우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3.8%로 가장 높고, 하드웨어 건립 20.7%, 교육 및 향유 지원이 11.9% 순

그림 | 전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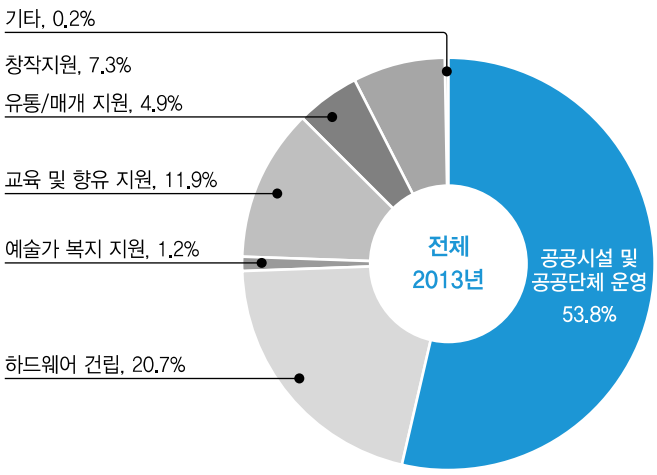

○ 정부(중앙정부, 지자체)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문체부 소관기관은 교육 및 향유 지원이 가장 높음

○ 창작지원은 연극/뮤지컬이 24.2%로 가장 높고 미술, 국악/전통, 음악, 무용 순

마. 수혜현황

□ 공공부문 수혜현황 파악

○ 2013년 공공부문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수혜 규모는 문체부 소관기관과 광역문화재단 사업에 한정해서 파악함

○ 사업의 목적에 따라 수혜규모 파악함

○ 창작지원사업은 '예술가'와 '예술단체', 향유는 '관람객', 교육사업은 '교육생 및 예술강사', 예술인 복지사업은 '예술가' 수로 파악

□ 사업유형별 수혜현황

표 | 사업유형별 수혜현황

사업유형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창작사업	예술가 27만 명, 예술단체 6천 개	관람객 1200만 명
향유사업	관람객 400만 명	예술단체 1700개
교육사업	학생 및 교육참가자 267만 명	예술강사 6천 명
예술인 복지사업	예술가 및 예술강사 2만 명	

바.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2013년 기준, 일부 신규사업 2014년 포함)

▢ 문체부 외 타 부처 사업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

○ 사업의 속성에 따라 예술교육, 마을조성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표 |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사업유형	담당 부처 및 소관기관
예술교육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한국과학창의재단
마을조성(도시재생)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렛츠런재단
문화교류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문화산업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고용과 복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민간부분 예술지원 현황

가. 조사방법

▢ 사전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조사방법 결정

○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조사를 위해 민간예술지원 관련 조사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등 사전조사를 진행함

– 〈사회공헌백서〉(한국경제인연합회, 2013),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2013), 〈기빙코리아〉(아름다운재단, 2012) 보고서 리뷰

▢ 민간지원 조사 데이터(2013) 재분석

○ 한국메세나협회(2013) 조사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범위에 부합하는 사업유형 및 장르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하기로 함

– 메세나협회 조사 보고서는 매년 발간되며 관련 조사 중 표본 수 및 조사항목이 가장 많음

나. 조사범위

▢ 분석범위는 공공 예술지원 범위와 동일하게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한 사업과 순수예술 장르로 한정함

○ 조사범위에 '마케팅 목적' 및 '종업원 복지를 위한 목적'의 예술지원사업은 제외하였으며 문화예술 직접 지원사업만 포함

○ 해당 장르도 콘텐츠 분야는 제외하고 순수예술 장르로 한정함

다. 총 지원규모

▢ 2013년 민간의 총 지원규모는 총 1276억 원, 이는 기업사회 공헌액의 3.9%에 해당

○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예술지원사업 규모는 기업 680억, 재단 595억, 조건부 기부금 88.5억으로, 중복응답한 액수(98.5억)을 제외하여 민간지원규모 총액은 1276억 원으로 집계됨

– 민간지원사업을 목적별로 보면 사회공헌 차원의 예술지원이 77%, 마케팅 목적 13.6%, 종업원 지원 9%를 차지함

○ 사업 건수는 총 913건이며, 이 중 기업이 828건, 재단이 101건임

– 사업별 지원액은 재단이 기업의 4배 수준임

표 | 2013 민간기업 지원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기업 (93)	재단 (21)	조건부 기부금 (539)	총규모
지원금	68,048 (53.3%)	59,506 (46.6%)	88.5 (0.1%)	127,632 (100%)
건수	828건 (89%)	101건 (11%)	-	913건
건당 지원금	731.7	2833.6	-	-

* 유형별 중복선택 9.85 제한 금액임(총 건수는 중복 계산 16건 제외한 결과임)

라. 민간지원 사업유형별 규모

▢ 기업은 지역사회 예술지원, 재단은 시설 운영 사업 비중 높음

○ 사업유형별로 '문화예술 시설 운영'(3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25%), '문화예술단체지원'(11%) 순을 보임(기업+재단)

○ 사업유형별로 기업은 '지역사회 예술지원'(25%), 재단은 '시설 운영 지원'(67%)이 가장 높음

마. 민간지원 장르별 규모

▢ 인프라를 제외한 민간예술지원규모는 518억

○ 장르별 지원규모는 '인프라'가 757억(59%)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교육'이 15%로 다음임

○ 예술장르별 규모는 서양 음악(9%) 〉 국악(4%) 순

표 | 2013 장르별 지원규모(민간)

(단위: 백만 원)

장르	기업	재단	총지원액	비율
국악	4,009	825	4,834	4%
서양음악	10,448	1,205	11,653	9%
무용	879	807	1,685	1%
연극	1,502	1,932	3,434	3%
뮤지컬	2,263	1,216	3,479	3%
미술/전시	2,702	1,548	4,250	3%
문학	357	2,033	2,390	2%
인프라	**27,466**	**48,269**	**75,735**	**59%**
전통예술	538	729	1,267	1%
문화예술교육	**17,886**	**942**	**18,828**	**15%**
합계	68,048	59,506	127,554	100%

* 직접지원만 분석한 결과이며 조건부 기부금은 미포함

바. 민간지원 지원방식별 규모

□ 지원규모의 99%는 대기업에서 수행

○ 매출 기준으로 4천억 이상 기업의 지원규모가 전체 지원금의 99% 차지

□ 자체기획 비중은 75.7%

○ 민간지원 중 자체기획이 75.7%, 후원 및 협찬 22.5%, 조건부 기부가 1.8%를 차지

○ 기업은 지원금의 60%가, 재단은 93%가 자체기획으로 운영됨

5. 정책적 시사점

가. 조사의 의미

□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

○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만큼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등 예술지원의 체계와 규모가 크게 변화

○ 공공부문은 전수조사, 민간부문은 2차자료 재분석

– 공공부문은 2012년 및 2013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등 5개 카테고리의 265개 예술지원기관의 세출예산을 전수조사

– 민간부문은 민간지원규모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부 분석을 통해 총규모 도출

□ 예술지원의 체계와 구조의 파악

○ 예술지원은 다양한 지원주체가 참여하는 체계이며 구조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 공공부문은 작동체계가 다른 지원주체들이 다양하게 개입하여 때로는 협력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협업

그림 | 공공 및 민간부문 예술지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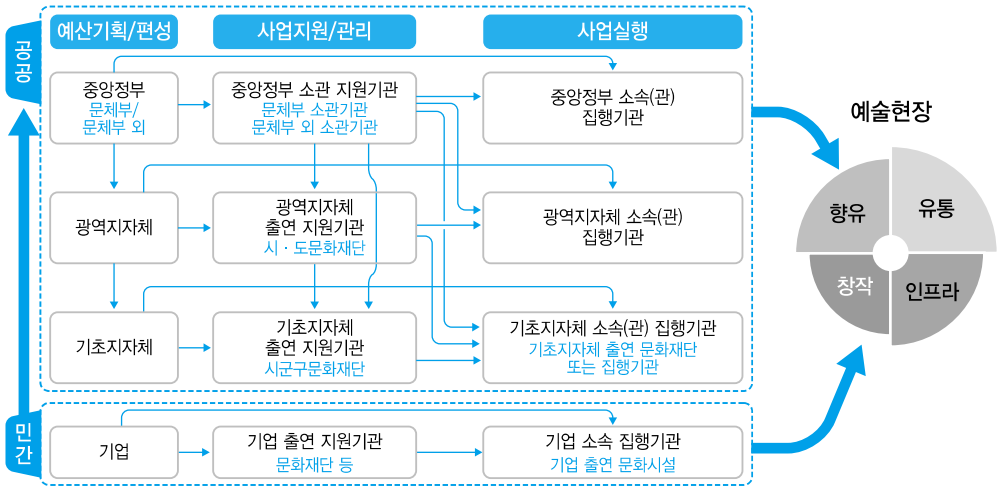

○ 예술지원을 위한 재원의 출처와 실행의 관계 파악과 문제점 파악
– 재원의 출처부터 예술지원의 실행에 이르는 구조를 파악
–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 목표별, 재원의 출처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나. 조사결과의 의미

□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총규모는 2조 1,624억 원
○ 총규모는 2조 1,624억 원이며 이중 공공부문이 94%를 차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16배 많은 것으로 드러남

표 | 예술지원 총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지원규모	2,034,812	127,632

○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사업에서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1조 6,831억 원을,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시·도문화재단이 3,518억 원을 집행
○ 민간부문의 주요 지원주체는 기업(680억 원)과 기업이 출연한 재단(595억 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보임

□ 공공부문에서 지원주체의 변화
○ '창작지원'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시·도문화재단으로 이동
– 각 주체의 활동 중 창작지원의 비중으로 볼 때는 시·도문화재단〉문체부 소관기관〉광역자치단체〉문체부〉기초자치단체이며 지원규모로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문체부 소관기관〉시·도문화재단의 순임

표 | 주체별 창작지원 현황('이전' 예산 포함)

(단위: 백만 원)

구분	주체	예술지원 창작지원 비중(%)	창작지원규모
정부	문체부	6.7	50,757
	광역자치단체	10.3	62,703
	기초자치단체	6.6	51,139
소관기관	문체부 소관기관	14.9	41,569
	시·도문화재단	24.3	38,625

– '이전' 예산을 제외하면 문체부와 문체부 소관기관의 비중은 더 작아지므로 창작지원에서 지방정부 및 시·도문화재단의 비중은 훨씬 높아짐
○ '예술교육 및 향유'의 주요 주체는 문체부 소관기관 중심
– 예술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은 예술지원사업 전체에서 12%를 차지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건립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임

– 문체부 소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체부 소관기관이 시·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 주체별 교육 및 향유 지원 현황('이전' 예산 포함)

(단위: 백만 원)

구분	주체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 비중 (%)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
정부	문체부	22.0	167,509
	광역자치단체	12.9	78,118
	기초자치단체	5.9	46,011
소관기관	문체부 소관기관	70.2	195,333
	시·도문화재단	47.2	75,120

□ 자체지출의 집중

○ 공공부문에서의 자체지출은 56.1%

– 각 주체들이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공공부문의 시설, 단체를 운영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은 56.1%(하드웨어 건립 15.5%,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40.6%)

– 기초자치단체가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각 기초지자체가 건립, 운영중인 문예회관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그림 |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분포로 본 자체지출(이전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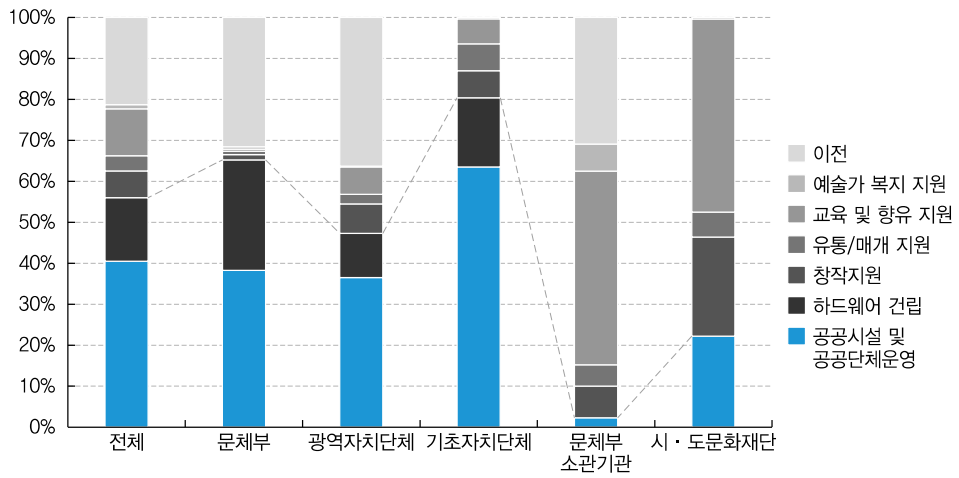

○ 민간부문에서의 자체지출은 59%

– 민간부문에서의 예술지원 중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기업이나 기업이 출연하는 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의미

그림 | 민간부문 예술지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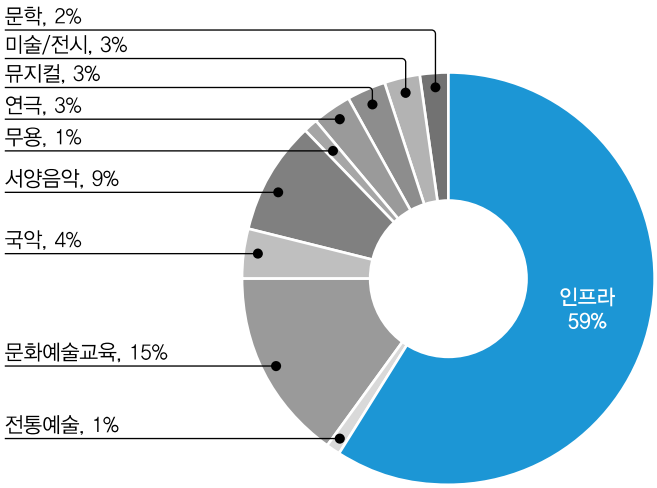

다. 정책적 시사점

□ 지원주체간의 공조와 협업 강화 필요

○ 예술지원의 주체는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까지 세 단계의 정부와 각 정부가 출연한 지원기관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임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원기관은 통합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예, 문화재단) 중앙정부 소관 지원기관은 영역별로 운영

○ 예술지원사업 중 지역협력형 사업 등 협업이 필수적인 사업과 정책이 늘어가고 있음

– 사업주체간의 전달체계의 재검토를 통해 공조와 협업 촉진

○ 지원주체간의 공조와 협업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주체간의 네트워킹(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 다른 속성을 가진 지원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어야 함

○ 지원주체간에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조와 협업 촉진

□ 지원사업의 균형 도모

○ 예술지원사업은 건강한 예술생태계의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의 달성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필요 있음

○ 현재 지원사업은 영역별로는 자체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자체시설, 단체를 운영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

– 이에 비해 창작지원과 예술가 복지 등에 투입되는 재원은 작은 편임

○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적 목표 공유 필요

– 지원사업의 균형적 분포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 지원주체간에 정책적 목표와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여 지원정책 구조 자체를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예술지원의 재원 확충

○ 현재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예산에 비해 민간부문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재원을 늘려야 함

– 민간부문의 예술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는 문예진흥 등 기금의 고갈에 대비한 대체 재원을 찾아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도 돌파구가 필요함

– '문화재정 2%'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지방의 예술재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

□ 지원시스템의 개선

○ 예술지원제도의 시스템 확보가 급선무임

– (예술지원제도의 방향성) 전체적인 방향성 뿐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

– (예술지원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예측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 (예술지원제도의 보완성) 영역별, 주체별 연관성과 보완성을 인정

– (예술지원제도의 효과성) 효율과 효과, 성과 측면에서 검토

○ 예술지원제도의 시스템은 개별 사업단위와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지원주체가 참여하는 예술지원제도는 각 주체들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함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조사범위
4. 조사절차

1. 연구 배경

가. 문화예술의 지원규모 확대

1) 공공 재정의 증가

□ 2008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과 기금은 증가 추세이며, 그 중 문화예술부문의 연평균증가율이 8.6%로 높게 나타남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기금은 총 4조 1천억 규모이며 이 중 문화예술부문이 1조 7천억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함

– 이는 1조원 1천 억 규모의 관광부문과 1조 7백억 원 규모의 체육부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임

○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재정 비중에서 문화예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2008년 약 37%에서 2013년 약 42%로 높아짐

그림 1-1 |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재정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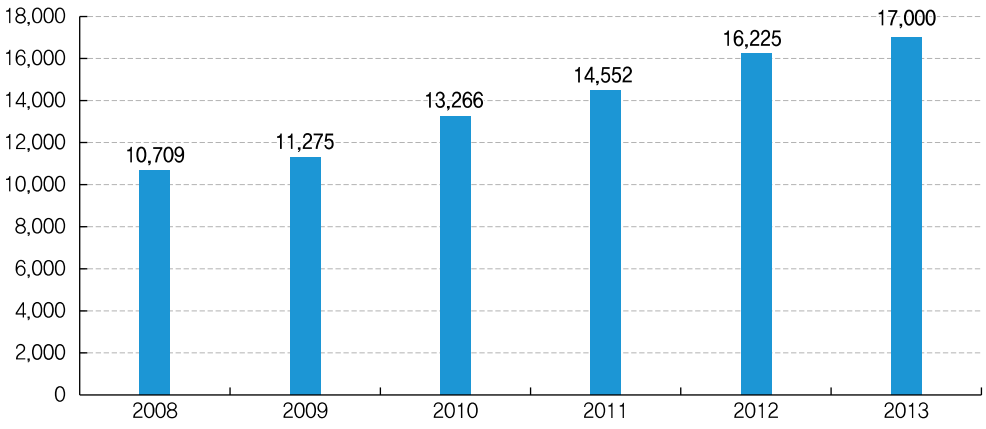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출처]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체부 홈페이지

□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은 1% 대에서 미약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최근 5년간 정부재정 평균 증가율이 5%대에 머문 것에 비해 문화체육관련 재정의 평균 증가율은 9%대로 약 두 배에 달함

○ 주 40시간 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회문화 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증가 추세를 보임

○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확충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술지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2) 공공 예술지원기관의 증가

□ 문화예술관련 재정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을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문화재단, 공연시설 등의 설립이 증가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은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설립된 이후 본격화되었음

○ 광역권 문화재단 및 기초권 지역문화재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5년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음

○ 1997년 경기문화재단으로 광역문화재단이, 1998년 강릉문화재단으로 기초문화재단이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총 59개에 달함

– 광역권 13개, 기초권 46개로 성장함(2014년 2월 기준)

3) 민간지원규모 확대

□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2000년에 600억 수준에서 2007년 1,800억 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1,600억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민간기업의 문화예술지원규모는 2012년 1,603억 원에서 2013년 1,753억으로 약 10% 증가하였으며 지원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35% 증가함

○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한 기업의 수는 직접지원과 조건부 기부금을 납부한 수를 더하여 2012년 566개에서 2013년 653개로 1년 만에 15%가 증가하였음

그림 1-2 | 민간기업 문화예술지원 추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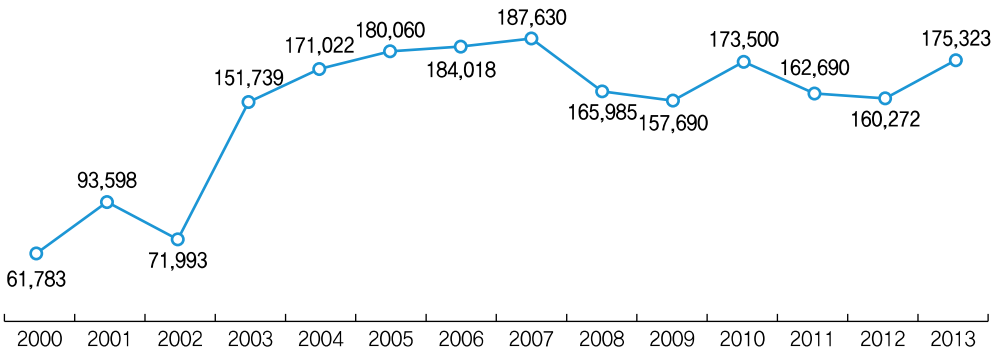

[출처]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

나. 예술지원 활성화

□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재정이 증가

○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2014년 1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과 지역,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민간의 예술지원 및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국가–지자체, 공공–민간의 예술지원의 총규모, 지원목적과 역할을 파악하여 예술지원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가. 총규모 및 지원체계 파악

1) 문화예술지원의 총규모 파악

□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부문의 총규모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

○ 본 연구 이전에도 문화예술지원의 규모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으나 '공연예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거나 특정 사업 또는 특정 기관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음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하여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기초자치단체 등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총규모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예술지원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조사하고자 함

2) 문화예술지원의 지원체계 파악

□ 공공부문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예산의 편성과 이전, 집행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행정 레벨과 사업 집행 기관들이 얽혀 있어 그 지원체계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 기금과 국고 등 재원의 출처가 다양하고 자금 흐름이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체계에 대한 파악이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이유로 각 행정 레벨 또는 각 기관 별로 비슷한 사업에 대한 중복 예산 편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음

– 창작지원, 교육 및 향유, 예술인 복지 등 사업유형에 따른 예산 지원 통계나 음악, 미술과 같은 장르에 따른 예산 지원 통계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에서 균형 잡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이에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규모 및 내용을 분석하는 동시에 재원의 출처를 파악하고 각 기관 간 관계 및 사업구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고자 함

3) 공공 예술지원의 수혜현황 파악

▢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그 결과를 매출 등 경제적 성과 지표로 환산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량지표를 통해 예산의 집행에 따른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문화예술지원사업은 시민의 복지 또는 예술가와 단체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사업의 수혜 결과를 지원받은 예술가와 단체, 수혜를 받은 관람객 등의 정량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원된 예산에 대한 수혜 예술가와 관람객 등의 정량지표를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하여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총 수혜 결과를 파악할 수 없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의 총 수혜 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함

나. 정책적 시사점 제공

▢ 공공과 민간의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2012, 2013년 주요 공공·민간 영역의 주요 문화예술지원사업 및 예산 등 현황 조사를 통하여 국내 문화예술지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예술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 마련

▢ 국내 예술지원 체계에 대한 쟁점 논의

○ 지원주체 및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기관 간 또는 정부 기관과 소속 지원기관 간 공조와 협력 방안 논의

○ 국고와 기금 등 공공부문 재원의 출처를 파악하고 지원주체 간 재원의 흐름을 추적하여 지원체계에 대한 쟁점 논의

○ 본 조사의 지속적 연구와 확장을 위한 제언

3. 조사범위

가. 지원주체 범위

▢ 공공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문화재단 등 265개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중앙부처 16개 기관이 포함되며, 문체부 이외의 중앙부처 16개는 예산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됨

▢ 민간부문은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삼음

나. 장르 범위

▢ 예술 장르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관련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건축, 박물관, 도서관, 출판, 콘텐츠(영화, 게임 등), 문화재 등은 제외

○ 단,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은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콘텐츠도 포함됨

○ 민속놀이, 예절교육(충효교실, 예절문화교육 등), 향토문화, 정월대보름제 등 예술 장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

다. 사업 범위

□ 예술지원 목적 사업과 예술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이 포함되며, 타목적 지원사업(예. 재래시장 살리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제외

○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등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은 포함하되 환경 등 정비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은 제외함

□ 구체적으로 '창작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됨

4. 조사절차

그림 1-3 | 조사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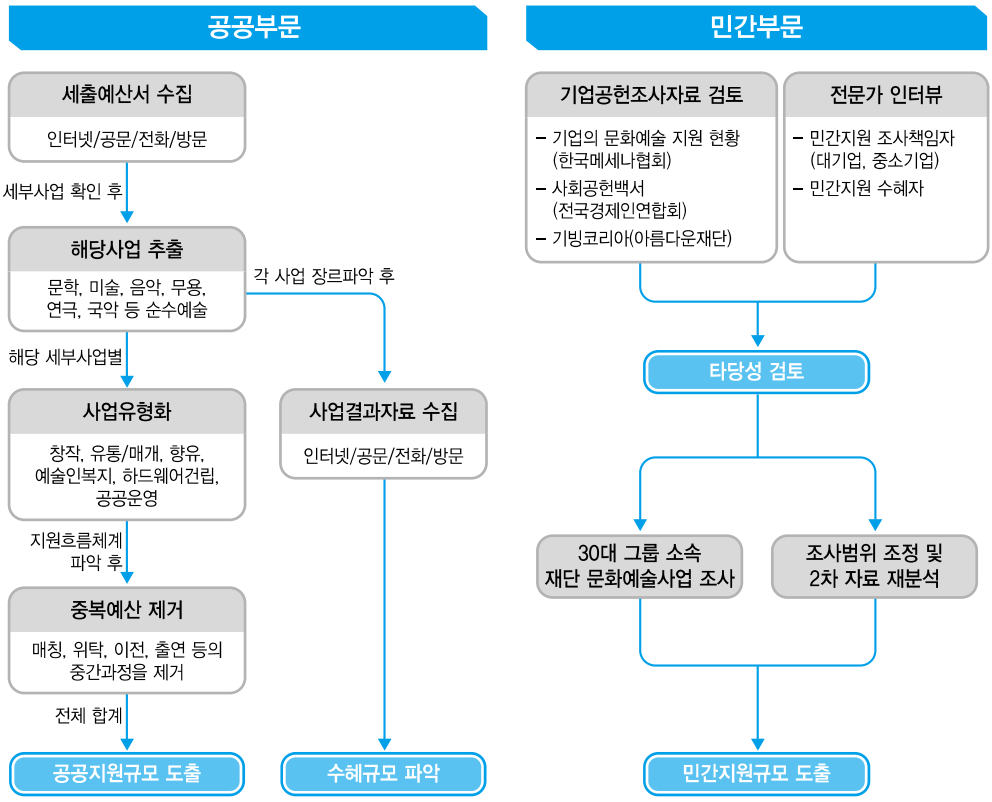

가. 공공부문 조사절차

1) 공공지원규모 추정

□ 조사대상 기관 세출예산서 전수조사

○ 조사대상인 265개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세출예산서 자료 수집

○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사 협조 공문 발송, 전화, 이메일 등의 개별 접촉을 통해 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

□ 조사대상에 맞는 사업 추출

○ 예산서에서 본 연구의 조사범위(장르 및 지원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출

○ 행정 기관 간 중복 예산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제거한 후 예산의 총규모, 사업유형별 규모, 장르별 규모 등을 분석

2) 수혜현황 파악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수집

○ 수혜현황 조사대상인 18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결과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등의 자료 수집

○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혜자 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추출

○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공문 발송, 전화, 이메일 등의 개별 접촉을 통해 수혜 결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개별 요청

나. 민간부문 조사절차

□ 사전조사

○ 한국메세나협회에서 발행하는「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사회공헌백서」, 아름다운재단에서 발행하는「기빙코리아」 등을 검토

○ 문헌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문헌 조사방식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지원규모 추정

○ 한국메세나협회「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발행 시 사용하였던 원본데이터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맞게 구성, 재분석 실시

제2장

예술지원의 근거와 메커니즘

1. 예술지원의 근거와 논리
2. 예술지원의 재원 구조
3. 예술지원의 주체
4. 예술지원의 유형

제2장 예술지원의 근거와 메커니즘

1. 예술지원의 근거와 논리

가. 공공지원의 이론적 근거

1)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당위성

□ 문화예술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 비용 조건의 문제는 문화예술이 시장에서 발전, 유지 될 수 없는 이유로 정부지원의 경제적 근거가 됨 (Baumol과 Bowen 1966)

– 공연예술시장은 높은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독점가격은 사회적 최적량에 못 미치는 불완전한 경쟁시장임

– '비용질병(cost disease)'이라 불리는 예술의 비용 조건의 문제는 예술의 만성적인 적자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지며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보조 또는 민간의 기부, 후원 등을 정당화 시켜주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됨

○ 비용 조건으로 인한 생산성의 격차는 문화예술의 비용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이 됨

– 자본주의의 체제가 안정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산업에 걸쳐 생산성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각 산업에 따라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다르고 그 중 문화예술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서 증가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림

– 문화예술부문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계적 설비, 기술 등에 의해 대체 가능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당 산출을 증가시킬 여지가 없음

2) 문화예술의 특성과 공적 효과

□ 문화예술의 특성이 가지는 고유가치(intrinsic value)

○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은 예술상품의 특징으로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근거가 됨

– 문화예술부문의 활동은 비배재성(non-excludability),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지는 공공재 (public goods)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은 창조적인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사회적 공동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이 창작되는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짐

○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는 문화예술의 특성으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문화예술소비와 평등한 향유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예술은 그 상품의 향유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에도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술교육 장려, 예술향유 기회 제공 등의 지원에 노력함

– 문화예술의 수요가 예술적 경험, 교육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보 부족을 보완하여 문화예술의 수요확대를 위해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 부문의 기호를 형성하는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의 필요

□ 문화예술에 의한 외부성

○ 문화예술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는 향유자의 경제적 후생에 이익을 주는 긍정적 효과를 뜻함

– 문화예술부문은 수혜당사자 외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문화예술작품을 소비할 때 문화예술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활동에서 문화예술로부터 얻는 혜택 또는 효용은 대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이고, 수혜자(소비자)가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됨

– 그 외의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외부효과란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 전체의 정서 순화, 사회 안정, 생산단계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노동자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의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대외적인 국위선양, 문화유산 등이 있음

– 문화예술은 개별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용재의 성격을 가지나, 개별수요자의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적 외부효과를 수반함 (Baumol과 Bowen 1966)

○ 정부의 문화예술 공적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제가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의 소비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소득, 교육수준이 중간 이상인 계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문화예술의 소비에 참여 할 수 있다면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음

–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최소한의 문화예술의 소비를 통한 자기 계발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받아야 하며 가격, 소득, 교육 수준 등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정당화

3) 공공지원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 공공지원의 법적 근거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이 있으며 이 이외에도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이 있음

○ 문화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소외됨이 없이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법에 명시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문화기본법 제2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제4조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학, 미술, 연예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족문화 중흥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8월 14일에 제정 되었으며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법률의 많은 부분이 개정됨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 문화지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나. 민간지원의 이론적 근거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경제 외적 지원 동기

○ 기업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의 사회적 환원 의무를 가지고 문화예술의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진행함

–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공적 지원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과도한 공적 지원의 비율 팽창을 축소하려는 노력으로 최근 공익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기업의 측면에서 축적된 부를 이용한 공익부문에 대한 지원활동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2)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경제 효과

□ 기업의 경제적 지원 동기

○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동기로는 문화예술부문과의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 기업의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참여와 기부활동은 기업의 입장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순응하고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중 하나

–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와 기업의 특정상품 홍보효과와 간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문화예술계 또한 창작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정부의 세제혜택 제공은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설립한 재단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동기를 향상시킴
– 1994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는 2004년에 한국메세나협의회로, 2013년에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과 문화예술의 협력 알선, 문화예술 계몽/보급 활동,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 여건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

3) 조직의 문제해결 효과

□ 조직 대내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활용
○ 인적자원 관리, 조직원 동기부여, 조직문화 정립 등 조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에서 예술콘텐츠와 예술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1)]
–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예술가들이 기업의 상품 및 매장을 디자인하는 등 예술가와 기업 간 협업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마케팅 목적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조직원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조직이 가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예술을 도입하는 기업 또한 증가함
○ 기업경영에 예술을 도입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고 조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변환하는 효과를 기대함
– 문화예술을 통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관계 증진, 화합력 증대, 동기부여,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등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함(예 : 조직원들이 비전을 예술작품으로 형상화)
– 위와 같은 조직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차별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 회사의 외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고시키고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줌

4) 민간지원의 법적 근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민간지원을 위한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로서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후원단체를 육성하고 민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됨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문화예술후원 및 기부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목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제1조)

1) 김소영, 안성아, 장대철(2013), 예술기반창조경영의 개념과 유형, 문화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 인적 요소를 이전, 사용, 제공하거나 그 밖의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함 (제2조 2항)

– 조세의 감면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별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제9조)

2. 예술지원의 재원 구조

가. 공공재원

1) 공공재원의 분류

▢ 공공재원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12개 분야의 국가 예산 중 문화 및 관광이 하나의 분야로 포함

표 2-1 | 2014 국가 예산 분야 및 세부 내역

분야	세부 내역
보건·복지·고용 (일자리)	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보육·가족·여성, 노동, 보훈, 주택, 노인·장애인 등, 보건,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
교육	유아·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일반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부문, 체육 부문, 관광 부문, 문화재 부문**
환경	상하수도·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 환경 일반
R&D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우주항공·생명, 기계·제조·공정, 정보·전자, 기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산업금융,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기술지원 등
SOC	도로, 철도, 항만·공항, 수자원, 물류·지역 및 도시 등
농림·수산·식품	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
국방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 개선
외교·통일	외교 부문, 통일 부문
공공질서·안전	법무 및 검찰, 경찰, 법원 및 헌재, 해양경찰, 재난관리
일반·지방행정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입법 및 선거관리, 정부자원관리 등

출처: 기획재정부

○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음

– 일반회계는 국가 예산의 중심회계로 정부재정의 근간이 되며 국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

–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일반회계와는 독립적으로 편성, 운용되는 예산

그림 2-1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기금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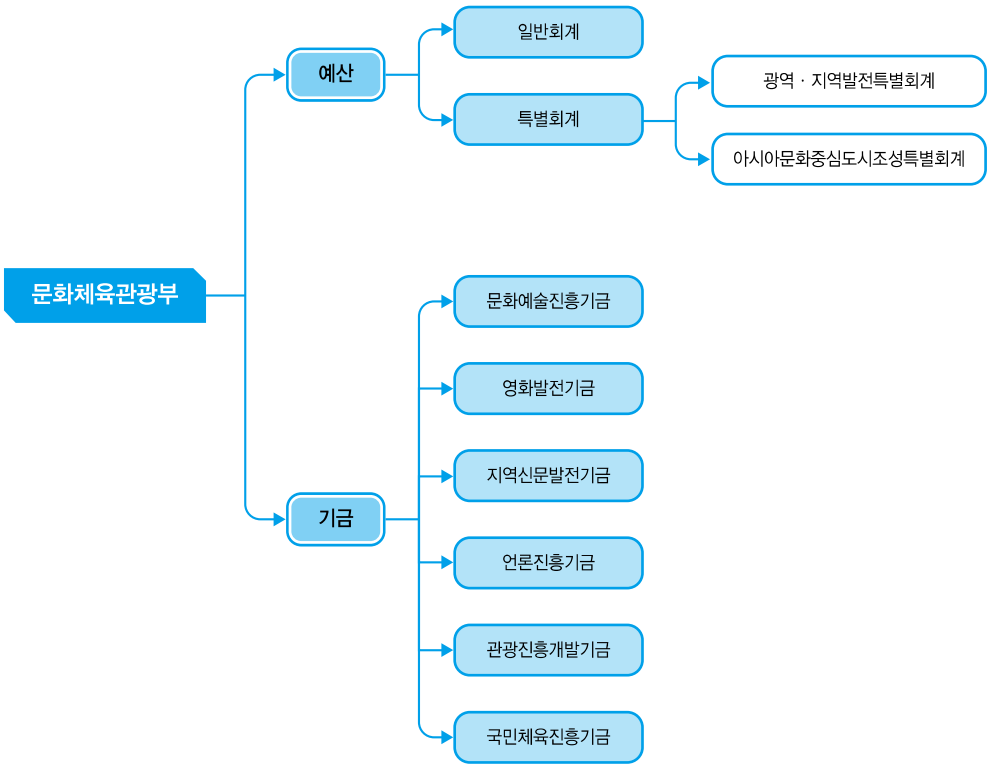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

–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외부차입금, 기금운용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에 의해 조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개의 기금 중 순수예술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설치

2) 공공재원의 운영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

○ 문체부 예산은 '문화예술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관광 일반 부문' 등 4개로 나눠지며, 그 중에서 문화예술부문 예산이 가장 많음

– 문화예술부문의 예산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소속기관 운영비가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과 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예산의 연평균증가율은 7.4%, 기금의 연평균증가율은 11.8%로 기금의 증가율이 예산의 증가율보다 큼

표 2-2 |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
총액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9.3%
예산	16,665	18,167	19,603	20,933	22,201	7.4%
기금	12,081	13,580	14,954	16,261	18,847	11.8%

출처: 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순수예술 진흥'에 쓰도록 마련한 재원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설치됨

– 제20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등을 위해 사용

–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할 문화예술진흥원이 1973년 개원하였고 2005년 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

○ 조성 당시 정부 출연금,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 극장·박물관·사적지 등에서의 모금액,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통해 자금 조달

– 이 중 모금 수입과 이자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04년 1월 1일부터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후 그 동안 쌓아온 기금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 진행

–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2010년부터 경륜경정수익전입금이 대체재원으로 전입

○ 모금 제도의 폐지와 지원사업비의 증가로 2005년부터 적립금 감소

– 문예진흥기금 고갈 우려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표 2-3 | 문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1973~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성액	997,255	87,041	98,264	96,523	96,351	96,040	98,409	98,568	64,906	57,824	88,115	108,547	116,710	138,168
운용액	621,879	61,921	62,703	26,755	74,921	130,381	136,536	119,742	89,438	92,968	163,254	144,273	127,535	150,911

출처: 2013문화예술정책백서

표 2-4 | 문예진흥기금 최근 5년간 추이

(단위: 천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술의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81,021,207	116,572,080	110,364,000	121,368,301	120,465,000
문화관광 행정지원	12,626,230	10,859,100	11,178,000	25,587,000	12,895,000
기금간거래(전출금)	815,753	100,150,000	20,117,000	-	5,335,000
여유자금융통	307,996,985	165,814,036	127,690,000	131,434,699	325,513,869
합계	402,460,175	393,395,216	269,349,000	278,390,000	464,208,869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정정보 공개

나. 민간재원

1) 민간재원의 분류

□ 기업에 의한 민간재원 구성

○ 민간재원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와 개인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그림 2-2 | 민간재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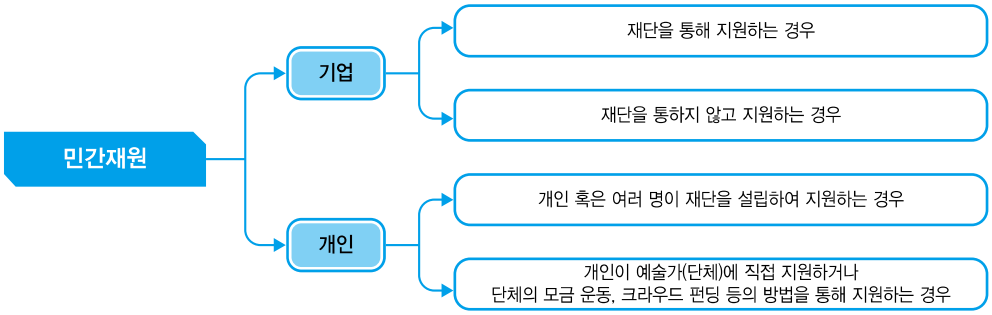

○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는 '재단'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와 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기업은 공연장이나 미술관 등 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예술영재, 신진 예술가들을 직접 후원하기도 함

– 또한 악기 대여나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위한 차량 지원 등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 개인에 의한 민간재원 구성

○ 개인의 경우는 개인 혹은 다수의 발기인이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와 개인이 예술가(단체)에 직접 지원하거나 모금 운동, 각종 캠페인,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기업의 기부와 지원이 개인에 비해 높은 실정임

2) 민간재원의 운영 현황

□ 재단을 통한 문화예술지원

○ 기업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은 기업이 법인형태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임

○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백서2013」에 응답한 65개 기업문화재단이 지출한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총 2조 9,998억 원이며 이 중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사업비는 1.8%로 약 540억임

– 의료보건 사업비가 89.4%로 가장 높고 교육·학교·학술연구(4.3%), 사회복지(3.7%), 문화예술 및 체육(1.8%)이 그 뒤를 따름

– 체육을 제외하면 순수 문화예술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은 540억 원보다 더 작을 것으로 추정

– 사업비 비중을 보면 미술관, 공연장 등 시설운영 비중이 높음

○ 「사회공헌백서2013」에 응답한 기업 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은 교육(62.5%), 사회복지(51.6%), 문화예술(31.3%)임(중복응답 허용)

□ 기업이 직접 문화예술지원

○ 법인 재단을 두지 않고 기업이 '봉사단', '사회공헌팀' 등의 내부 조직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

– 한화사회봉사단이 대표적이며,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11시 콘서트 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을 진행함

□ 개인이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지원

○ 개인이나 여러 명의 발기인이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경우

– 옥랑문화재단, 수림문화재단 등 기업이 아닌 개인이 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을 지원

□ 개인이 문화예술에 지원(후원)

○ 다른 사회공헌 분야보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개인 후원의 규모는 매우 작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지원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문화예술기관을 통한 후원이 대표적이며, 크라우드 펀딩 등의 방식도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예술 후원을 늘리고자 예술나무 운동을 시작함. 1인 1예술 나무키우기로 현재 90,391건의 기부가 진행되었고 매달 후원하는 정기후원자는 약 1,300명으로 파악됨

–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예술나무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 프로젝트는 총 59건이며 건 수, 금액, 참여자 수가 매해 늘고 있음

표 2-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크라우드펀딩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7	2	22	28
참여자 수	761	267	1,073	1,900
금액(원)	49,507,065	38,228,218	93,621,418	133,029,978

출처: 예술나무 운동 홈페이지

○ 최근 아름다운재단에서 발표한 「2013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연구는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분석함[2)]

– 문화예술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은 예술가 개인에 대한 기부보다는 행사나 기관에 대한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르별로 살펴보면 공연예술(47%), 시각예술(19%), 미디어예술(13%), 문화예술교육(10%), 문학예술(9%)로 공연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음

– 기부 동기는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41%로 가장 높았고, 기부 시 기부대상의 신뢰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예술지원의 주체

가. 중앙정부

1)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3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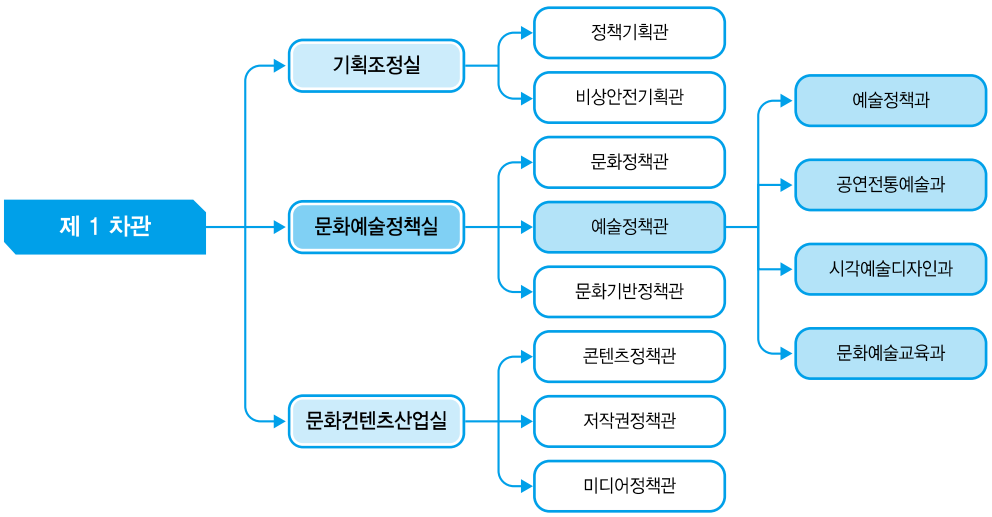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1948년 공보처로 시작하여 1990년 문화부로 공식 출범.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

○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전승·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업무를 담당

2) 남기범, 한동우(2014),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발표, 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2014

○ 예술지원사업은 예술정책관을 통해 이루어짐

○ 17개의 소속기관을 통해 전문예술교육, 연구, 예술기관운영을 지원함

–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한국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민방송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총 33개

○ 준시장형 공기업 1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총 33개임

○ 예술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주요 기관들은 아래와 같음

표 2-6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한국관광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 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재)한국공연예술센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합 (2014/5)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함

○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개원

○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고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 차원의 민간자율기구로 정체성을 가져가고자 함

–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구성된 10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 도출

– 과거 문화예술진흥원의 역할이 기금의 관리와 배분에 국한되어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도록 설계

– 문예위는 1처 1센터 5본부 17부로 구성됨(2014년 6월 기준)

그림 2-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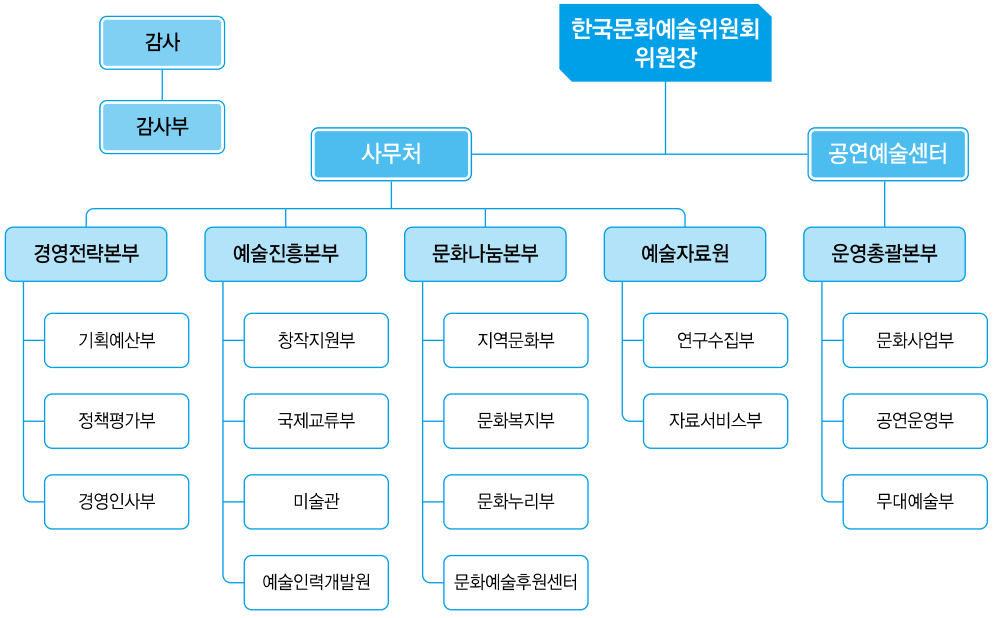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문예위의 대표적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사업, 기부금사업, 건축물미술작품제도사업, 복권기금문화나눔사업, 시설운영 등을 운영함

○ 운영 시설은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예술가의 집, 인사미술공간, 국립예술자료원, 한국공연예술센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등 7개임

○ 2014년 진행한 사업으로는 '작품 지원사업', '단체 지원사업', '향유 지원사업', '국제교류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축제지원사업' 등이 있음

표 2-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지원사업

카테고리	사업명
작품 지원	창작산실지원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청소년뮤지컬제작지원
	전통공연예술지원_전통연희활성화
	다원예술창작지원(구.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 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구.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신진예술가 지원	전통공연예술지원_전통예술실험무대
	AYAF 공연예술분야 창작자 부문 지원
공연단체 지원	전통공연예술지원_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전통공연예술지원_전통풍물활성화
	무대기술 크리에이티브랩
	후원자-예술단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활동 지원
	대관료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화향유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랑티켓 참가 지원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예술나무의 콩닥콩닥 예술여행
	무지개다리
국제교류 지원	민간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ARKO-PAMS협력사업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Center Stage Korea 특집사업, 해외투어사업
	해외마켓참가 지원사업(쇼케이스, 개인 참가지원)
전문인력 양성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로열코트극장 국제작가그룹 참가지원
축제지원	공연예술 행사지원

*공연예술에 한하여 직, 간접적 지원을 다룬 표임. 같은 출처의 표 모두에 해당함

출처: 2014 공연예술 공공지원 제도 가이드북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중점을 둠

○ 2005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2006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과 함께 특수법인으로 전환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일상적 삶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책을 반영하는 지원사업을 관리·운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등이 있음

○ 2014년 주요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생활예술지원사업' 등이 진행됨

○ 여러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구조를 속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학교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며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진행됨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 인력의 학교 방문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작됨. 2000년 국악 분야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 현재 전체 초·중등학교 7,254개 학교(11,599개교의 63%)의 9,669개 교육과정에 국악 등 8개 분야의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있음

–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는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문체부 외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으로 진행됨

– 기초단위,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예술교육사업이 추진

표 2-8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지원사업

카테고리	사업명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학교·사회예술강사 기본/심화 연수
	사회문화예술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문화예술교육 선택연수 '키움(Key-Um)'
	학습공동체 아르떼 동아리(CoP)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인력 양성과정 '문화도담'
문화예술교육	학교 예술강사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컨설팅
	군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과 후·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정시설·소년원학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예술꽃씨앗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의 오케스트라 (El Sistema Korea)
	무지개다리사업
생활예술지원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출처: 2014 공연예술 공공지원 제도 가이드북

③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지역 문화예술회관의 지원 목적

○ 1996년 사단법인 전국문예회관연합회로 설립되었으며 전국 문예회관의 발전 및 상호 간 협력 증진, 공연예술 유통, 소외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문화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함

○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2010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38조에 의해 법정법인으로 전환

○ 전국에 7개의 지회를 가지고 있으며 183개의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주요사업은 문화향유사업, 문예회관지원사업,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등이 있음

○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기관으로서 공연장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도 수행

표 2-9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014 지원사업

카테고리	사업명
문화향유 지원	방방곡곡문화공감
	해피존 티켓나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교육 지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통 및 매개 지원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전문인력 양성	문예회관 아카데미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공연장 지원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지원
	문예회관 종합 컨설팅 지원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출처: 2014 공연예술 공공지원 제도 가이드북

④ 예술경영지원센터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유통 활성화와 각종 예술기관을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예술가)에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예술 현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2006년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민간지원기관으로 지정됨

□ 주요사업은 교육·컨설팅, 정책사업, 각종 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

○ 주요사업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행사 평가, 국제교류를 위한 컨설팅, 아트마켓 등임

○ 서울아트마켓,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등 예술가가 아닌 예술경영인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특징적임

– 2007년 시작한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는 7년간 144개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으며, 8,136명의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였음

표 2-10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4 지원사업

카테고리	사업명
공연단체 지원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 육성제도
	예술경영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예술경영 아카데미 LINK
	한류 아카데미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지원	팸스초이스 선정
	커넥션 사업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주요 공연예술마켓 및 국제음악마켓 참가 지원

출처: 2014 공연예술 공공지원 제도 가이드북

3) 문화체육관광부 외 중앙정부

□ 중앙정부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여 17개의 부처가 있음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 이 중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제외하고 모두 예술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며, 최근 들어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늘고 있는 추세임

□ 타 부처 예술지원사업은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목적의 사업에 예술이 활용(첨가)되는 형식이 대부분임

○ 타 부처 예술지원은 크게 교육지원, 지역(도시) 지원, 교류 지원, 산업 지원, 복지 지원의 목적으로 나눠 볼 수 있음

– '예술교육' 부문의 사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이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짐

– 여러 부처에서 예술교육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학교, 청소년, 교정시설 재소자, 의경, 근로자 등 수혜 대상의 다양성에서 비롯함

– 마을조성,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행자부, 국토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진행 중이며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2-11 |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사업유형	담당부처 및 소관기관	사업 건수
예술교육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한국과학창의재단	15
마을조성(도시재생)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렛츠런재단	9
문화교류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통일부	9
문화산업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3
고용과 복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나. 지방자치단체

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하위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와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총 17개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각 광역자치단체 아래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임

– 서울25개, 부산 16개, 대구8개, 인천 10개, 광주 5개, 대전 5개, 울산 5개, 경기도 31개, 강원도 18개, 충청북도 11개, 충청남도 15개, 전라북도 14개, 전라남도 22개, 경상북도 23개, 경상남도 18개, 제주도 2개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예산 중 일부를 문화예술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은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 체육, 종무 등의 하위 활동분야로 세분[3)]

□ 광역자치단체는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과 국비 매칭사업 형태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기도 함

○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사업은 문화분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총 4개 사업으로 구성

– 대부분 시·도문화재단으로 위탁되어 운영

3) 박윤환(201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표 2-12 |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사업 예

사업명	사업목적 및 지원규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간의 협력 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장 가동율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 1건당 연간 5천만~2억 원 내외 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작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기존의 레지던스 사업의 목적을 '창조적 지역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확대 - 1개 레지던스 시설 당 3천만~5천만 원
시·도기획지원사업	-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문화예술현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지원 - 사업 취지,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신장 - 사업 취지,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화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지역협력형사업 수행과정 및 추진사례

2)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은 시·도문화재단과 기초단위문화재단으로 나눌 수 있음

○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분권과 분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시·도문화재단 설립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시, 도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인(시·도문화재단)과 시, 군, 구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인(기초단위문화재단) 으로서 기본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함[4)]

–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광역권 최초로 설립되었고 1998년 강릉문화재단이 기초단위로는 최초로 설립

– 2014년 말 기준 시·도문화재단은 13개, 기초단위문화재단은 46개임

그림 2-5 |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2014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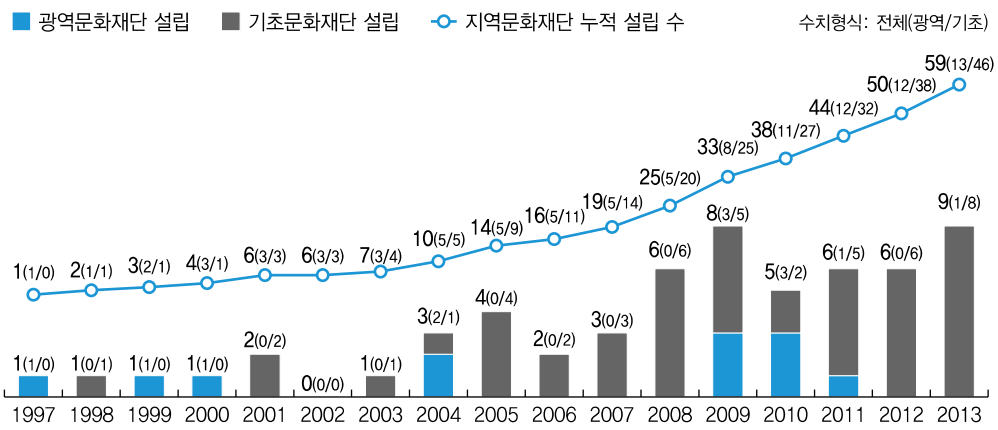

출처: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2014)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 지역문화재단 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가 주 목적

○ 비영리 민간단체로 분류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강함

○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체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가 지원, 지역 내 예술 공간 운영,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등을 수행

▢ 시·도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다른 양상을 보임

○ 시·도문화재단은 공통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기초단위문화재단은 '지역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함[5)]

표 2-13 | 지역별 문화재단 현황

지역	시·도문화재단	기초단위문화재단
서울	서울문화재단	중구, 구로, 마포, 강남, 성북, 영등포, 종로
부산	부산문화재단	
대구	대구문화재단	중구, 수성, 달성, 동구
인천	인천문화재단	부평
울산		고래
세종		
광주	광주문화재단	
대전	대전문화재단	
경기	경기문화재단	부천, 고양, 성남, 의정부, 화성, 안양, 하남, 수원, 용인, 오산, 군포, 안산
강원	강원문화재단	강릉, 정선, 춘천, 인제, 원주, 평창
충북	충북문화재단	청주
충남	충남문화재단	아산, 당진, 천안
전북		전주, 익산, 부안
전남	전남문화예술재단	목포, 영암
경북		경주, 청송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거제, 김해, 창원, 사천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다. 민간

1) 기업과 기업문화재단

▢ 기업문화재단은 기업이 출연한 문화재단으로 민간문화재단 중 그 수가 가장 많음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의 재단을 포함한 68개의 민간문화재단 중 기업이 출연한 민간재단은 33개임

○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예술단체의 활동을 후원·협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

○ 기업문화재단의 예로 삼성문화재단, LG연암문화재단, 두산연강재단, CJ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금호아시아나재단 등이 대표적임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표 2-14 | 상위 30대 그룹 주요 재단 및 사업

재단	주요 사업
GS칼텍스재단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조성사업
삼성문화재단	삼성미술관 Leeum, 삼성미술관 플라토 운영 호암미술관 운영, 문화예술지원사업
호암재단	호암상 운영
LG연암문화재단	LG아트센터 운영 메세나사업(문화예술지원사업)
두산연강재단	문예진흥사업
우란문화재단	프로젝트박스 시야
CJ문화재단	CJ아지트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사랑바우처, 농산어촌초등학생교육지원(예술교실)&환아, 가족대상힐링캠프, 문화예술분야 장학금 지급&문화예술분야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아시아펠로십-아시아문학지 발간

출처: 행복나눔재단(2012), 2013 사회공헌백서, 현대차정몽구재단(2012)

□ 기업문화재단은 공공지원을 보완하는 역할로 기대

○ 우리나라 예술단체는 공공지원금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으나 공공재원은 한정되어 있음

– 민간문화재단은 공공의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요

2) 기업의 지원을 돕는 민간기관

□ 한국메세나협회

○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비영리 법인으로 1994년에 설립됨

○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로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

○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문화공헌 사업, 학술 사업 등을 수행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 'Art for Children', '예술단체 육성 사업'은 한국메세나 협회의 대표적인 사업임

• 가장 대표적 사업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임. 기업은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을, 예술계는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적 결연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 활동을 통해 상생(WIN-WIN)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 2006년 본 산업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현재 대기업 181건, 중소·중견기업 392건 등 573건의 결연이 성사되어 292 억여 원(공공펀드 포함)이 예술계에 지원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231개의 기업이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음

표 2-15 | 2013 한국메세나협회 주요 사업 내역

사업명	2013년 사업 내역	2013년 사업 성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업무 지원	대기업 30건 중소기업 90건 결연
	기업, 예술단체 협력 사례 구축	
	예술지원 매칭 펀드 운용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	LG스쿨콘서트, 뮤지컬 홀리데이	36회, 15693명 참여
	벽산 NEXT클래식	
	꿈꾸는 공부방-문화예술체험	
Arts for Children사업	LG 아트클래스	2306회, 8495명 참여
	희망네트워크 희망재능교실	
	두산어린이아트스쿨, 두산과 함께하는 제17회 청소년 연극제	
	한화예술더하기, 한화와 함께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 전통문화교육	
	동행캠프	
	현대차그룹 토요 아트 드라이브, 아트드림 콩쿠르	
	K옥션 주니어 아티스트	
	한성자동차 드림 그림	
	드라이브 유어 드림	
예술단체 육성 사업	H-온드림 오디션 및 펠로	61회, 1120명 참여
	R&D 컬처 프로젝트	

출처: 2013 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지원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문화마케팅, 문화경영 지원을 돕는 기관으로 2008년 개소

○ '문화접대비' 제도, '문화로 인사합시다', '예술나무 운동' 등의 사업을 수행함

–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문화대상 선정 및 시상, 문화경영아카데미,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경영우수성공사례집 사업 등이 포함

– '문화접대비' 제도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새로운 문화분야 수요 창출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기업이 공연, 스포츠 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7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그림 2-6 | 문화접대비 제도 문화활동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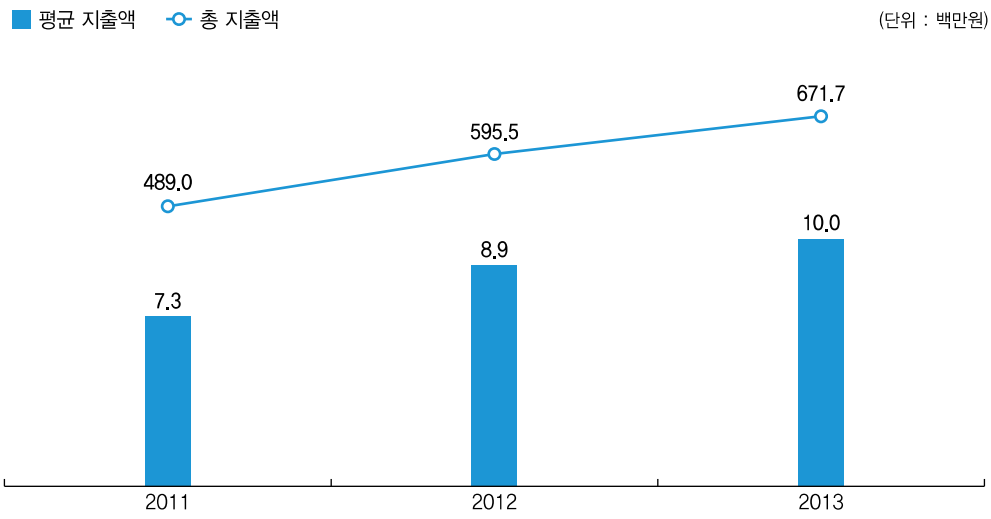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2014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실태조사

3)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 운동 '1인 1예술나무 키우기'

○ 문화예술 후원을 확대하고 전 사회적으로 예술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

○ 개인이 소액 정기후원을 통해 문화예술에 후원

– 후원을 원하는 개인은 1그루(3,000원)부터 후원할 수 있고, 후원하는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후원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프로그램(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 신진예술가 육성 프로그램(전도유망한 신진예술가 발굴 및 장기 육성 지원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살리기 프로그램(지역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 크라우드 펀딩

○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말함

– 후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라는 용어가 쓰이지만 사실상 지원이라고 봐도 무방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며 민간 분야에는 텀블벅, 굿펀딩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후원 가능

○ 소액도 지원 가능하며,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이 간편함

○ All or Nothing 방식으로 목표 모금액이 달성되어야만 프로젝트비가 전달된다는 점이 특징

4. 예술지원의 유형

가. 지원대상에 따른 유형

□ 예술지원의 수혜 대상은 예술가/매개자/향유자로 구분됨

○ 정책 지원대상으로는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와 그것을 향수하는 향유자, 그리고 그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자(배급, 유통단계)로 이루어짐

○ 예술가 지원사업

– 예술가 혹은 예술단체에 대한 작품 창작이나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최근 예술인 복지제도도 해당됨

– 예술가 지원은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의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의 특성상 생산자 지원에 대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짐

○ 향유자 지원

–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관람객 또는 일반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함

– 향유자 지원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있음(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

○ 매개자 지원

– 문화예술 시설, 비평가, 이론가, 행정가, 경영자 지원, 교육지원, 문화예술관련 학술지나나 서적 발간 등이 매체 지원에 속함

– 공간운영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창작, 유통, 향유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임

□ 사업목적에 따라 직접수혜자와 간접수혜자는 달라질 수 있음

– 위 수혜대상은 사업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그 목적에 따라 직접수혜자와 간접 수혜자가 바뀔 수 있음

– 가령 창작지원사업에서는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직접수혜자가 되고 관객이나 시설인 간접수혜자가 됨

– 반면 향유 및 교육사업에서는 향유자 또는 일반국민이 직접수혜자가 되고 사업진행을 위해 동원되는 예술가, 예술단체, 강사, 시설 등이 간접 수혜자가 됨

나. 지원목적에 의한 유형

□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유형화

○ 예술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목표로는 '접근성 제고', '창작 활성화', '교육기회 제공' 등이 있으며 목표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짐

– '접근성 제고' 지원사업은 많은 나라에서 가장 강조되는 정책 중 하나임. 관객지원 프로그램, 관객개발 프로그램, 문화소외지역이나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들이 이에 해당됨

– '창작 활성화' 지원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예술 활동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많은 국가에서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예술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 '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예술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통해 국민의 인성 개발, 정서 순화,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대상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학교나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범죄예방이나 정신치료 프로그램, 교도소, 군대에서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 이 외에도 '예술인 복지', '문화통합', '문화 민주주의 확대', '문화다양성 확보', '문화정체성 강화',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확대', '예술의 경제성 제고', '예술의 우월성 향상', '지역공동체성 형성', '전달성 강화' 등의 정책목표들이 있음[6)]

다. 문화예술의 생태 구조에 따른 유형

□ 문화예술의 생태 구조는 크게 '창작', '유통 및 매개', '향유 및 교육'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창작지원사업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특수성 때문에 예술 창작에 공적 자금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음. 예술가 지원은 예술가나 예술단체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 예술가나 예술단체는 공공지원을 통해 직접 운영되는 국공립 단체와 자생적으로 생성된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로 분류할 수 있음

○ 유통 및 매개 지원사업

–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의해 창작된 문화예술은 공연장, 미술관과 같은 인프라 기반과 여러 매체를 통해 유통됨

– 공연장,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축제, 매체, 연구활동 지원 등이 유통 및 매개 지원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창작과 향유의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주됨

○ 향유 및 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향유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 예술향유를 위해 또한 예술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예술 소비 및 향유를 장려.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화예술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평등한 문화예술소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라. 지원방식에 의한 유형

▢ 예술지원은 지원방식에 따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됨

○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기금이 지원되는 경우(직접 지원)와 궁극적으로는 수혜자에게 혜택이 전달되지만 기금 지원은 다른 경로를 거쳐 가는 것(간접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 지원의 경우는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재원이 지정 사업에 직접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행되는 지원 방식을 의미

– 재정지원(보조금, 기금 등), 시설설립 및 운영 지원, 예술단체 지원 등이 대표적임

– 예시 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용되는 창작 활동 지원과 활성화 사업 지원, 시설 운영 지원 등이 있음

○ 간접 지원은 조세정책, 보호규제, 예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예술 산업을 간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지원방식임

– 간접 지원의 경우는 법이나 제도를 통한 지원, 예술인 복지제도, 인프라 조성 및 대여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표적 예로 창작 환경 및 기반 마련 사업, 정책/평가/연구 보존, 인력 양성 지원사업 등이 있음

제3장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1. 개요
2. 공공부문 지원 체계
3. 조사범위
4. 자료수집
5. 규모 산출 방법
6. 2013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
7. 2012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
8. 2012년, 2013년 지원규모 비교
9. 수혜현황
10.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제3장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1. 개요

□ 공공부문 예술지원 현황 조사에서는 예술지원 체계를 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 예술지원사업의 조사대상을 결정하고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술지원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공공지원주체들을 정책 전달체계에 따라 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 공공부문 예술지원 총규모 및 사업 특성별 규모 분석

○ 본 조사의 목적은 2013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를 추정하는 것임

– 기관별 예산서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재원 출처와 사업실행을 구분하고 각각 주체별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사업유형, 지역, 장르 등 사업과 관련된 여러 속성별로 지원규모를 분석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문화재단 등 여러 지원주체별로 실행하는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2012년 예술지원규모 파악도 동시에 진행하여 주요 기준에 따라 2013년 지원규모와 비교, 분석하고자 함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수혜현황 파악

○ 레벨2에 해당하는 지원기관(〈예술지원체계 3단계 모형〉 참조)을 대상으로 진행 사업의 수혜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2. 공공부문 지원 체계

□ 사업 전달체계에 따라 공공부문 예술지원체계 구조화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원주체를 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예술지원사업 전달체계에 따라 기획, 지원, 집행 등의 지원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들을 그룹화 하고자 함

– 서비스 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기획, 지원, 관리와 관련된 행정체계와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됨[7)]

7) 김세훈(2014)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 본 연구에서는 예술서비스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하고 행정체계는 다시 기획과 지원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자 함

그림 3-1 | 공공예술지원 전달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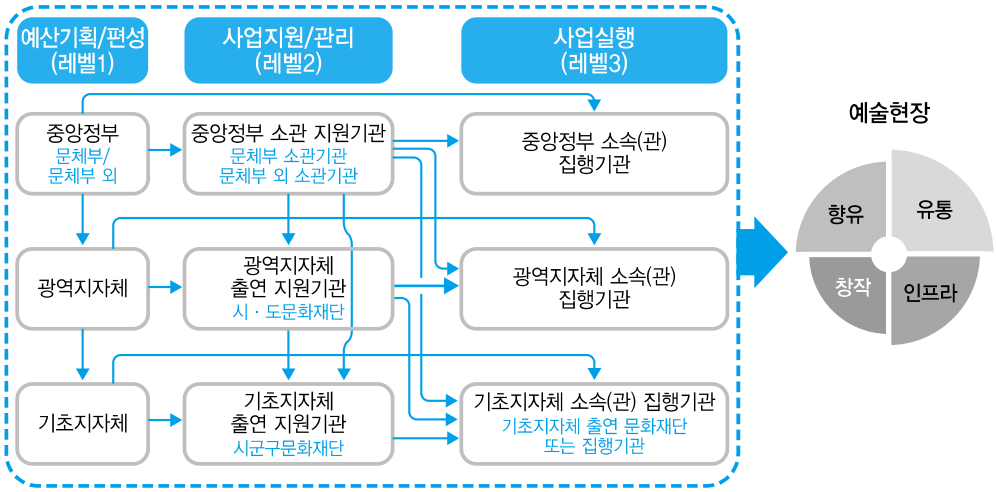

▢ 예술지원체계 3단계 모형

○ 예술지원주체를 그 역할에 따라 '예산 기획/편성', '사업 지원/관리', '사업실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레벨1', '레벨2', '레벨3'으로 명명함

그림 3-2 | 예술지원체계 3단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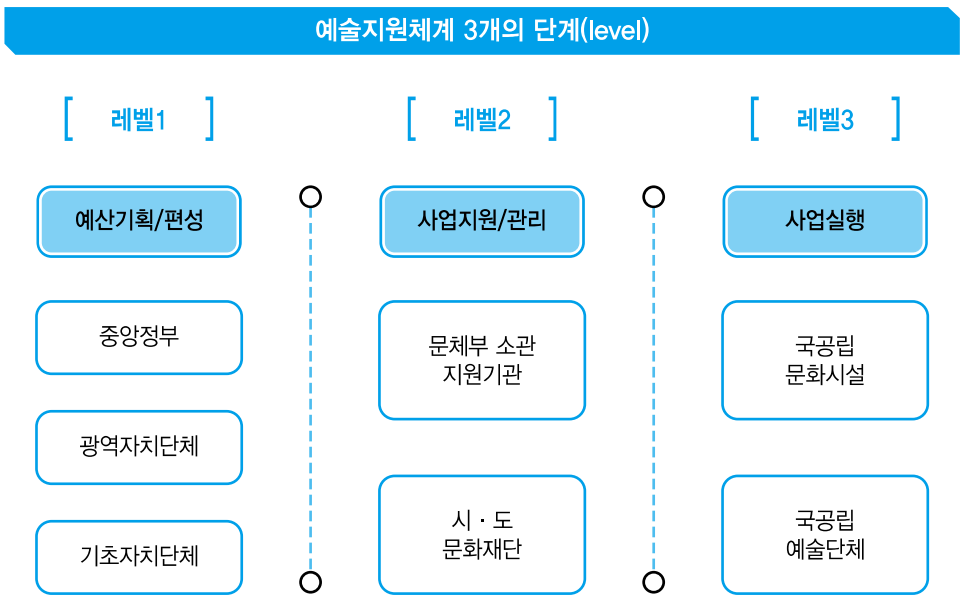

○ 레벨1: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을 기획/편성하는 주체
– 예산 기획/편성 역할을 주되게 하며, 공공시설, 공공단체, 축제 등을 직접 운영하기도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됨
–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7개 부처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228개

○ 레벨2: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지원/관리하는 주체
– 레벨1로부터 이전 받은 예산을 집행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하위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함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문화재단 등이 해당됨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 시·도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 2012년, 2013년에는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의 경우 문화재단이 없음 (충남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함)

○ 레벨3: 최종 수혜자에게 예술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
– 예술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이며, 재정적 소요가 크지 않은 사업이나 비재정적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실행하기도 함
– 국공립문화시설(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예술단체(국립발레단 등)이 대표적인 레벨3의 기관임
– 기초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 등)은 레벨2의 성격을 지향하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예술공간 관리 성격이 강하고 문화예술지원 비중이 작아 레벨3에 포함시킴

3. 조사범위

가. 지원주체 범위

□ 앞에서 유형화한 지원체계 중 레벨1과 레벨2에 속한 기관으로 한정하여 조사
○ 레벨1의 중앙정부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만 포함
– 타부처 사업의 경우 예술지원이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술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예산서 상으로 예술지원 금액만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타부처의 예술지원 관련 사업은 3장에서 정성적 조사결과로 포함

○ 레벨3에 속한 기관들은 상위 기관에 예결산 보고를 하므로 조사범위 내 기관을 통해 레벨3의 지원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국립발레단 예산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산서에서 파악 가능하고, 세종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예산서에서 파악 가능함

○ 레벨3 기관 중 부분적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별도의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지 않거나 재정적 소요가 크지 않은 비예산사업인 경우가 많다고 추정되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결과적으로 문체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문화재단 등 265개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됨

표 3-1 | 조사대상 지원주체

구분	지원기관	개수
정부 (레벨1)	중앙정부(문체부)	1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8
	소계	246
소관기관 (레벨2)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7
	시·도문화재단	12
	소계	19
계		265

나. 장르 범위

□ 예술 장르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관련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건축, 박물관, 도서관, 출판, 콘텐츠(영화, 게임 등), 문화재 등은 제외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순수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춤

그림 3-3 | 문화예술 장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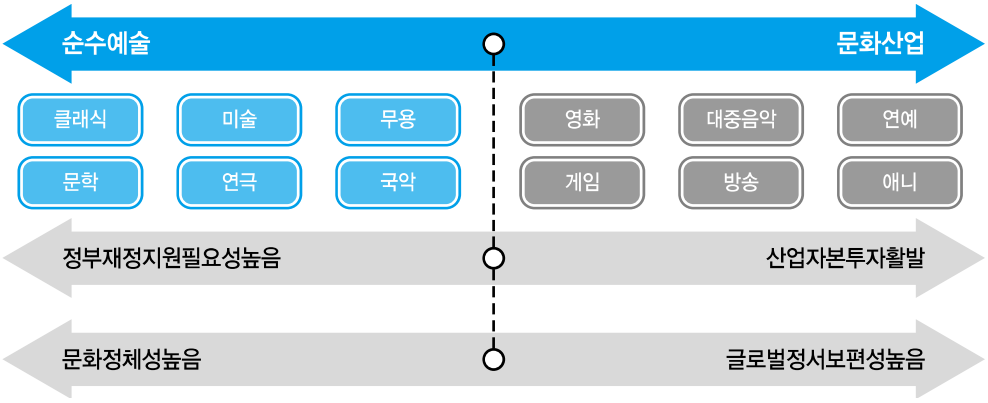

○ 순수예술분야에 속하는 장르들은 시장기반이 미약하여 예술의 지속보존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산업화된 예술장르(영화, 대중음악, 방송 등)는 산업자본이 활발하게 투여되고 있어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콘텐츠도 포함됨

– 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과 콘텐츠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민속놀이, 예절교육(충효교실, 예절문화교육 등), 향토문화, 정월대보름제 등예술 장르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제외

○ 문화재, 문화유산 등 문화재청 소관 장르와 박물관 등도 본 조사에서 제외함

○ 조사범위에는 위 장르들이 포함되나 장르별 규모 추정은 창작분야에 한정함

다. 사업 범위

□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지원사업은 그 목적에 따라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문화예술 인프라 사업, 타목적 사업에 문화예술이 포함된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사업유형1: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 등이 수혜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문화부 및 산하기관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됨

– 사업유형2: 문화예술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으로 창작공간, 미술관, 공연장, 문학관 등이 해당됨

– 사업유형3: 문화예술 이벤트 성격이 강하거나 문화예술과 연결시키고 있지만 사업목적이 예술지원이 아닌 타목적 사업이 이에 해당됨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사업 등)

그림 3-4 | 문화예술지원사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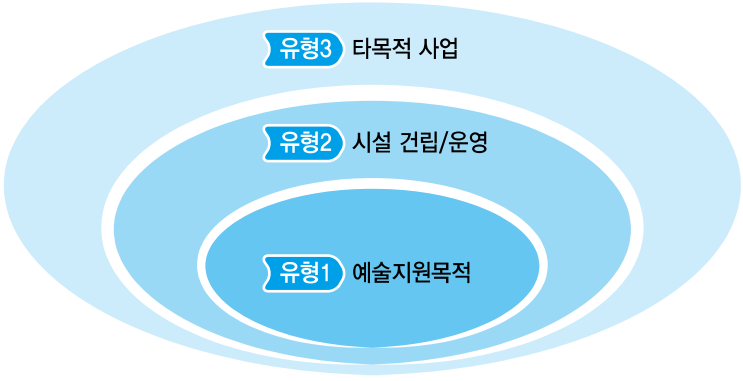

▢ 예술지원 목적 사업과 예술지원을 위한 시설 건립 및 운영 사업이 포함되며, 타목적 지원사업(예. 재래시장 살리기,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제외

○ 유형1의 경우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 등 예술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본 연구목적에 가장 부합함

○ 유형2의 경우 인프라 건설 및 운영 사업으로 일반 관람객들이 첫 번째 수혜자이나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누림

○ 유형3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문화예술지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업의 근본 목적이 문화예술지원보다는 다른 목적이 큰 경우이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함

– 단, 유형3의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정성적 조사로 대체함

○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등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은 포함하되 환경 등 정비 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은 제외함

그림 3-5 | 공공부분 조사대상(기관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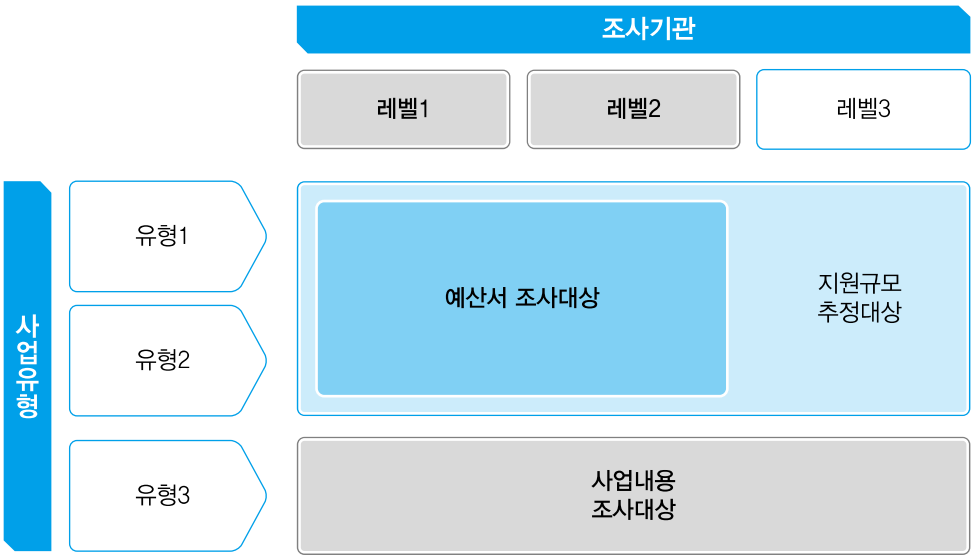

▢ 지원사업은 '창작', '유통/매개', '향유' 등 예술 생태계 구조를 따라 유형화시킴

표 3-2 | 사업유형 구분

중분류	소분류
창작지원	작품(프로그램)지원
	단체(운영)지원
	예술인지원
	레지던시
유통/매개 지원	공연장지원
	미술관지원
	기타기반시설지원
	축제지원
	국제교류지원
	컨설팅
	정보소통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향유지원
	생활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예술가 복지 지원	예술인복지지원
	전문인력양성
하드웨어 건립	공연장건립
	미술관건립
	기타기반시설건립
	복합시설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공연장운영
	미술관운영
	기타기반시설운영
	공연단체운영
	축제운영
	공공예술기관지원
	예술교육기관지원
기타	기타지원

○ 본 조사의 대상은 가장 직접적 예술지원사업(유형1)과 예술공간 건립 및 운영 사업(유형2)을 포함하고 있음
○ 예술 직접 지원사업(유형1)은 예술 생태계 구조를 따라 '창작', '유통/매개', '향유'로 재분류하였으며, 예술교육은 향유 지원의 하위 유형으로 포함하였음
○ '예술인 복지' 유형 추가
–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 지원' 유형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유형 추가
– 민간부문 지원과 공공부문 지원의 비중을 분석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유형을 별도로 구분함

□ 총 6개의 대분류와 28개의 중분류 사업유형으로 구분됨
○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작품 혹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한 경우는 창작지원 중 작품(프로그램) 지원에 포함되며, 예술가가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경우도 창작지원 중 작품(프로그램) 지원에 포함됨
– 문화재는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중요무형문화재(예술가)의 공연 지원은 창작지원 중 예술인 지원으로 분류함
○ 유통/매개 지원 중 정보소통에는 실태조사, 기초연구, 시장조사, 세미나, 포럼 등이 포함됨
○ 교육 및 향유 지원은 예술향유, 생활예술, 예술교육이 포함됨
– 일반인의 예술창작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생활예술지원이고, 관람 등 소비활동만 포함되어 있으면 예술향유지원으로 분류함. 예를 들어, 예술동아리활동 지원은 전자에 포함되고, 찾아가는 문화 행사는 후자에 포함됨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은 교육 및 향유 지원 중 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되고,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은 예술가 복지 지원 중 전문인력양성에 포함됨
– 예술강사 지원은 교육 및 향유 지원 중 문화예술교육에 포함됨
○ 하드웨어 건립 및 운영에는 공연장, 미술관, 복합시설, 기타시설 등이 포함됨
– 건물 보수(리노베이션/리모델링)는 하드웨어 건립에 포함되고, 예술 중심의 문화지구조성도 하드웨어 건립 중 기타기반시설 건립에 포함됨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은 민간시설이나 단체 지원과 구분된 지원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별도로 둠
– 공연장의 경우 민간 공연장을 지원하는 경우 유통/매개 지원 중 공연장 지원에 포함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중 공연장 운영에 포함되며, 이러한 규칙은 미술관, 기타기반시설, 공연단체, 축제에도 적용 됨
– 문예회관, 기초문화재단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중 공연장 운영에 포함됨
– 문화의 집,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원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중 기타기반시설 운영에 포함됨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하위 사업의 경우 목적에 해당하는 상위 사업의 유형으로 분류함. 예를 들어, 건립을 위한 시장조사는 유통/매개 지원의 정보소통이 아니라 하드웨어 건립에 포함됨

라. 재원(예산내역) 범위

□ 앞에서 언급한 사업 범위와 장르 범위를 적용하면, 문체부 예산서상 문화예술부문 중 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이 포함됨

○ 2013년의 경우 문체부 예산서상 문화예술부문 1,746,138백만 원 중 760,563백만 원(43.6%)에 해당됨

-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중에서 본부는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포함되며, 종무실,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국,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민소통실,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제외됨
-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중에서 소속기관은 예술원사무국,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중고등학교, 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포함되며, 국립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제외됨
-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중에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포함되며,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은 제외됨
-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중 이번 조사에 포함한 부분의 예산은 914,585백만 원이고, 그 중에서 세부사업을 다시 장르 범위, 사업 범위로 검토하고 레벨2의 경상운영비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760,563백만 원이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됨

○ 문체부 예산서상 관공부문, 체육부문, 문화관광일반부문은 제외됨

- 기금 중 관광부문, 체육부문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제외됨
-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일부가 레벨2에 해당하는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의 사업에 지원된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됨

○ 축제지원이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중 예술정책관 예산서에 있을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만, 관광부문 혹은 체육부문 예산서에 있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 부서 하위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 문화예술과(국), 문화예술정책과(국) 등 문화예술과 하위 사업을 모집단으로 두고 사업별 예산을 파악하였음

- 자치단체의 부서가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과처럼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관광과 혹은 체육과 예산서에 있는 축제지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됨
- 단, 시설(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 예산이 타부서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함

□ 레벨1과 레벨2의 경상운영비는 제외하되, 레벨3의 경상운영비는 포함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산서에서 사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상운영비는 레벨1의 경상운영비로 간주하여 이번 조사범위에서 제외

○ 특정 사업을 위한 경상운영비는 레벨3의 경상운영비로 간주하여 이번 조사범위에 포함

4. 자료수집

▢ 총 지원규모 추정을 위해 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65개 예술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조사

표 3-3 | 조사대상 기관

구분	지원기관	개수	비고
정부 (레벨1)	중앙정부	1	문화체육관광부 중 문화예술부문
	광역자치단체	17	문화예술 관련 부서
	기초자치단체	228	문화예술 관련 부서
	소계	246	
소관기관 (레벨2)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7	
	시·도문화재단	12	
	소계	19	
계		265	

○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 관련과(국),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문화재단 265개 예술지원기관의 세출예산서(본 예산서 기준)를 전수 조사

○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선별, 해당 예산 파악

○ 세출예산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본 조사범위(사업 범위, 장르 범위 등)를 확인 후 포함되는 사업만 추출함

표 3-4 | 예산서 구조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부서	000
정책사업	000
단위사업	000
세부사업	**000**
000 편성목	000
000 통계목 산출기초 000	000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의 경우 결과보고서 상의 결산서의 정보가 더 자세하고 정확하다고 판단하여 결산서를 사용함

▢ 구체적 조사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3-6 | 공공부문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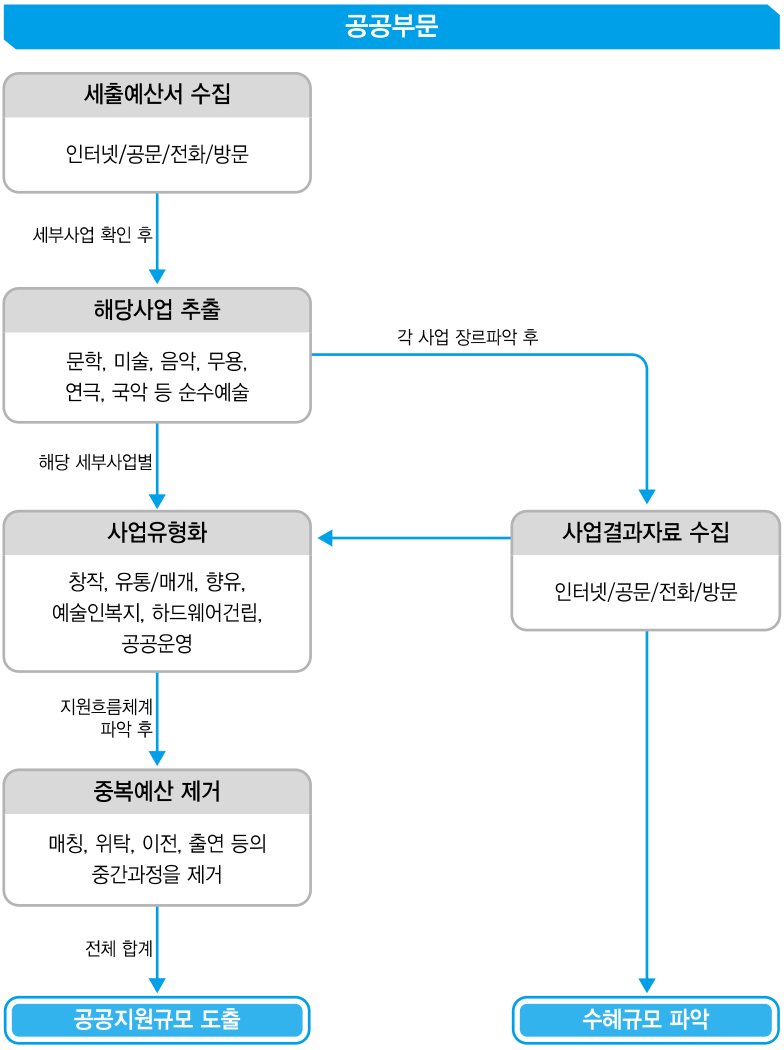

○ 세출예산서를 수집하여 예산서에 포함된 세부사업을 확인하여 본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만 추출함

○ 추출된 사업을 유형화함

○ 타 주체로 이전된 예산이나 출연금 등 두 주체간 중복된 사업은 제거하여 공공지원규모를 도출함

▢ 수혜현황 자료는 문체부 소관기관과 시·도문화재단(레벨2 기관)에 대해서 공개자료 또는 자료 요청을 통해 수집함

5. 규모 산출 방법

▢ 공공부문 예산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다른 주체로 이전이 됨

○ 각 주체별로 예산서를 금액을 단순히 합하게 되면 중복이 발생하게 됨

그림 3-7 | 주체 간 예산 이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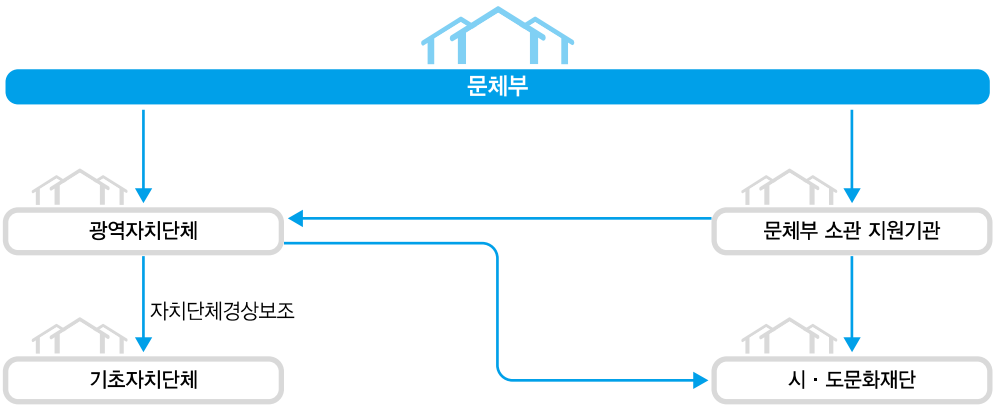

▢ 총규모는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별 지원액을 지원주체별로 합산한 후 기관 별 이전에 따른 중복 예산을 제외한 다음 식으로 계산함

총 지원규모 = 문체부 직접사업 예산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직접사업 예산
+ 광역자치단체 예산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 시·도문화재단 자체사업 예산
+ 기초자치단체 예산

6. 2013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

가. 총규모

▢ 2013년 공공지원 총규모는 2조 348억 원

○ 2013년 총 지원규모는 2조 348억 원으로 2012년 총 지원규모인 1조 8,355억 원에 비해 10.9% 증가함

그림 3-8 | 2013 총 지원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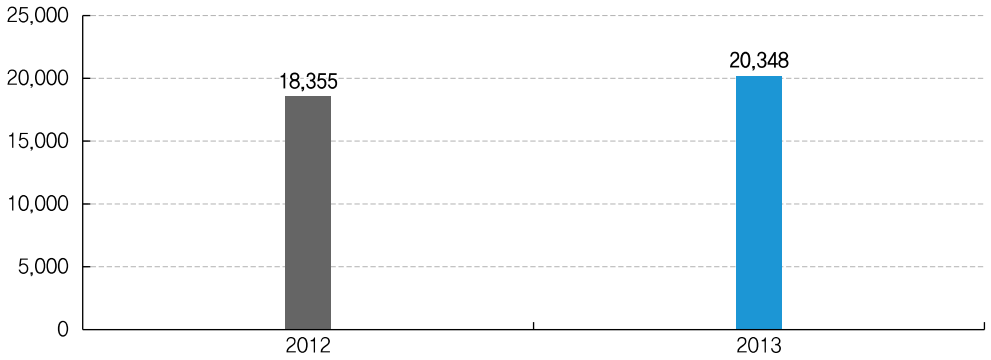

나. 지원 구조

1)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 2013년 총규모인 2조 348억 원의 출처를 보면 문체부(문예기금 포함)가 가장 많고, 실행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38.1%로 가장 많음

그림 3-9 | 예산의 출처와 실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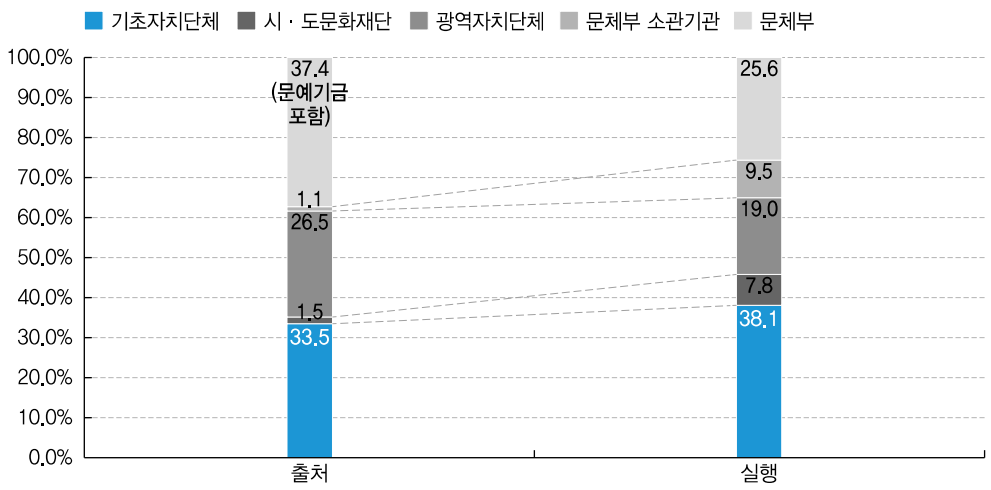

○ 2013년 총규모인 2조 348억 원의 출처를 보면 문체부(문예기금 포함)가 37.4%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가 33.5%로 다음

○ 사업을 실행한 관점에서 보면 문체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의 비율이 낮아지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의 비중이 높아짐

– 문체부는 출처의 37.4%를 부담하였으나 25.6%만 실행
– 광역자치단체는 출처의 26.5%를 부담하였으나 19%만 실행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출처의 1.1%를 부담하였으나 9.5%를 실행
– 기초자치단체는 출처의 33.5%를 부담하였으나 38.1%를 실행
– 시·도문화재단은 출처의 1.5%를 부담하였으나 7.8%를 실행

2) 예산 흐름도

그림 3-10 | 예산 흐름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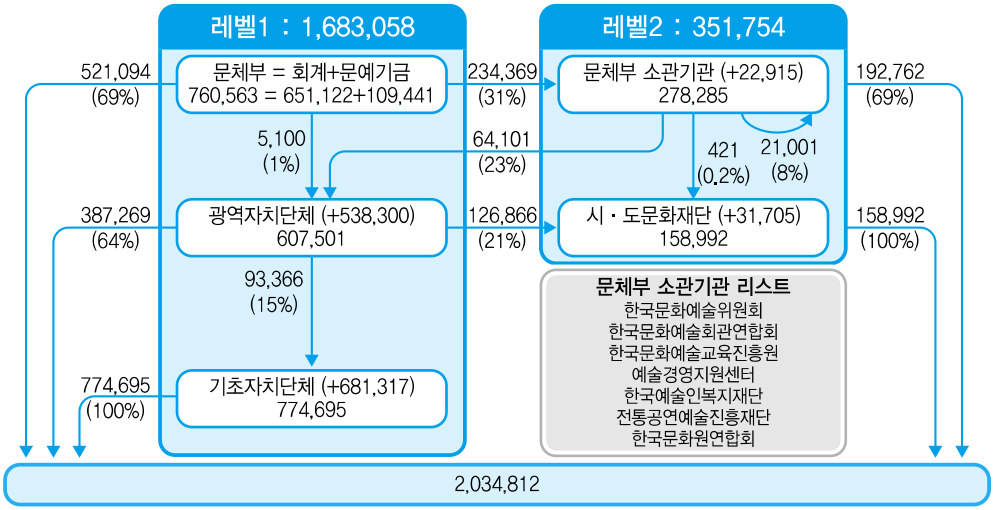

□ 총규모 2조 348억 원 중 37.4%인 760,563백만 원의 출처는 문체부(문예기금 109,441백만 원 포함)임

○ 760,563백만 원 중에서 234,369백만 원(31%, 문예기금 109,441백만 원 포함)은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에게, 5,100백만 원은 광역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킴

○ 이전시키고 남은 나머지 521,094백만 원(총규모의 25.6%, 문체부 예산의 69%)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348억 원 중 1.1%인 22,915백만 원의 출처는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임

○ 자체적으로 부담한 22,915백만 원과 문체부로부터 이전받은 234,369백만 원(문예기금 109,441백만 원 포함) 그리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간 이전 금액인 21,001백만 원을 합한 278,285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간 이전 금액에는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게 이전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게 이전한 공연나눔 사업(신나는 예술여행, 사랑티켓,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음

○ 278,285백만 원 중에서 64,101백만 원(23%)은 광역자치단체에게, 421백만 원(0.2%)은 시·도문화재단에게, 21,001백만 원(8%)은 다른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에게 이전시킴

○ 이전시키고 남은 나머지 192,762백만 원(총규모의 9.5%,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예산의 69%)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348억 원 중 26.5%인 538,300백만 원의 출처는 광역자치단체임

○ 자체적으로 부담한 538,300백만 원과 문체부로부터 이전받은 5,100백만 원 그리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64,101백만 원을 합한 607,501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으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에는 예를 들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기금)의 문화바우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사랑티켓 사업 등 '매칭' 사업이 있음

○ 607,501백만 원 중에서 126,866백만 원(21%)은 시·도문화재단에게, 93,366백만 원(15%)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킴

○ 이전시키고 남은 나머지 774,695백만 원(총규모의 19%,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64%)은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348억 원 중 1.6%인 31,705백만 원의 출처는 시·도문화재단임

○ 자체적으로 부담한 31,705백만 원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126,866백만 원 그리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421백만 원을 합한 158,992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문화재단으로 이전된 금액에는 예를 들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등이 있음 (시·도문화재단으로의 위탁사업도 이전으로 봄)

○ 예산서 상 금액 158,992백만 원은 모두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 총규모 2조 348억 원 중 33.5%인 681,317백만 원의 출처는 기초자치단체임

○ 자체적으로 부담한 681,317백만 원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93,366백만 원을 합한 774,695백만 원이 예산서상 총 금액임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된 금액에는 예를 들어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지원, 문화학교 지원, 하드웨어 건립 사업 등이 있음

○ 예산서 상 금액 774,695백만 원은 모두 레벨3에게 지원하거나 예술가 혹은 향유자에게 직접 실행함

다. 사업유형별 규모

1) 전체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중분류로 유형화하면, 총규모 2조 348억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3.8%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20.7%, 교육 및 향유 지원 11.9%, 창작지원 7.3% 순

그림 3-11 | 전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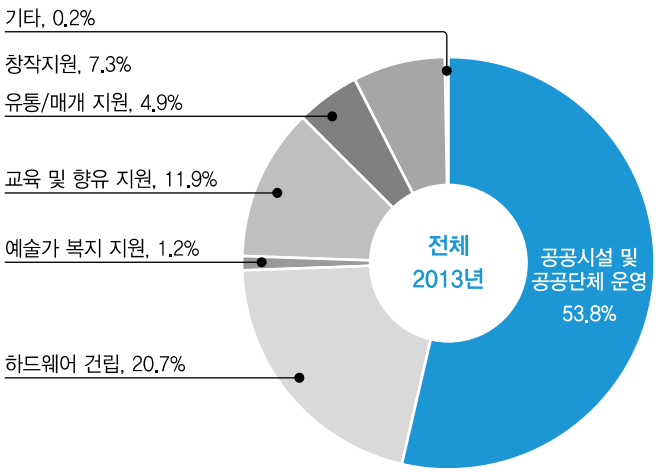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공연장운영(25.3%)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운영(9.7%), 공연장건립(8.2%) 순

* 공연장운영에는 공연장 경상운영비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3-12 | 전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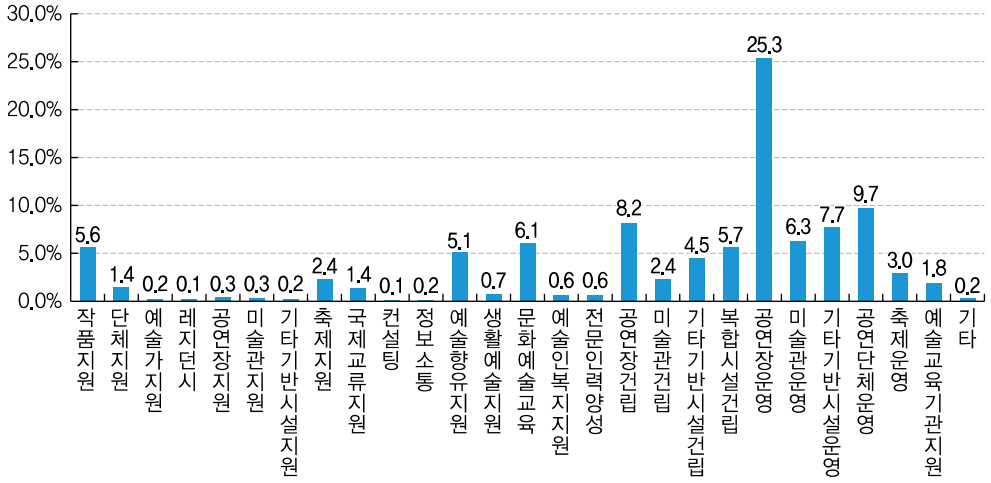

표 3-5 | 전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148,375	7.3%	작품지원	113,397	5.6%
			단체지원	29,125	1.4%
			예술가지원	3,386	0.2%
			레지던시	2,467	0.1%
유통/매개 지원	99,903	4.9%	공연장지원	6,810	0.3%
			미술관지원	6,546	0.3%
			기타기반시설지원	3,625	0.2%
			축제지원	47,908	2.4%
			국제교류지원	28,359	1.4%
			컨설팅	2,553	0.1%
			정보소통	4,102	0.2%
교육 및 향유 지원	241,542	11.9%	예술향유지원	103,062	5.1%
			생활예술지원	14,355	0.7%
			문화예술교육	124,124	6.1%
예술가 복지 지원	24,448	1.2%	예술인복지지원	12,265	0.6%
			전문인력양성	12,183	0.6%
하드웨어 건립	421,425	20.7%	공연장건립	167,046	8.2%
			미술관건립	48,145	2.4%
			기타기반시설건립	91,085	4.5%
			복합시설건립	115,149	5.7%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094,809	53.8%	공연장운영	514,579	25.3%
			미술관운영	128,408	6.3%
			기타기반시설운영	156,366	7.7%
			공연단체운영	197,989	9.7%
			축제운영	60,499	3.0%
			예술교육기관지원	36,968	1.8%
기타	4,310	0.2%	기타	4,310	0.2%
총금액	2,034,812	100%	총금액	2,034,812	100%

2)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하고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서상 금액(문예기금 포함) 760,563백만 원을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38.3%)하거나 하드웨어를 건립(26.9%)하거나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31.5%)함

그림 3-13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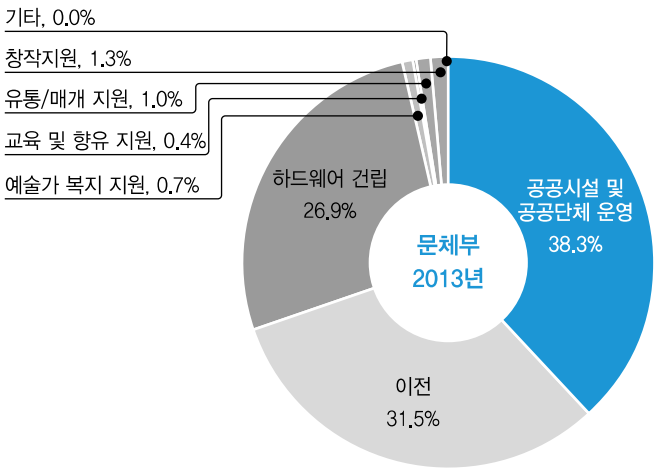

○ 문체부가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39.4%)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26.9%), 교육 및 향유 지원(22%), 창작지원(6.7%) 순

그림 3-14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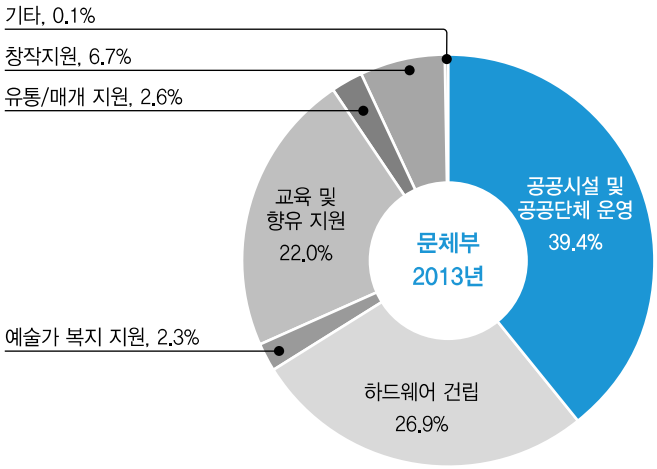

○ 문체부가 타기관으로 이전한 239,469백만 원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이 68.7%로 가장 많고, 창작지원(17.2%), 유통/매개 지원(5.3%) 순

그림 3-15 |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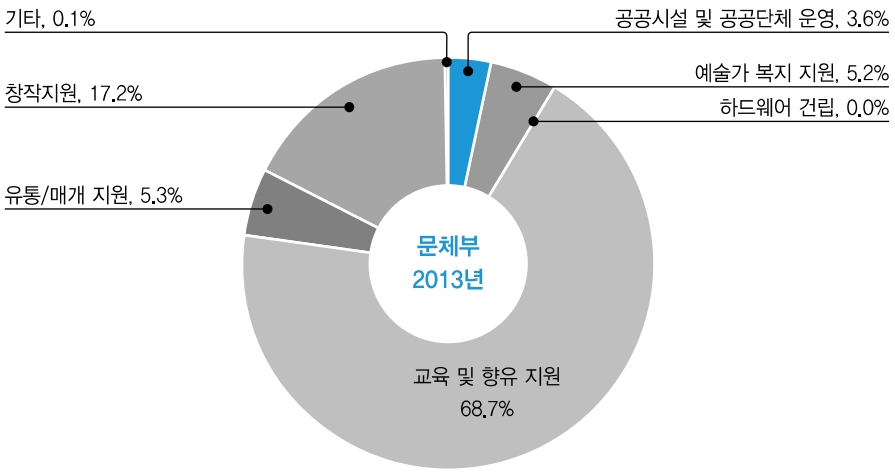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을 소분류로 유형화해보면, 문화예술교육(36.3%)이 가장 많고, 예술향유지원(28.9%), 작품지원(13.7%), 예술인복지지원(4.2%) 순

그림 3-16 |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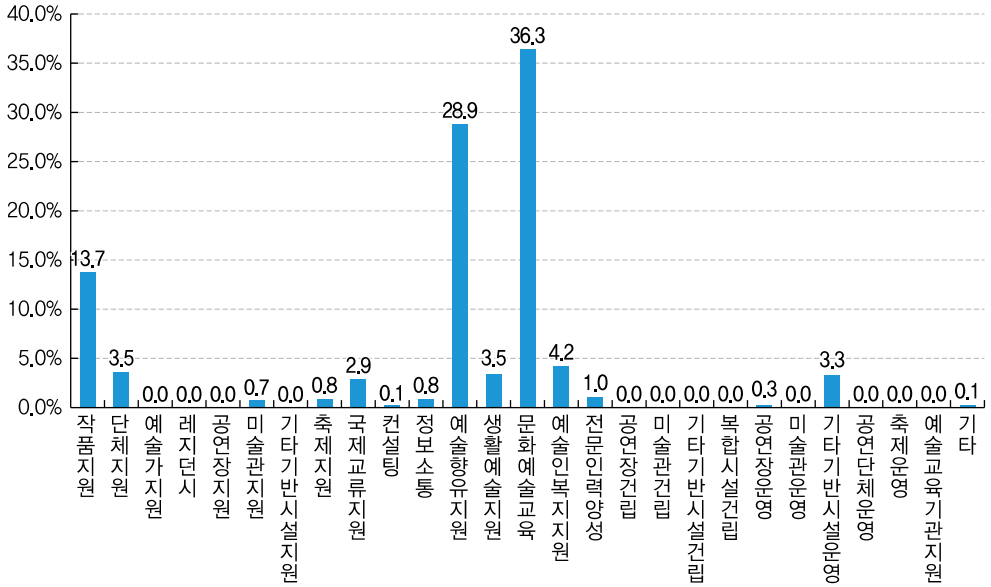

▢ 직접 실행한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과 하드웨어 건립이 대부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문체부가 직접 실행한 521,094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5.9%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39.3%, 창작지원 1.9% 순

그림 3-17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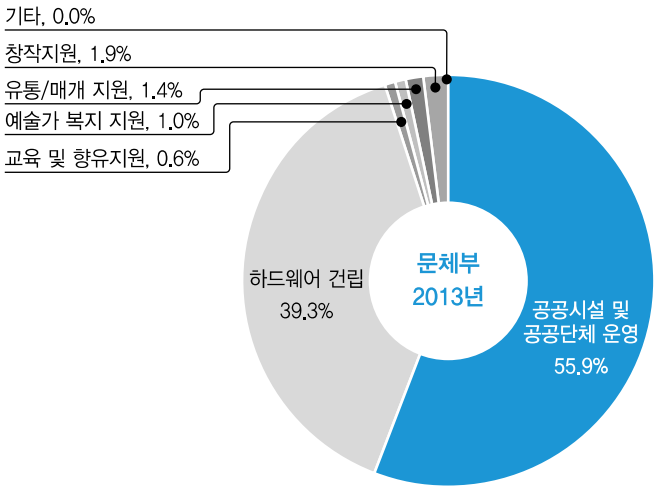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복합시설 건립(21.1%)이 가장 많고, 공연장운영(18.4%), 미술관운영(14.2%), 기타기반시설운영(9.1%) 순

그림 3-18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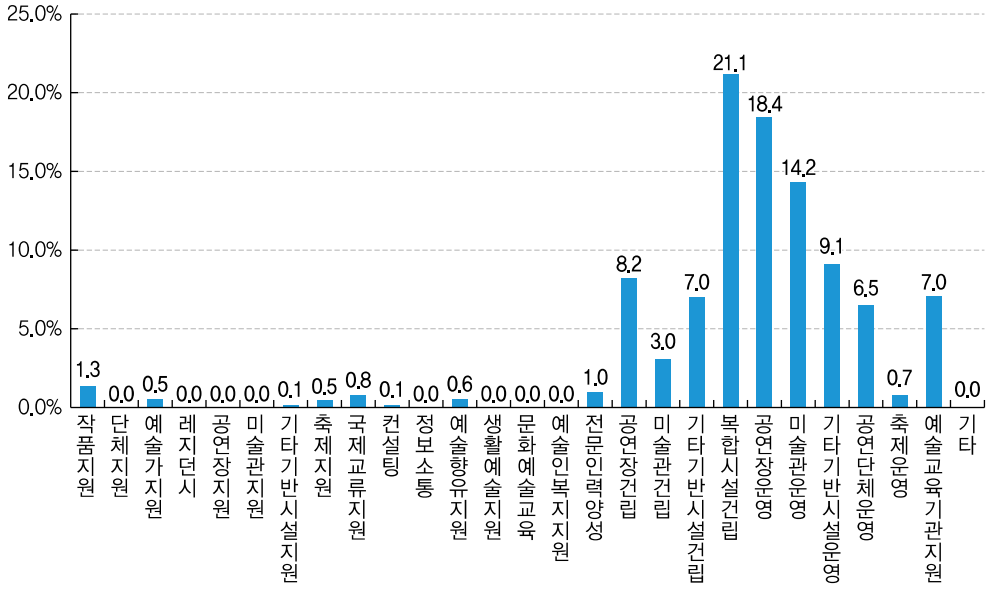

표 3-6 |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실행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9,648	1.9%	작품지원	7,000	1.3%
			단체지원	0	0.0%
			예술가지원	2,648	0.5%
			레지던시	0	0.0%
유통/매개 지원	7,235	4.9%	공연장지원	0	0.0%
			미술관지원	0	0.0%
			기타기반시설지원	500	0.1%
			축제지원	2,350	0.5%
			국제교류지원	3,977	0.8%
			컨설팅	408	0.1%
			정보소통	0	0.0%
교육 및 향유 지원	3,103	0.6%	예술향유지원	2,903	0.6%
			생활예술지원	200	0.0%
			문화예술교육	0	0.0%
예술가 복지 지원	4,968	1.0%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4,968	1.0%
하드웨어 건립	204,814	39.3%	공연장건립	42,693	8.2%
			미술관건립	15,729	3.0%
			기타기반시설건립	36,390	7.0%
			복합시설건립	110,002	21.1%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291,126	55.9%	공연장운영	95,899	18.4%
			미술관운영	74,252	14.2%
			기타기반시설운영	47,251	9.1%
			공연단체운영	33,676	6.5%
			축제운영	3,530	0.7%
			예술교육기관지원	36,518	7.0%
기타	200	0.0%	기타	200	0.0%
총금액	521,094	100%	총금액	521,094	100%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

□ 교육 및 향유, 창작, 예술가 복지를 지원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함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예산서상 금액 278,285백만 원을 교육 및 향유를 지원(47.2%)하거나 창작을 지원(7.5%)하거나 타기관에 이전(30.7%)함

그림 3-19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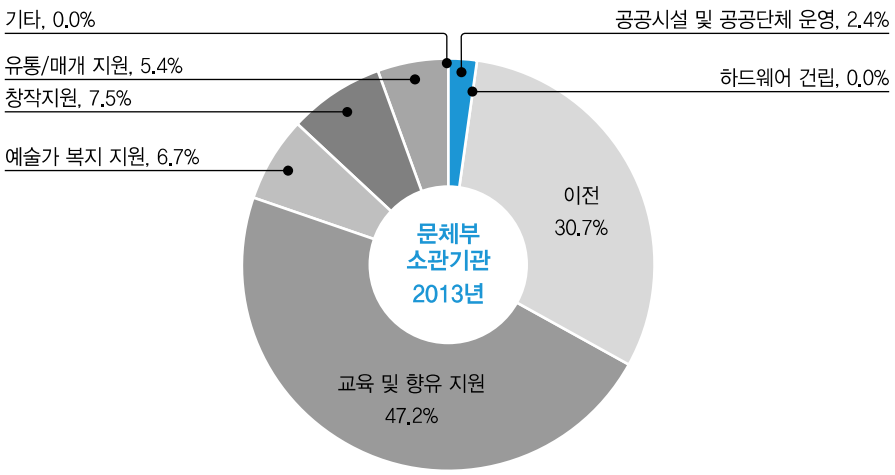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70.2%)이 가장 많고, 창작지원(14.9%), 예술가 복지 지원(7%) 순

그림 3-20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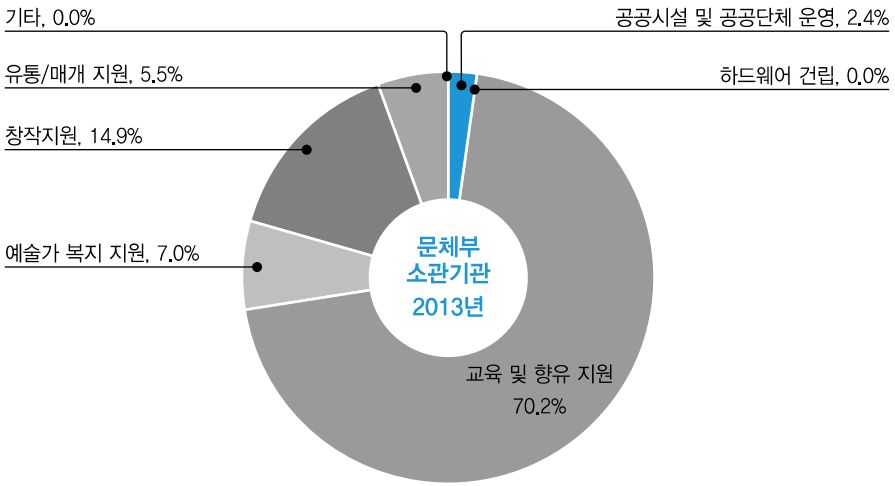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85,523백만 원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이 74.8%로 가장 많고, 창작지원(24%) 순

그림 3-21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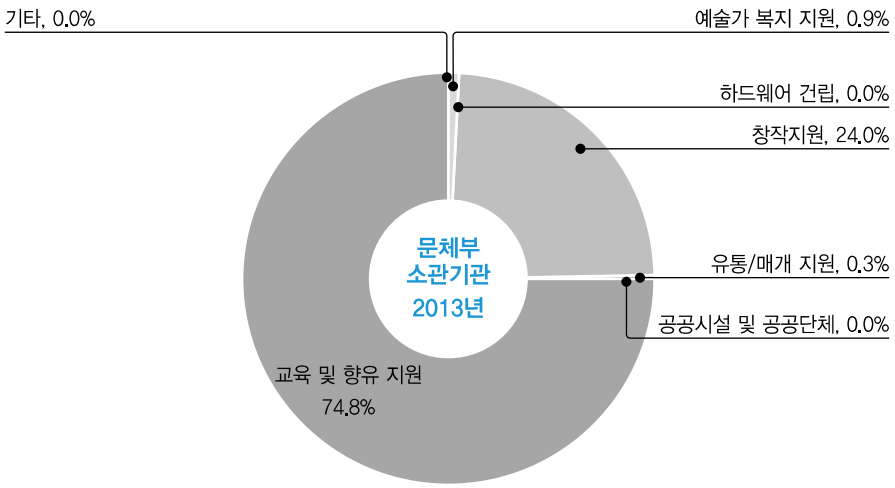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을 소분류로 유형화해보면, 예술향유지원(62.9%)이 가장 많고, 작품지원(14.6%), 문화예술교육(11.9%), 단체지원(9.4%) 순

그림 3-22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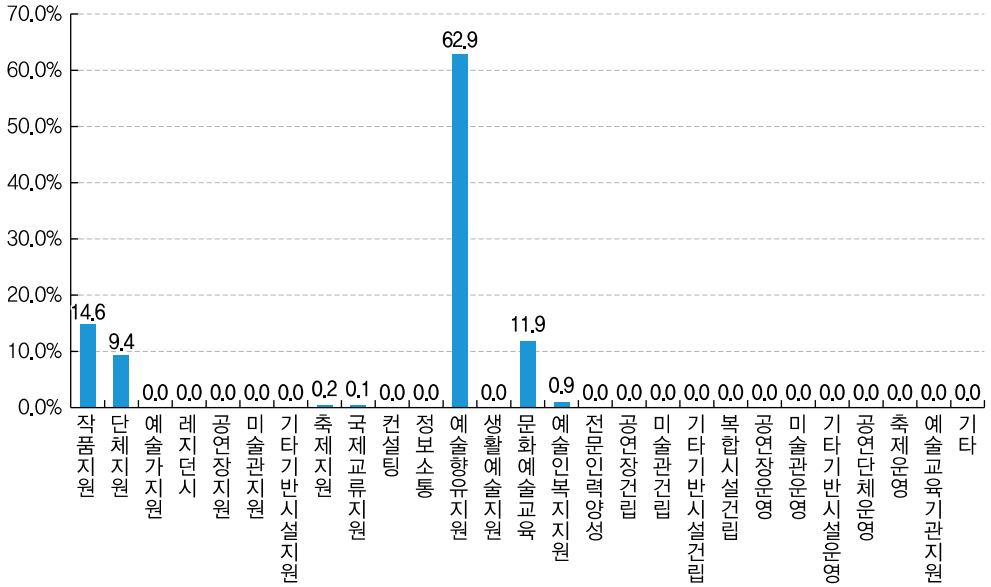

▢ 직접 실행한 사업은 교육 및 향유, 창작, 예술가 복지, 유통/매개 지원이 대부분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직접 실행한 192,762백만 원 중 교육 및 향유 지원이 68.2%로 가장 많고, 창작지원(10.9%). 예술가 복지 지원(9.6%), 유통/매개 지원(7.8%) 순

그림 3-23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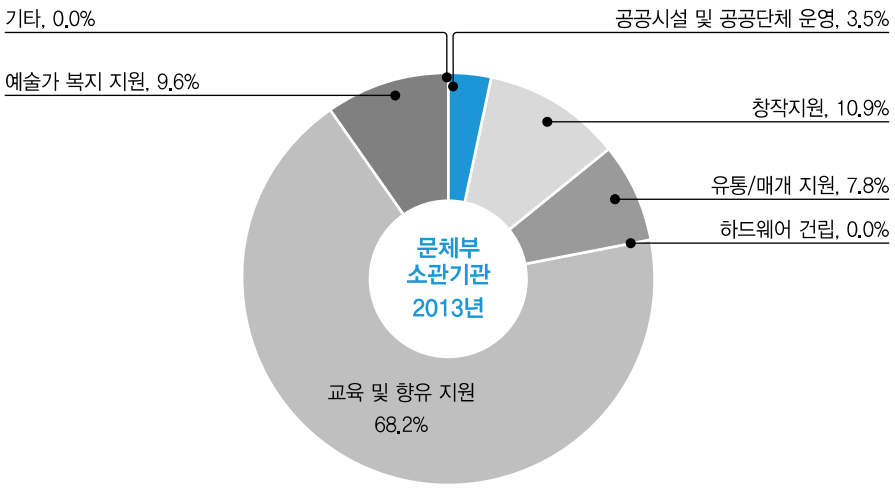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문화예술교육(50.7%)이 가장 많고, 예술향유지원(16.8%), 작품지원(10.7%), 예술인복지지원(6.3%) 순

그림 3-24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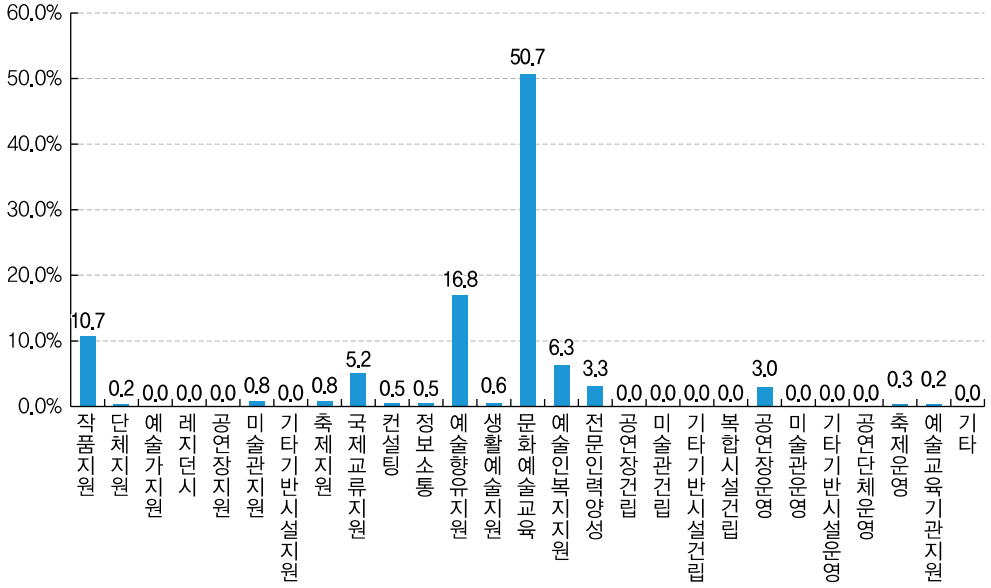

표 3-7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21,089	10.9%	작품지원	20,689	10.7%
			단체지원	400	0.2%
			예술가지원	0	0.0%
			레지던시	0	0.0%
유통/매개 지원	15,108	7.8%	공연장지원	0	0.0%
			미술관지원	1,564	0.8%
			기타기반시설지원	0	0.0%
			축제지원	1,622	0.8%
			국제교류지원	9,995	5.2%
			컨설팅	985	0.5%
			정보소통	943	0.5%
교육 및 향유 지원	131,372	68.2%	예술향유지원	32,430	16.8%
			생활예술지원	1,240	0.6%
			문화예술교육	97,702	50.7%
예술가 복지 지원	18,470	9.6%	예술인복지지원	12,165	6.3%
			전문인력양성	6,305	3.3%
하드웨어 건립	0	0.0%	공연장건립	0	0.0%
			미술관건립	0	0.0%
			기타기반시설건립	0	0.0%
			복합시설건립	0	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6,723	3.5%	공연장운영	5,773	3.0%
			미술관운영	0	0.0%
			기타기반시설운영	0	0.0%
			공연단체운영	0	0.0%
			축제운영	500	0.3%
			예술교육기관지원	450	0.2%
기타	0	0.0%	기타	0	0.0%
총금액	192,762	100%	총금액	192,762	100%

4) 광역자치단체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하거 하드웨어 건립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함

○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서상 금액 607,501백만 원을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36.4%)하거나 하드웨어를 건립(10.7%)하거나 타기관에 이전(36.3%)함

그림 3-25 |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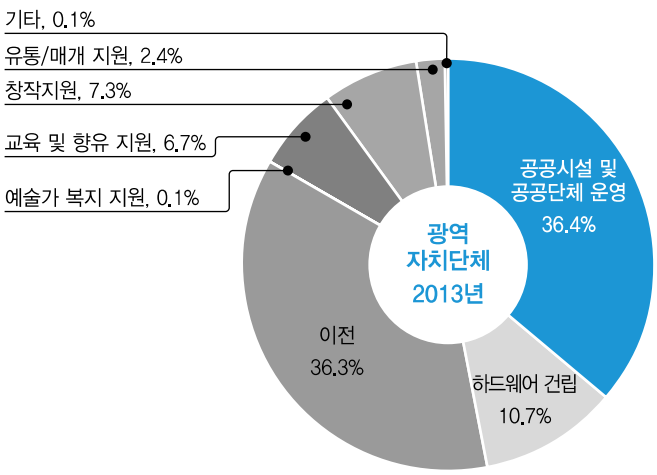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1.6%)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20.6%), 교육 및 향유 지원(12.9%), 창작지원(10.3%) 순

그림 3-26 |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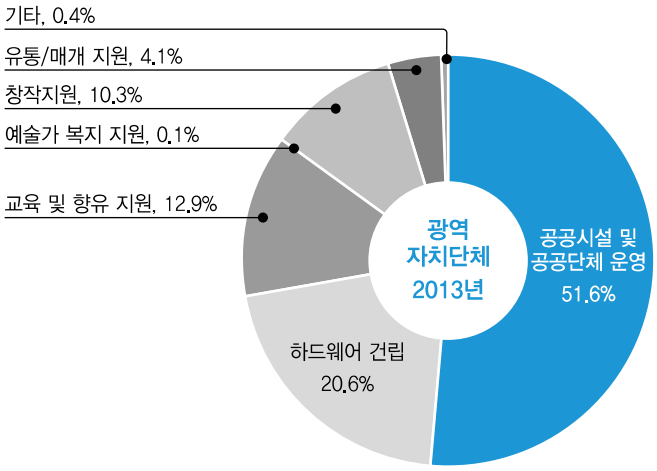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93,366백만 원(광역자치단체 예산의 15.4%)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건립이 41.4%로 가장 많고, 교육 및 향유 지원(25.4%),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20.7%) 순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문화재단에 위탁/이전한 사업의 경우 유형 구분이 어려워, 이번 분석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만 분석함

그림 3-27 |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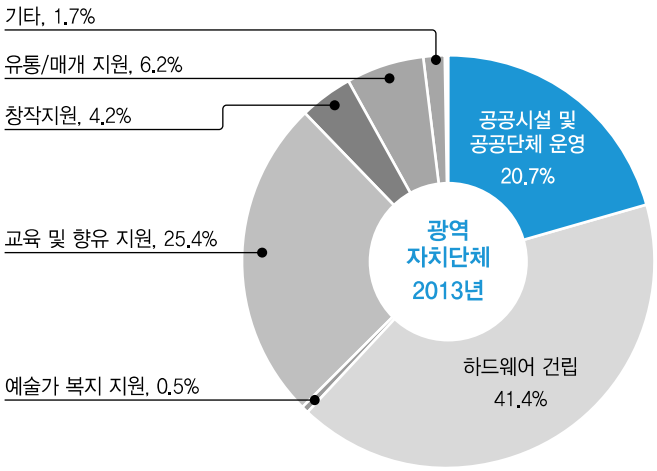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금액을 소분류로 유형화해보면, 공연장건립(25.8%)이 가장 많고, 예술향유지원(18.4%), 기타기반시설건립(9.3%) 순

그림 3-28 |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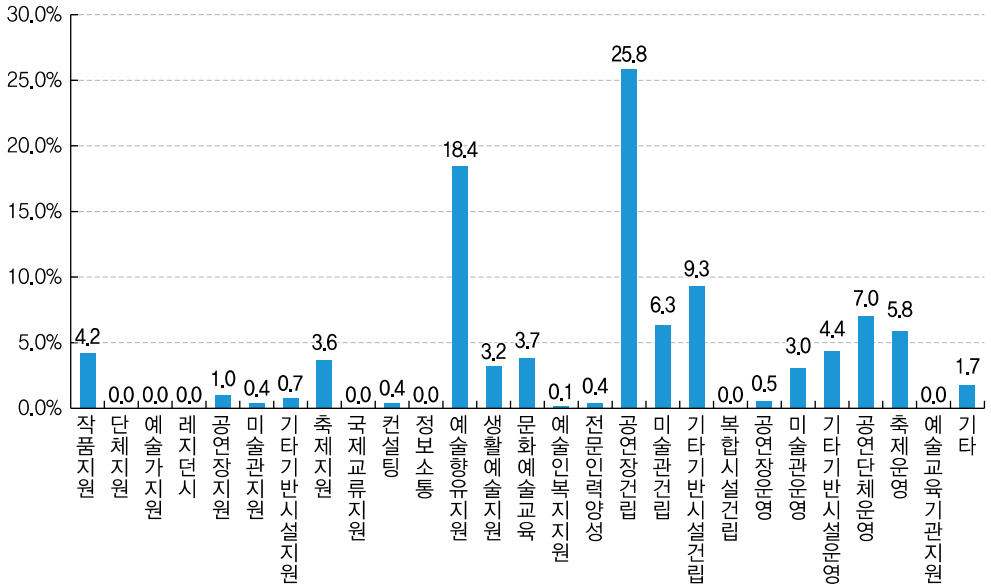

□ 직접 실행한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창직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중분류로 유형화하면, 광역자치단체 514,135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7.2%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16.8%), 창작지원(11.4%), 교육 및 향유 지원(10.6%) 순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문화재단에 위탁/이전한 사업의 경우 구분이 어려워, 이번 분석에서는 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126,866백만 원을 광역자치단체에 포함하여 분석함

그림 3-29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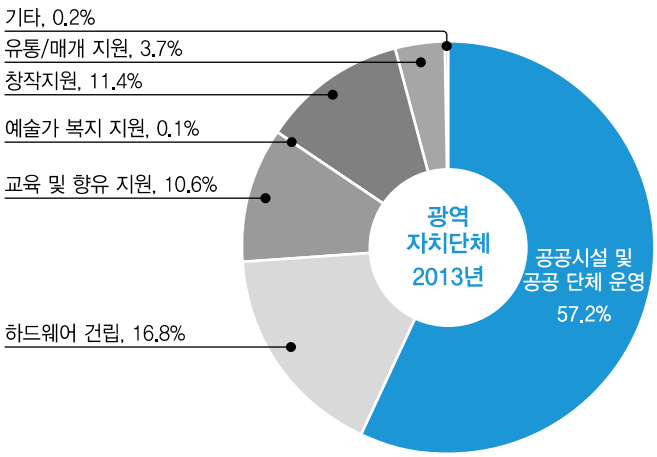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공연장운영(34.5%)이 가장 많고, 공연장건립(11%), 미술관운영(8.7%), 작품지원(7.4%) 순

그림 3-30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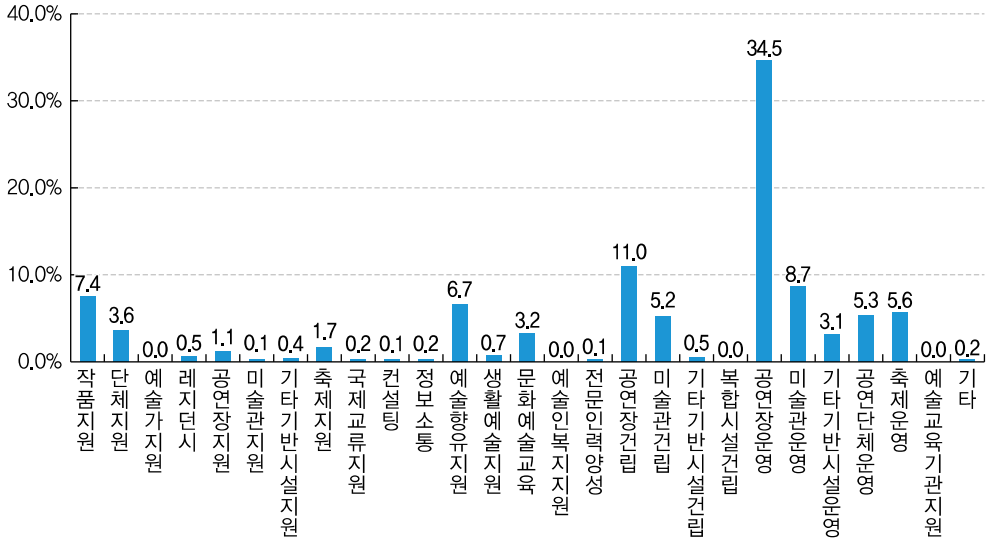

표 3-8 | 광역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58,791	11.4%	작품지원	37,830	7.4%
			단체지원	18,347	3.6%
			예술가지원	214	0.0%
			레지던시	2,400	0.5%
유통/매개 지원	19,248	3.7%	공연장지원	5,758	1.1%
			미술관지원	636	0.1%
			기타기반시설지원	2,213	0.4%
			축제지원	8,626	1.7%
			국제교류지원	944	0.2%
			컨설팅	286	0.1%
			정보소통	785	0.2%
교육 및 향유 지원	54,427	10.6%	예술향유지원	34,257	6.7%
			생활예술지원	3,804	0.7%
			문화예술교육	16,366	3.2%
예술가 복지 지원	412	0.1%	예술인복지지원	100	0.0%
			전문인력양성	312	0.1%
하드웨어 건립	86,422	16.8%	공연장건립	56,755	11.0%
			미술관건립	26,965	5.2%
			기타기반시설건립	2,702	0.5%
			복합시설건립	0	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293,955	57.2%	공연장운영	177,548	34.5%
			미술관운영	44,640	8.7%
			기타기반시설운영	15,693	3.1%
			공연단체운영	27,102	5.3%
			축제운영	28,972	5.6%
			예술교육기관지원	0	0.0%
기타	880	0.2%	기타	880	0.2%
총금액	514,135	100%	총금액	514,135	100%

5) 기초자치단체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 순

○ 기초자치단체 실행 774,695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3.7%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16.8%), 창작지원(6.6%), 유통/매개 지원(6.5%) 순

그림 3-31 | 기초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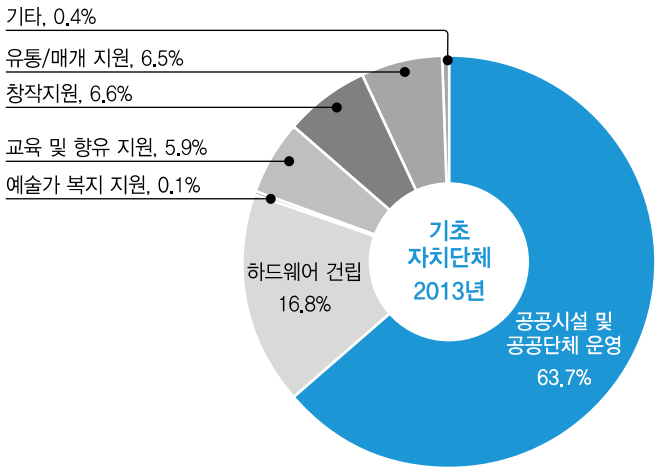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공연장운영(30.4%)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운영(17.7%), 기타기반시설운영(10.9%), 공연장건립(8.7%) 순

그림 3-32 | 기초자치단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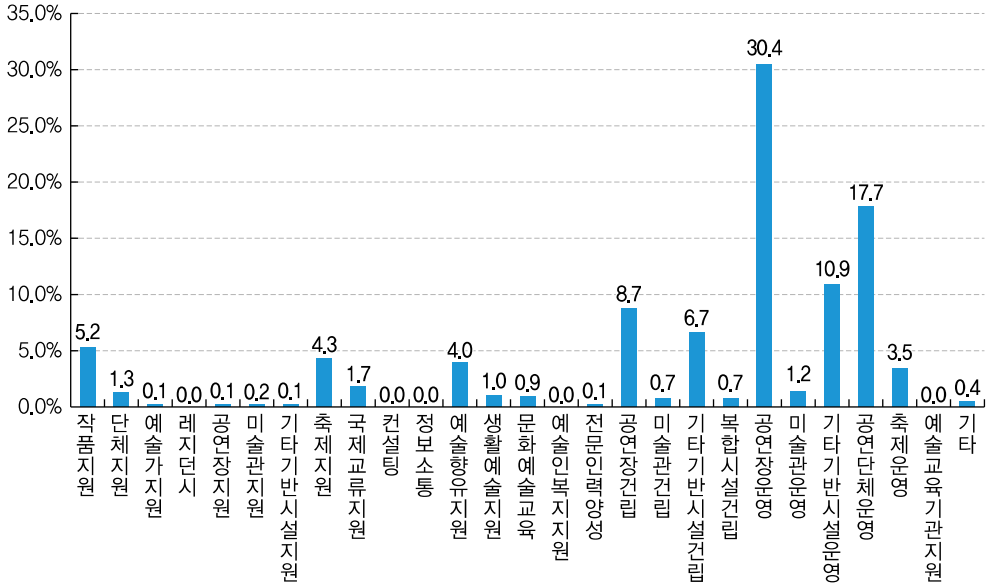

표 3-9 | 기초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51,139	6.6%	작품지원	40,570	5.2%
			단체지원	9,978	1.3%
			예술가지원	524	0.1%
			레지던시	67	0.0%
유통/매개 지원	50,069	6.5%	공연장지원	1,052	0.1%
			미술관지원	1,231	0.2%
			기타기반시설지원	712	0.1%
			축제지원	33,196	4.3%
			국제교류지원	13,224	1.7%
			컨설팅	298	0.0%
			정보소통	356	0.0%
교육 및 향유 지원	46,011	5.9%	예술향유지원	31,062	4.0%
			생활예술지원	8,108	1.0%
			문화예술교육	6,841	0.9%
예술가 복지 지원	570	0.1%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570	0.1%
하드웨어 건립	130,089	16.8%	공연장건립	67,598	8.7%
			미술관건립	5,451	0.7%
			기타기반시설건립	51,893	6.7%
			복합시설건립	5,147	0.7%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493,587	63.7%	공연장운영	235,359	30.4%
			미술관운영	9,516	1.2%
			기타기반시설운영	84,644	10.9%
			공연단체운영	137,211	17.7%
			축제운영	26,857	3.5%
			예술교육기관지원	0	0.0%
기타	3,230	0.4%	기타	3,230	0.4%
총금액	774,695	100%	총금액	774,695	100%

6) 시·도문화재단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통/매개 지원 순

○ 시·도문화재단 자체사업 32,126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29.3%), 유통/매개 지원(25.7%), 창작지원(24%), 교육 및 향유 지원(20.6%)로 4등분 구조가 됨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문화재단에 위탁/이전한 사업의 경우 구분이 어려워, 이번 분석에서는 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126,866백만 원을 광역자치단체에 포함시키고 시·도문화재단은 자체사업만 분석함

그림 3-33 | 시·도문화재단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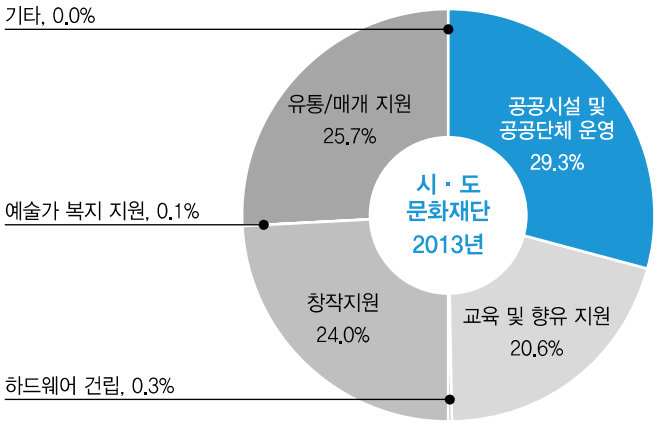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기타기반시설운영(27.3%)이 가장 많고, 작품지원(22.7%), 문화예술교육(10%), 미술관지원(9.7%) 순

그림 3-34 | 시·도문화재단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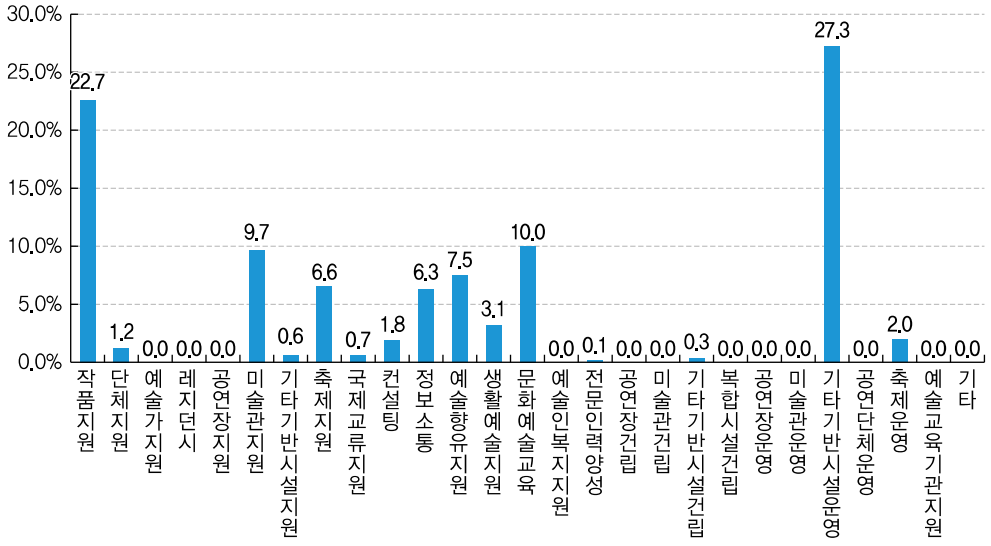

표 3-10 | 시·도문화재단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7,708	24.0%	작품지원	7,308	22.7%
			단체지원	400	1.2%
			예술가지원	0	0.0%
			레지던시	0	0.0%
유통/매개 지원	8,243	25.7%	공연장지원	0	0.0%
			미술관지원	3,115	9.7%
			기타기반시설지원	200	0.6%
			축제지원	2,114	6.6%
			국제교류지원	220	0.7%
			컨설팅	577	1.8%
			정보소통	2,018	6.3%
교육 및 향유 지원	6,628	20.6%	예술향유지원	2,410	7.5%
			생활예술지원	1,003	3.1%
			문화예술교육	3,215	10.0%
예술가 복지 지원	28	0.1%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28	0.1%
하드웨어 건립	100	0.3%	공연장건립	0	0.0%
			미술관건립	0	0.0%
			기타기반시설건립	100	0.3%
			복합시설건립	0	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9,418	29.3%	공연장운영	0	0.0%
			미술관운영	0	0.0%
			기타기반시설운영	8,778	27.3%
			공연단체운영	0	0.0%
			축제운영	640	2.0%
			예술교육기관지원	0	0.0%
기타	0	0.0%	기타	0	0.0%
총금액	32,126	100%	총금액	32,126	100%

라. 사업유형별 실행주체

1) 창작지원

□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창작지원 148,375백만 원 중 광역자치단체가 39.6%로 가장 많이 하고, 기초자치단체(34.5%),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14.2%), 문화체육관광부(6.5%) 시·도문화재단(5.2%) 순

그림 3-35 |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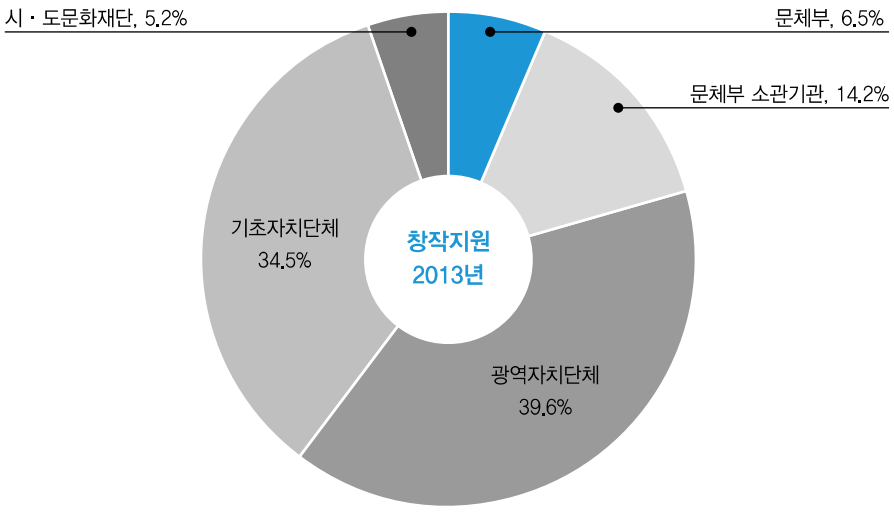

표 3-11 |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창작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9,648	6.5%
문체부 소관기관	21,089	14.2%
광역자치단체	58,791	39.6%
기초자치단체	51,139	34.5%
시·도문화재단	7,708	5.2%
합계	148,375	100%

2) 유통/매개 지원

□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유통/매개 지원 99,903백만 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50.1%로 가장 많이 하고, 광역자치단체(19.3%),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15.1%), 시·도문화재단(8.3%), 문화체육관광부(7.2%) 순

그림 3-36 |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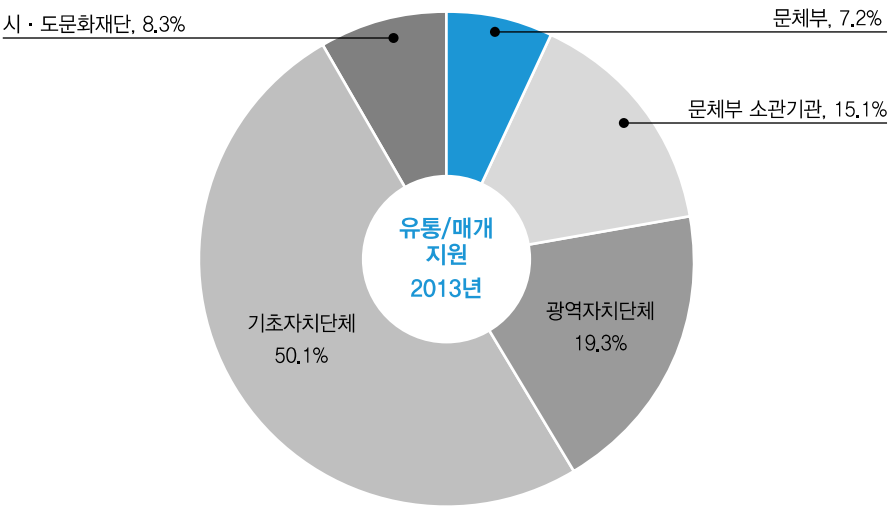

표 3-12 |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유통/매개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7,235	7.2%
문체부 소관기관	15,108	15.1%
광역자치단체	19,248	19.3%
기초자치단체	50,069	50.1%
시·도문화재단	8,243	8.3%
합계	99,903	100%

3) 교육 및 향유 지원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 241,542백만 원 중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54.4%로 가장 많이 하고, 광역자치단체(22.5%), 기초자치단체(19%), 시·도문화재단(2.7%), 문화체육관광부(1.3%) 순

그림 3-37 |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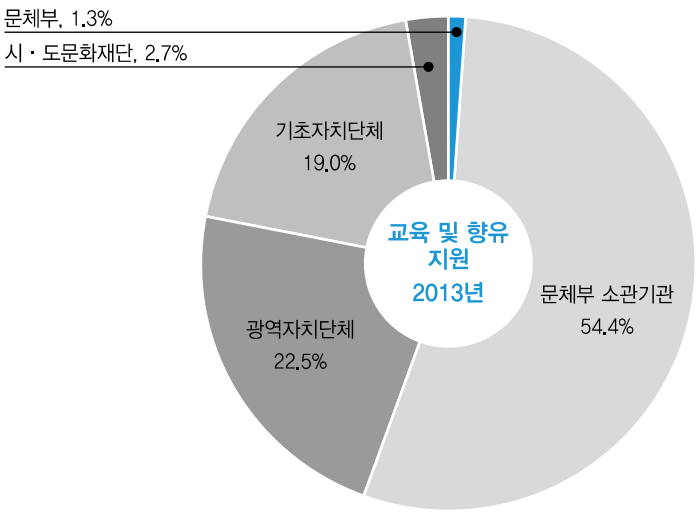

표 3-13 |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교육 및 향유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3,103	1.3%
문체부 소관기관	131,372	54.4%
광역자치단체	54,427	22.5%
기초자치단체	46,011	19.0%
시·도문화재단	6,628	2.7%
합계	241,542	100%

4) 예술가 복지 지원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예술가 복지 지원 24,448백만 원 중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75.5%로 가장 많이 하고, 문화체육관광부(20.3%), 기초자치단체(2.3%), 광역자치단체(1.7%), 시·도문화재단(0.1%) 순

그림 3-38 |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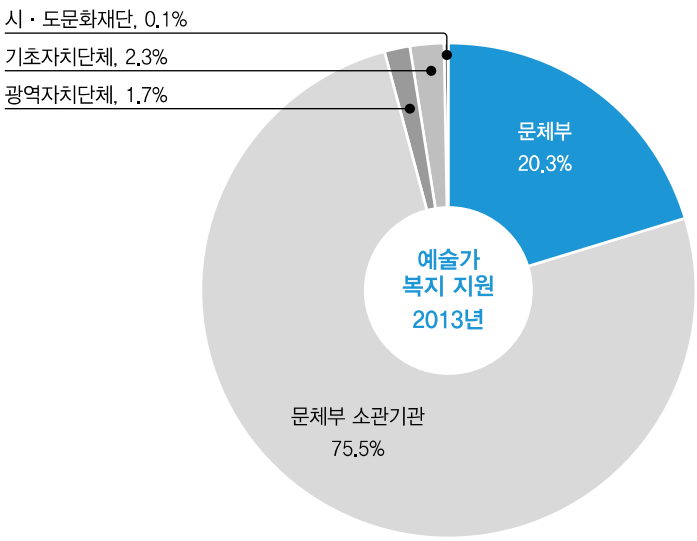

표 3-14 |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예술가 복지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4,968	20.3%
문체부 소관기관	18,470	75.5%
광역자치단체	412	1.7%
기초자치단체	570	2.3%
시·도문화재단	28	0.1%
합계	24,448	100%

5) 하드웨어 건립

□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레벨1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건립 421,425백만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48.6%로 가장 많이 하고, 기초자치단체(30.9%), 광역자치단체(20.5%) 순

그림 3-39 |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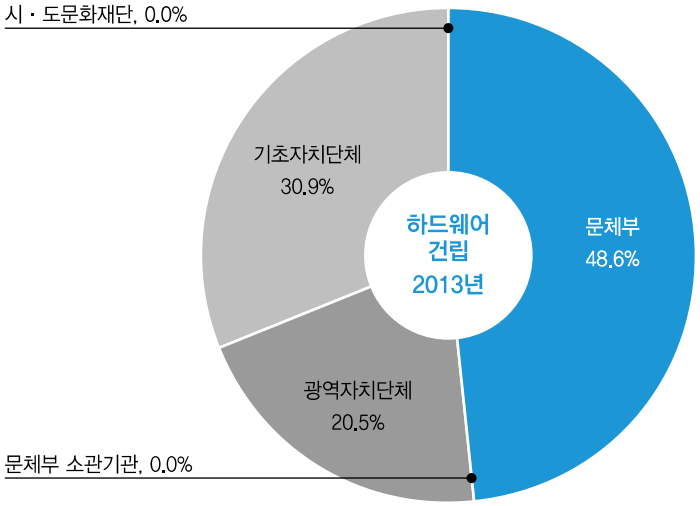

표 3-15 |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하드웨어 건립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204,814	48.6%
문체부 소관기관	0	0.0%
광역자치단체	86,422	20.5%
기초자치단체	130,089	30.9%
시·도문화재단	100	0.0%
합계	421,425	100%

6)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레벨1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094,809백만 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45.1%로 가장 많이 하고, 광역자치단체(26.8%), 문화체육관광부(26.6%), 시·도문화재단(0.9%),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0.6%) 순

그림 3-40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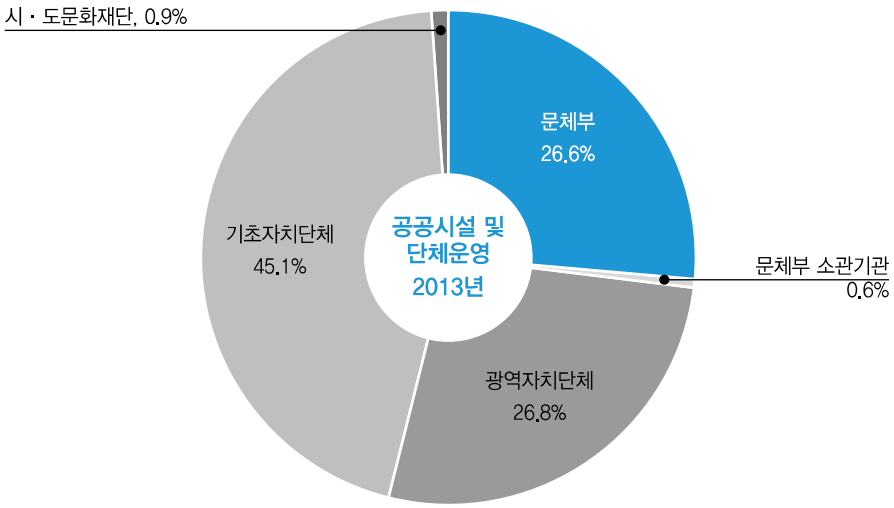

표 3-16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291,126	26.6%
문체부 소관기관	6,723	0.6%
광역자치단체	293,955	26.8%
기초자치단체	493,587	45.1%
시·도문화재단	9,418	0.9%
합계	1,094,809	100%

마. 지역별 규모

□ 지역별 분석 결과 경기도(20.5%), 서울시(13.2%) 비중이 가장 높음

○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지역별 지원규모(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는 경기도가 20.5%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13.2%), 경상북도(7.2%), 경상남도(7.2%), 대구광역시(7.1%), 전라북도(6.1%), 전라남도(6.1%) 순을 보임

그림 3-41 | 지역별 규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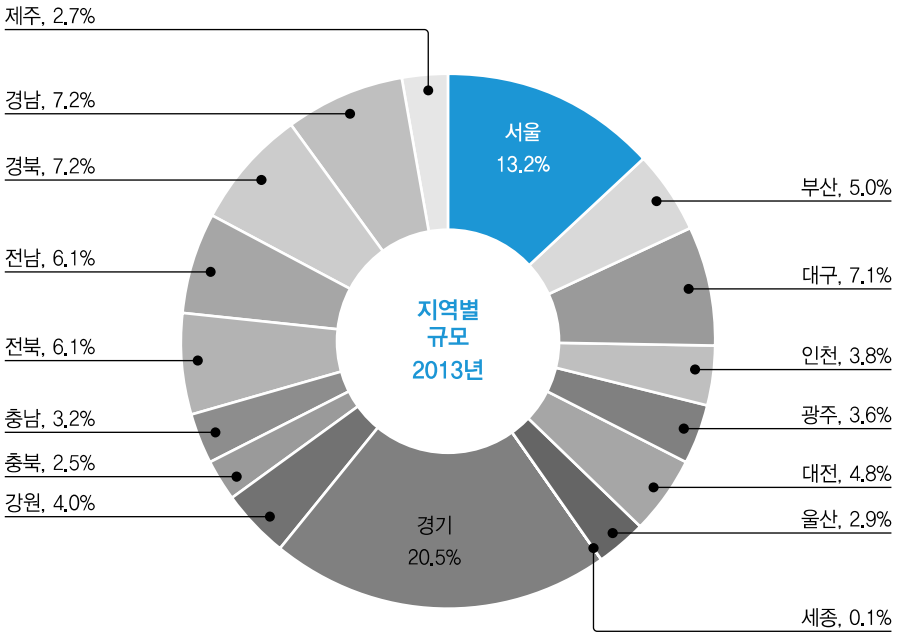

○ 세출예산서 상으로 지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주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으로서 이들 간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면, 지역별로 구분이 가능한 총규모는 1,321,377백만 원임

- 광역자치단체(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포함) 514,135백만 원
- 기초자치단체 774,695백만 원
- 시·도문화재단 자체사업 32,126백만 원
- 문예기금에서 시·도문화재단으로 이전한 421백만 원

▢ 각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합계) 규모를 분석하면 광역시의 경우 광역이 기초 보다 규모가 큰 반면 광역도의 경우 기초가 광역 보다 규모가 큼

그림 3-42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합계) 규모 분석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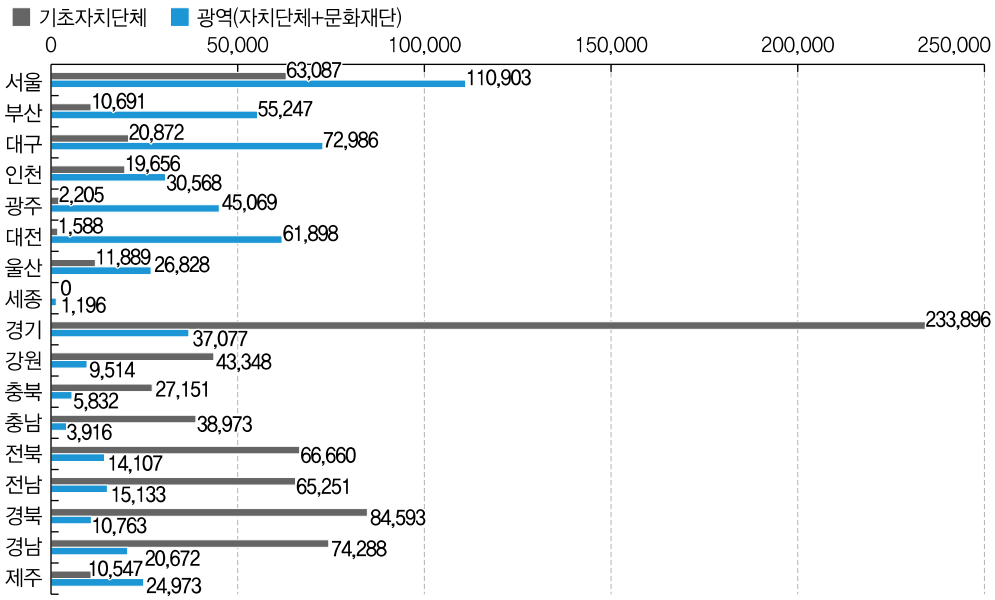

○ 광역시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 광역 규모가 기초 규모 보다 큼

○ 광역도에 해당하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기초 규모가 광역 규모 보다 큼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광역 규모가 기초 규모 보다 큼

▢ 2013년 광역(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합)에 해당하는 546,682백만 원만 분석해 보면 서울특별시가 20.3%로 가장 많고, 대구광역시(13.4%), 대전광역시(11.3%), 부산광역시(10.1%), 광주광역시(8.2%), 경기도(6.8%) 순

*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은 제외

그림 3-43 | 광역(광역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 규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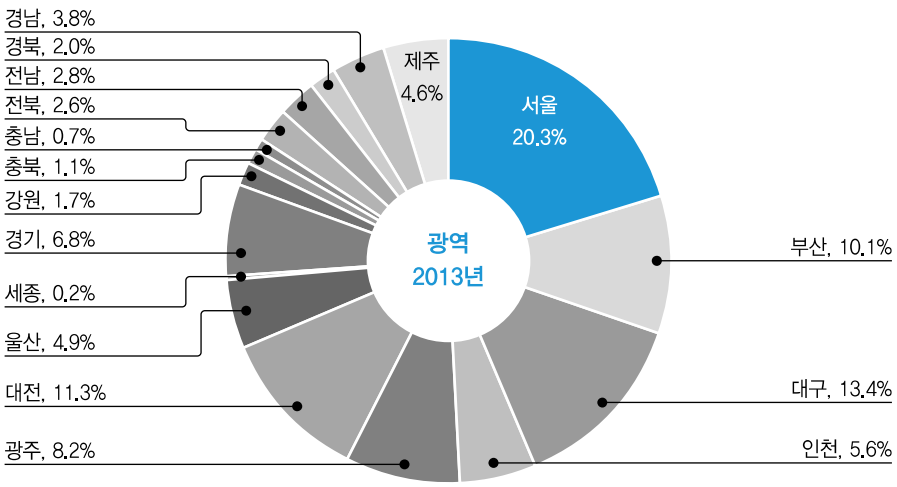

▢ 2013년 기초자치단체 774,695백만 원만 분석해 보면 경기도가 30.2%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10.9%), 경상남도(9.6%), 전라북도(8.6%), 전라남도(8.4%) 순

그림 3-44 | 기초자치단체 규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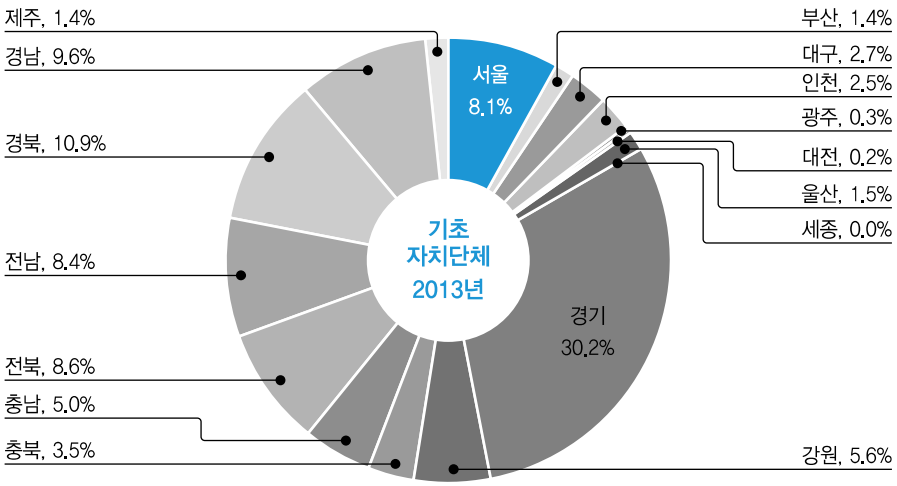

바. 창작 유형 장르 분석

▢ 창작지원을 장르별로 분석해보면, 연극/뮤지컬이 가장 많고, 미술, 국악/전통, 음악. 무용 순

그림 3-45 | 창작지원 장르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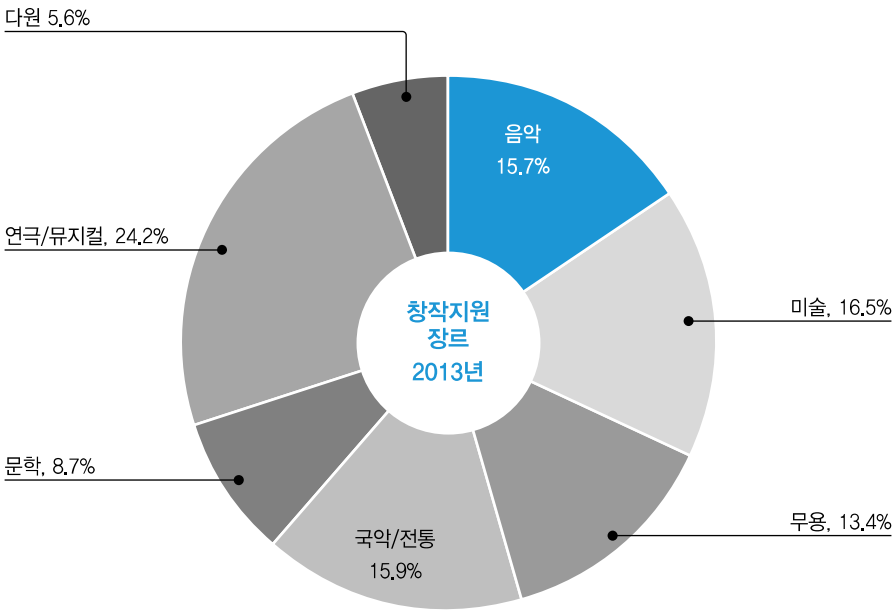

○ 창작지원(문체부 일반회계 지원사업, 문예기금 중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과 예술창작지원사업)을 장르별로 분석해보면, 연극/뮤지컬이 24.2%로 가장 많고, 미술(16.5%), 국악/전통(15.9%), 음악(15.7%), 무용(13.4%) 순

○ 중분류 중 창작지원에 해당하는 사업 148,375백만 원 중에서 장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업은 문체부 일반회계 지원사업, 문예기금 중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과 예술창작지원사업의 89.4%에 해당하는 51,350백만 원임

○ 그러므로 위 그래프는 51,350백만 원을 장르별로 분석한 결과로서, 2013년 창작지원 금액 148,375백만 원의 34.6% 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임

7. 2012년 공공부문 예술지원규모

가. 총규모

□ 2012년 공공지원 총규모는 1조 8,355억 원

그림 3-46 | 2012 총 지원규모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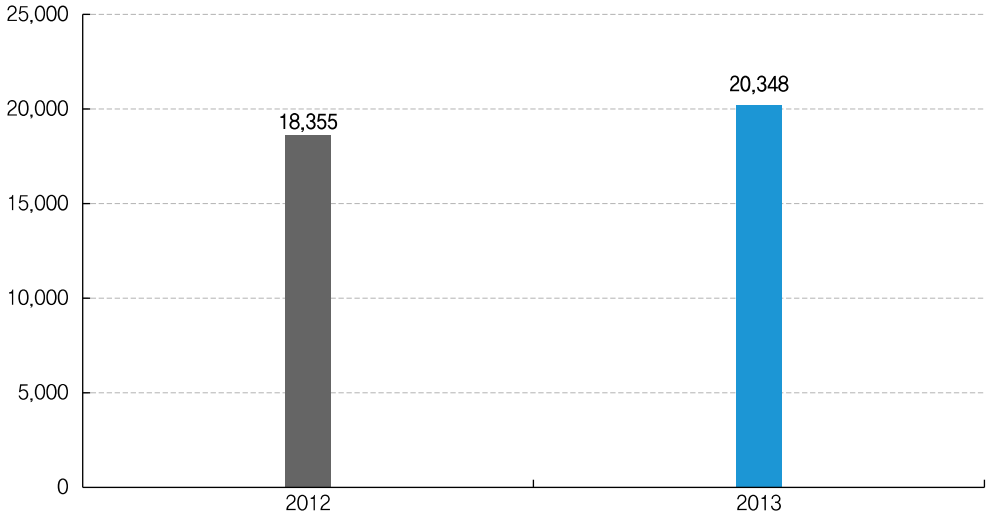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보면 문체부가 454,288백만 원(25.6%), 문체부 소관기관이 143,965백만 원(9.5%), 광역자치단체가 401,305백만 원(19%), 기초자치단체가 693,790백만 원(38.1%), 시·도문화재단이 142,126백만 원(7.8%)임

나. 사업유형별 규모

1) 전체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중분류로 유형화하면, 총규모 1조 8,355억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6.6%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20.9%, 교육 및 향유 지원 11%, 창작지원 6.7% 순

그림 3-47 | 전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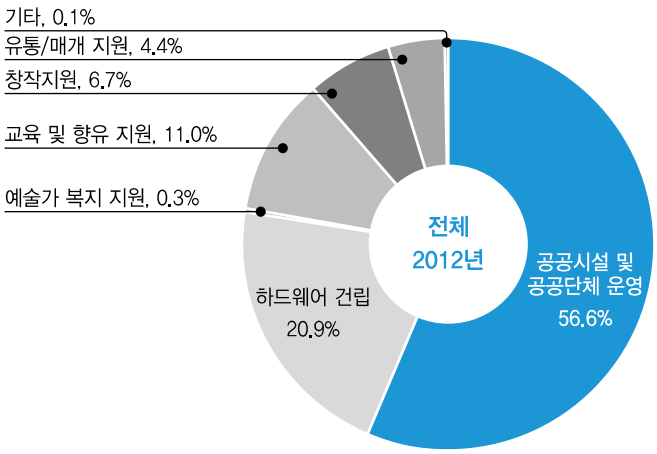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공연장운영(25.7%)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운영(10.3%), 공연장건립(9.6%) 순 (공연장운영에는 공연장 경상운영비 뿐만 아니라 공연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그림 3-48 | 전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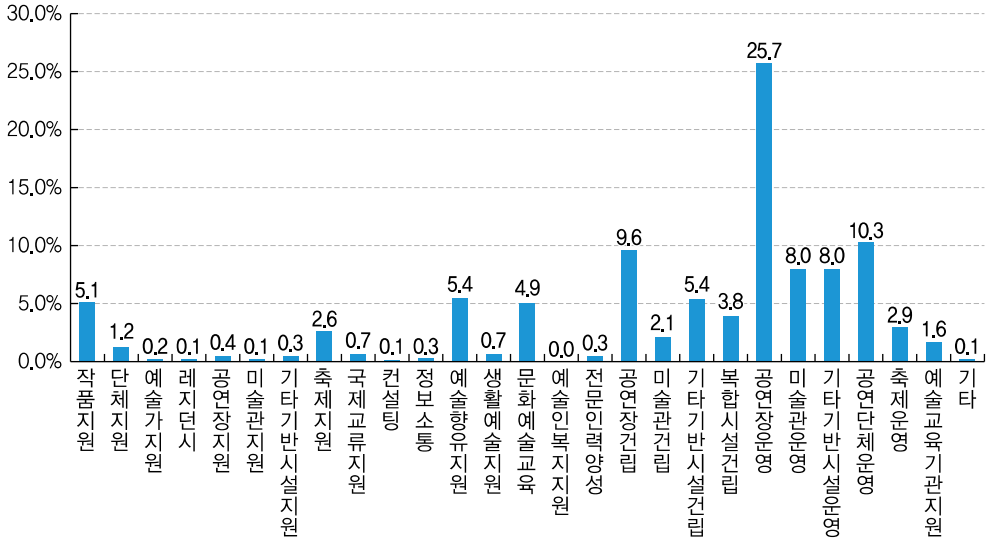

표 3-17 | 전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122,708	6.7%	작품지원	94,248	5.1%
			단체지원	22,893	1.2%
			예술가지원	3,475	0.2%
			레지던시	2,093	0.1%
유통/매개 지원	81,294	4.4%	공연장지원	6,498	0.4%
			미술관지원	2,268	0.1%
			기타기반시설지원	6,009	0.3%
			축제지원	47,244	2.6%
			국제교류지원	12,039	0.7%
			컨설팅	1,872	0.1%
			정보소통	5,364	0.3%
교육 및 향유 지원	201,850	11.0%	예술향유지원	99,052	5.4%
			생활예술지원	12,505	0.7%
			문화예술교육	90,293	4.9%
예술가 복지 지원	6,375	0.3%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6,375	0.3%
하드웨어 건립	383,408	20.9%	공연장건립	176,353	9.6%
			미술관건립	38,250	2.1%
			기타기반시설건립	98,505	5.4%
			복합시설건립	70,300	3.8%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037,984	56.6%	공연장운영	472,229	25.7%
			미술관운영	146,956	8.0%
			기타기반시설운영	146,242	8.0%
			공연단체운영	189,533	10.3%
			축제운영	53,569	2.9%
			예술교육기관지원	29,455	1.6%
기타	1,854	0.1%	기타	1,854	0.1%
총금액	1,835,474	100%	총금액	1,835,474	100%

2)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하고 하드웨어 건립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서상 금액(문예기금 포함) 657,136백만 원을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43.2%)하거나 하드웨어를 건립(23.5%)하거나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30.9%)함

그림 3-49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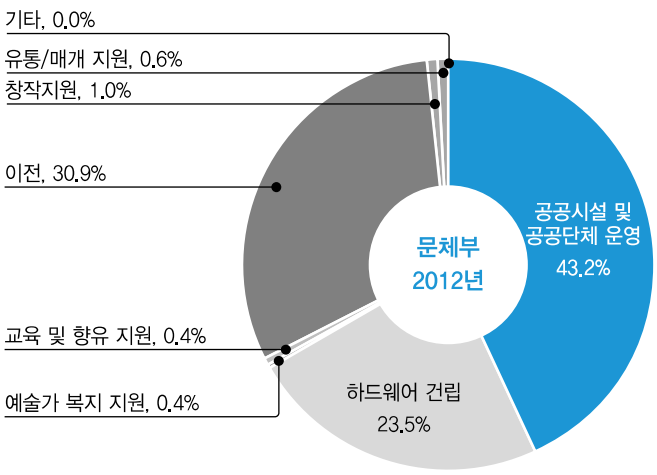

○ 문체부가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44.3%)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23.7%), 교육 및 향유 지원(20.6%), 창작지원(7.6%) 순

그림 3-50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분류 유형화(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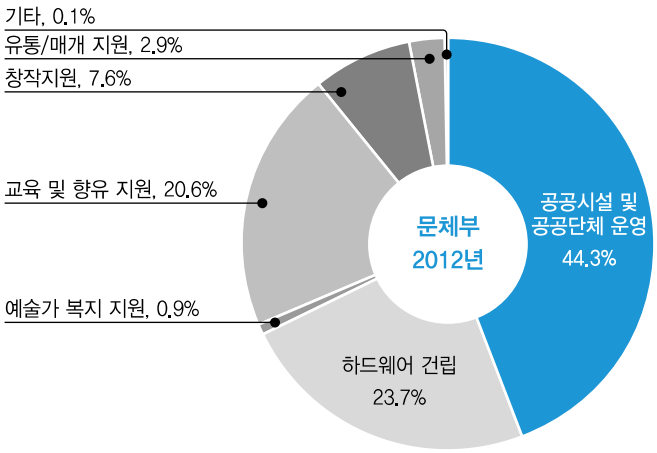

○ 문체부가 타기관으로 이전한 202,848백만 원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이 65.4%로 가장 많고, 창작지원(21.2%), 유통/매개 지원(7.4%) 순

그림 3-51 |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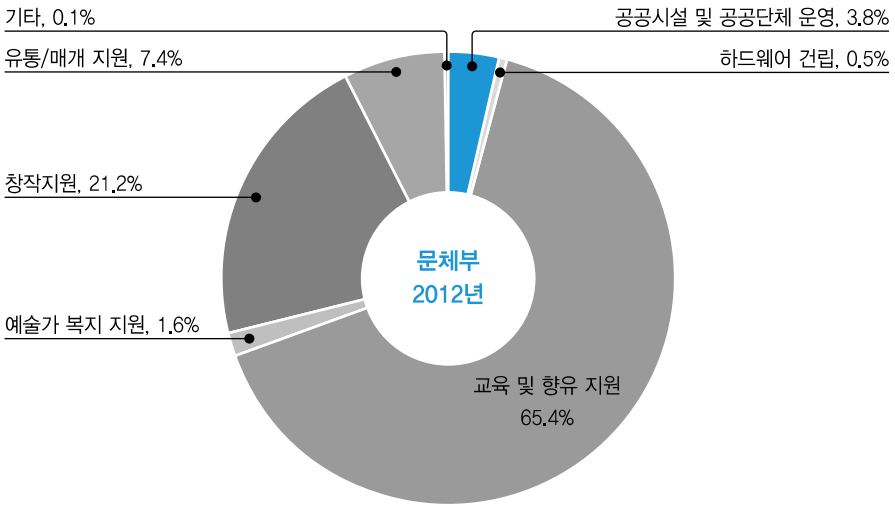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을 소분류로 유형화해보면, 예술향유지원(33.8%)이 가장 많고, 문화예술교육(29.6%), 작품지원(17.1%), 단체지원(4.1%) 순

그림 3-52 | 문화체육관광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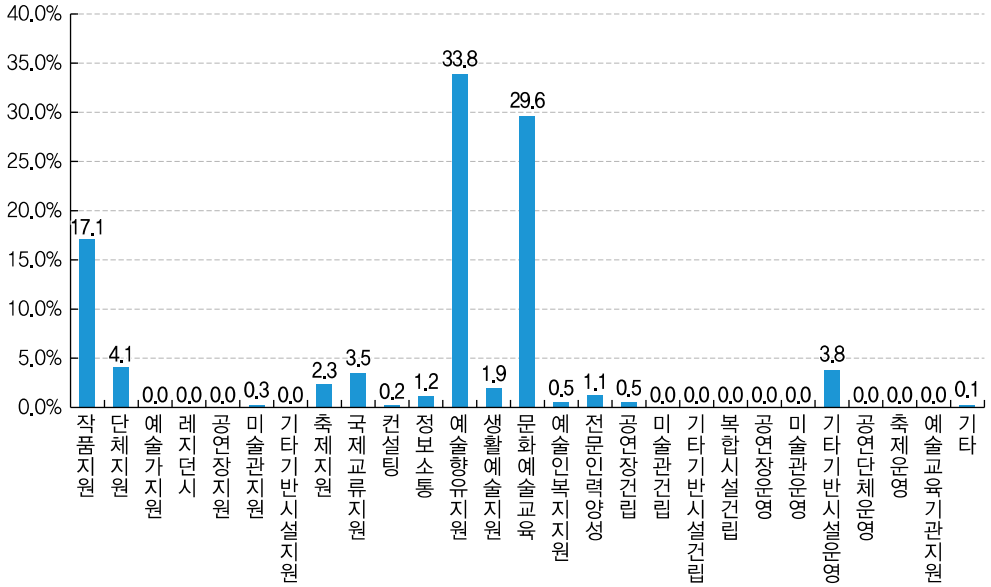

□ 직접 실행한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과 하드웨어 건립이 대부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문체부가 직접 실행한 454,288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2.5%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34% 순

그림 3-53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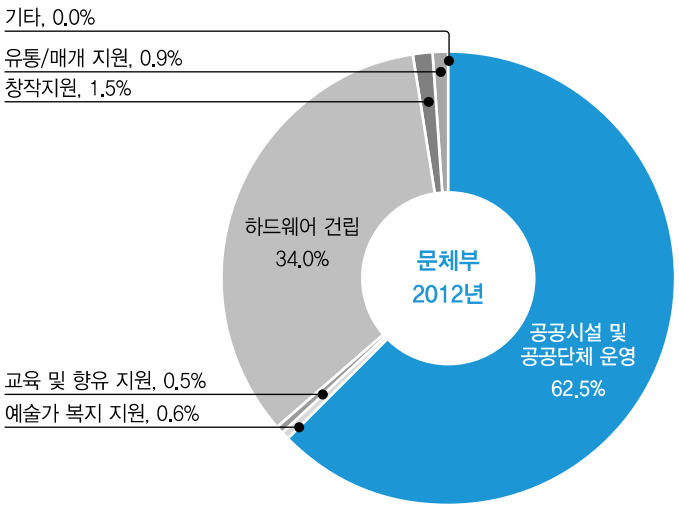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미술관운영(21.4%)이 가장 많고, 공연장운영(19.2%), 복합시설건립(14.9%), 기타 기반시설건립(8.5%) 순

그림 3-54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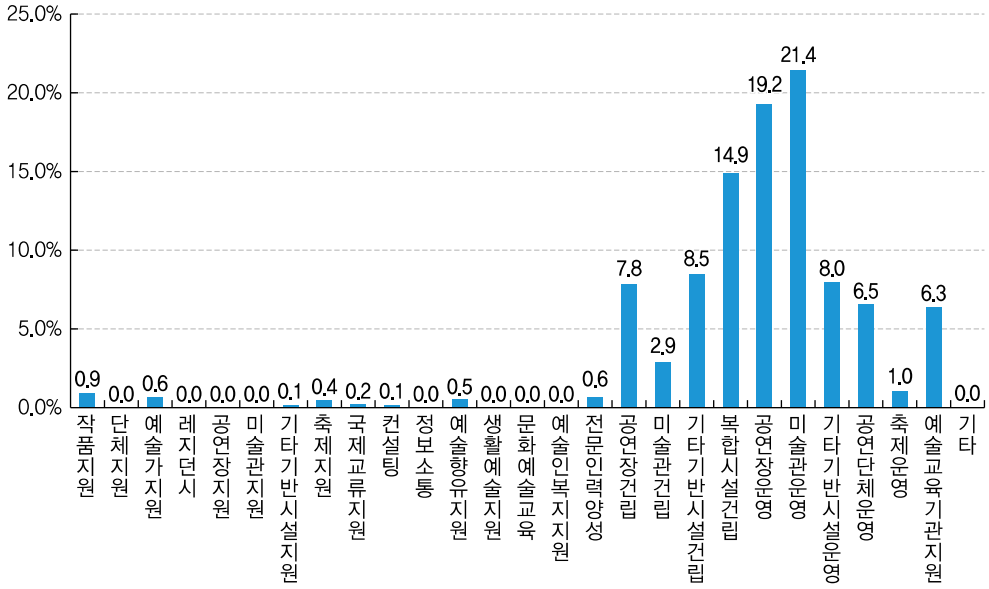

표 3-18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6,648	1.5%	작품지원	4,000	0.9%
			단체지원	-	0.0%
			예술가지원	2,648	0.6%
			레지던시	-	0.0%
유통/매개 지원	3,974	0.9%	공연장지원	-	0.0%
			미술관지원	-	0.0%
			기타기반시설지원	500	0.1%
			축제지원	1,945	0.4%
			국제교류지원	1,100	0.2%
			컨설팅	429	0.1%
			정보소통	-	0.0%
교육 및 향유 지원	2,455	0.5%	예술향유지원	2,455	0.5%
			생활예술지원	-	0.0%
			문화예술교육	-	0.0%
예술가 복지 지원	2,768	0.6%	예술인복지지원	-	0.0%
			전문인력양성	2,768	0.6%
하드웨어 건립	154,499	34.0%	공연장건립	35,227	7.8%
			미술관건립	13,044	2.9%
			기타기반시설건립	38,628	8.5%
			복합시설건립	67,600	14.9%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283,744	62.5%	공연장운영	87,230	19.2%
			미술관운영	97,355	21.4%
			기타기반시설운영	36,153	8.0%
			공연단체운영	29,729	6.5%
			축제운영	4,520	1.0%
			예술교육기관지원	28,757	6.3%
기타	200	0.0%	기타	200	0.0%
총금액	454,288	100%	총금액	454,288	100%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

□ 교육 및 향유, 창작, 예술가 복지를 지원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함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예산서상 금액 230,179백만 원을 교육 및 향유를 지원(42.2%)하거나 창작을 지원(8.7%)하거나 타기관에 이전(37.5%)함

그림 3-55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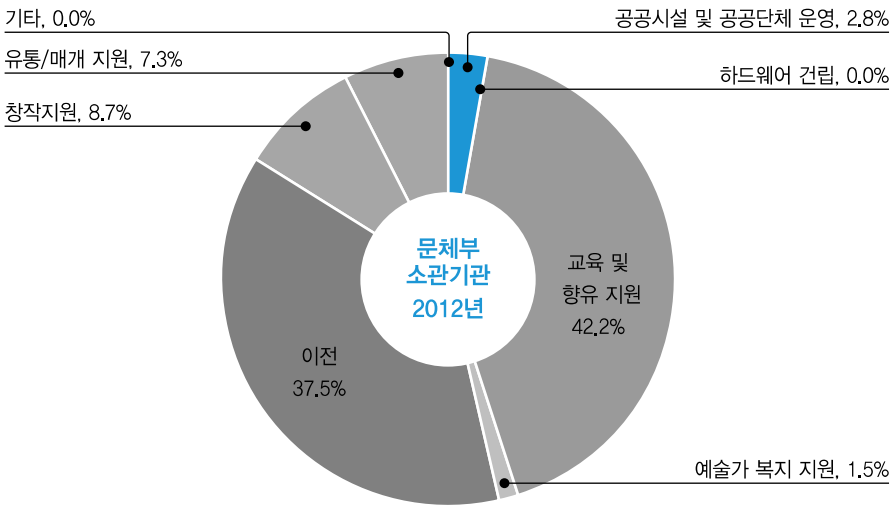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70.8%)이 가장 많고, 창작 지원(17.4%), 유통/매개 지원(7.3%) 순

그림 3-56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 중분류 유형화(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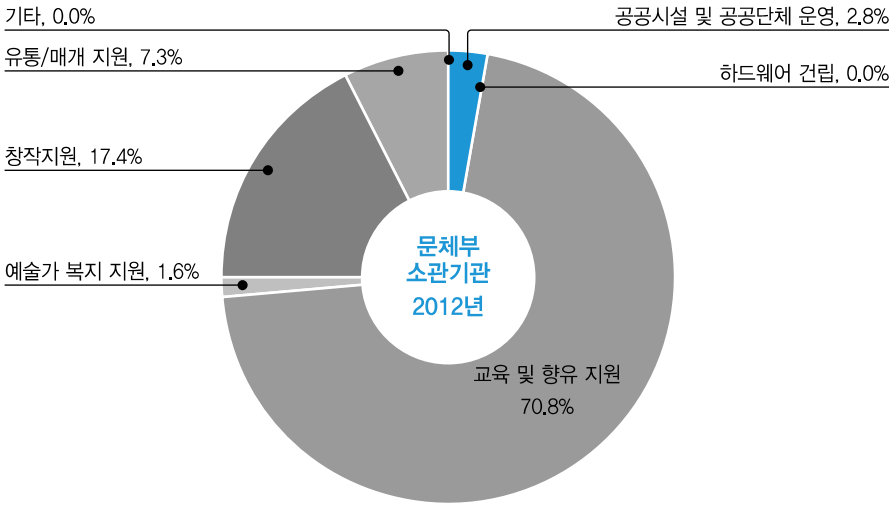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86,214백만 원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이 76.3%로 가장 많고, 창작지원(23.1%) 순

그림 3-57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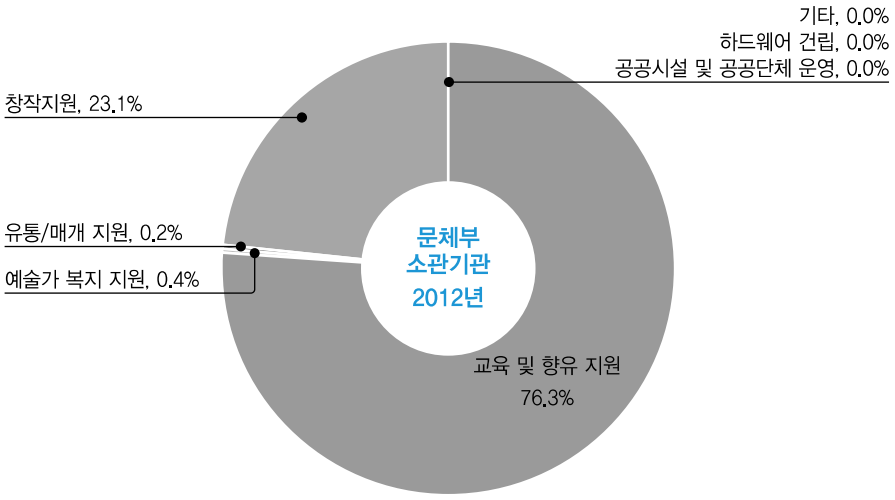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을 소분류로 유형화해보면, 예술향유지원(61.1%)이 가장 많고, 문화예술교육(15.1%), 작품지원(13.8%), 단체지원(9.3%) 순

그림 3-58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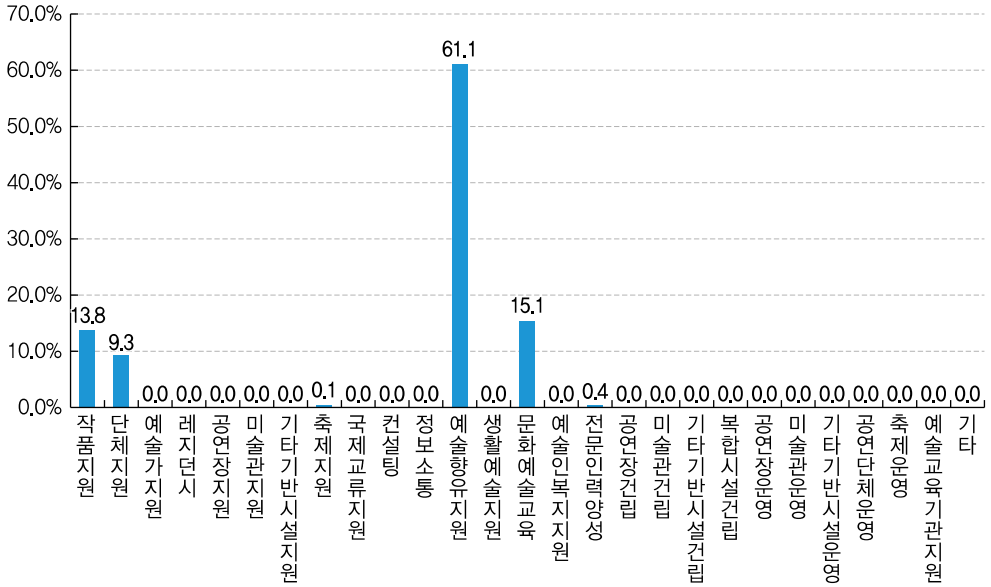

□ 직접 실행한 사업은 교육 및 향유, 창작, 유통/매개 지원이 대부분임

○ 타기관에 이전한 금액을 제외하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직접 실행한 143,965백만 원 중 교육 및 향유 지원이 67.5%로 가장 많고, 창작지원(14%), 유통/매개 지원(11.6%) 순

그림 3-59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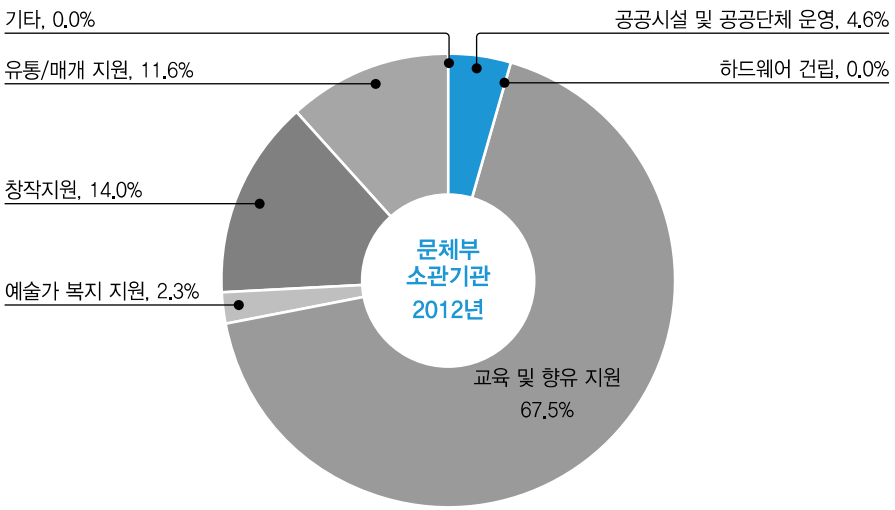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문화예술교육(44.8%)이 가장 많고, 예술향유지원(21.9%), 작품지원(13.6%), 국제교류지원(6.5%) 순

그림 3-60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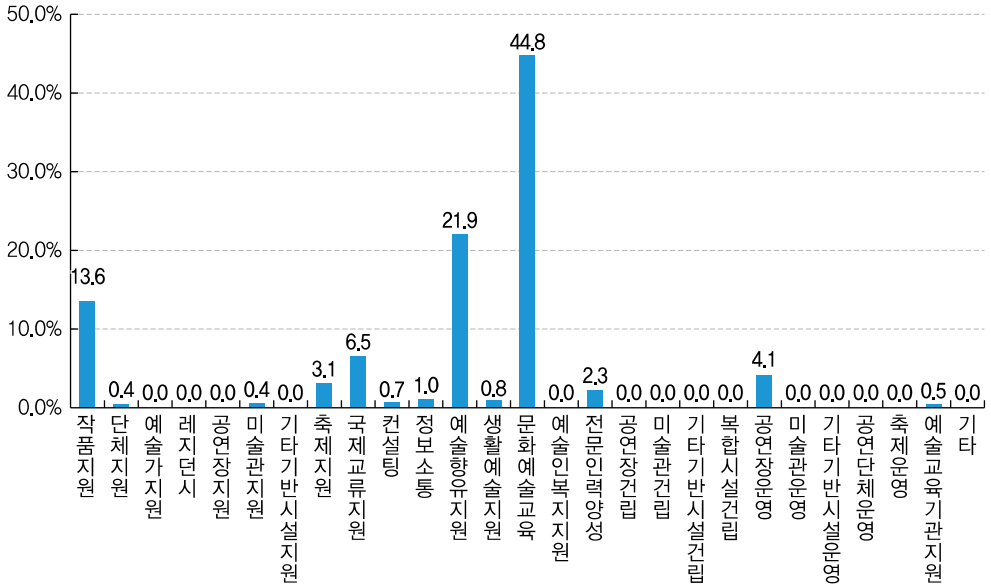

표 3-19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20,135	14.0%	작품지원	19,516	13.6%
			단체지원	620	0.4%
			예술가지원	0	0.0%
			레지던시	0	0.0%
유통/매개 지원	16,707	11.6%	공연장지원	0	0.0%
			미술관지원	510	0.4%
			기타기반시설지원	0	0.0%
			축제지원	4,430	3.1%
			국제교류지원	9,351	6.5%
			컨설팅	985	0.7%
			정보소통	1,431	1.0%
교육 및 향유 지원	97,192	67.5%	예술향유지원	31,585	21.9%
			생활예술지원	1,140	0.8%
			문화예술교육	64,467	44.8%
예술가 복지 지원	3,375	2.3%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3,375	2.3%
하드웨어 건립	0	0.0%	공연장건립	0	0.0%
			미술관건립	0	0.0%
			기타기반시설건립	0	0.0%
			복합시설건립	0	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6,555	4.6%	공연장운영	5,857	4.1%
			미술관운영	0	0.0%
			기타기반시설운영	0	0.0%
			공연단체운영	0	0.0%
			축제운영	0	0.0%
			예술교육기관지원	698	0.5%
기타	0	0.0%	기타	0	0.0%
총금액	143,965	100%	총금액	143,965	100%

4) 광역자치단체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하거 하드웨어 건립하거나 타기관으로 이전함

○ 광역자치단체는 예산서상 금액 624,399백만 원을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를 운영(38%)하거나 하드웨어를 건립(11%)하거나 타기관에 이전(35.7%)함

그림 3-61 |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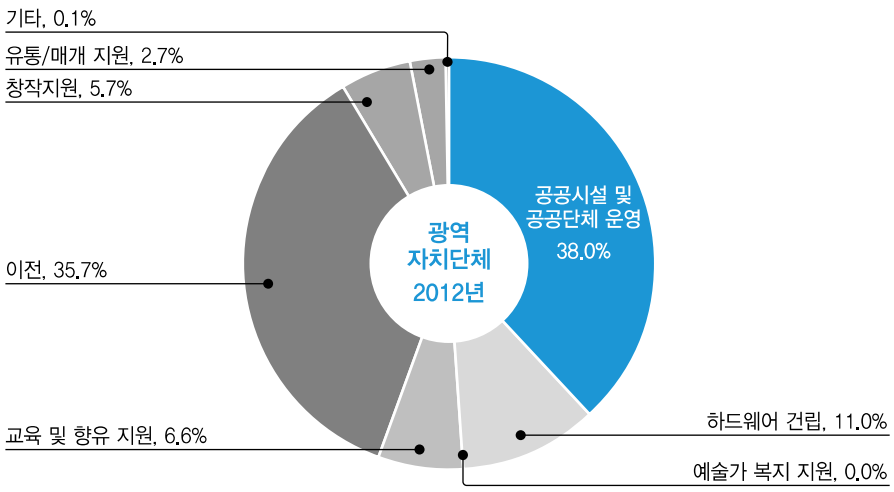

○ 타기관으로 이전한 금액까지 유형화하여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1.9%)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23%), 교육 및 향유 지원(11.6%), 창작지원(7.9%) 순

그림 3-62 | 광역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타기관 이전 금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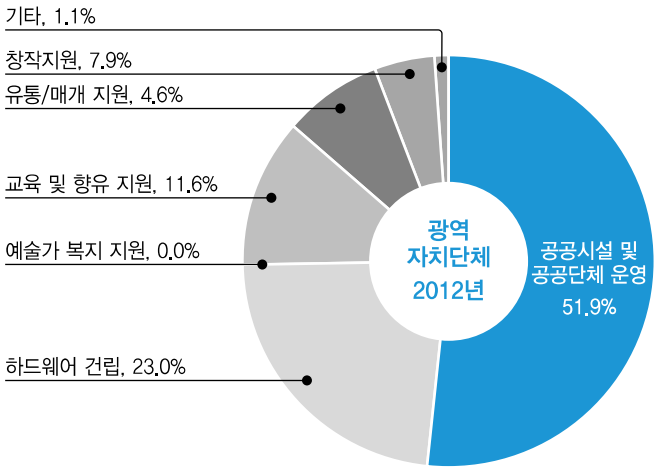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114,088백만 원(광역자치단체 예산의 18.3%)이 어떤 유형으로 실행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건립이 48.8%로 가장 많고,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19.2%), 교육 및 향유 지원(17.5%) 순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문화재단에 위탁/이전한 사업의 경우 유형 구분이 어려워, 이번 분석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전만 분석함

그림 3-63 |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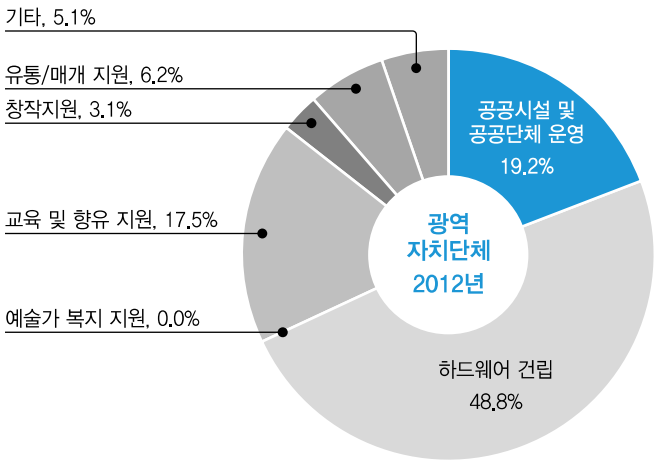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로 이전한 금액을 소분류로 유형화해보면, 공연장건립(21.5%)이 가장 많고, 예술향유지원(14.9%), 미술관건립(14.3%) 순

그림 3-64 | 광역자치단체 타기관 이전 금액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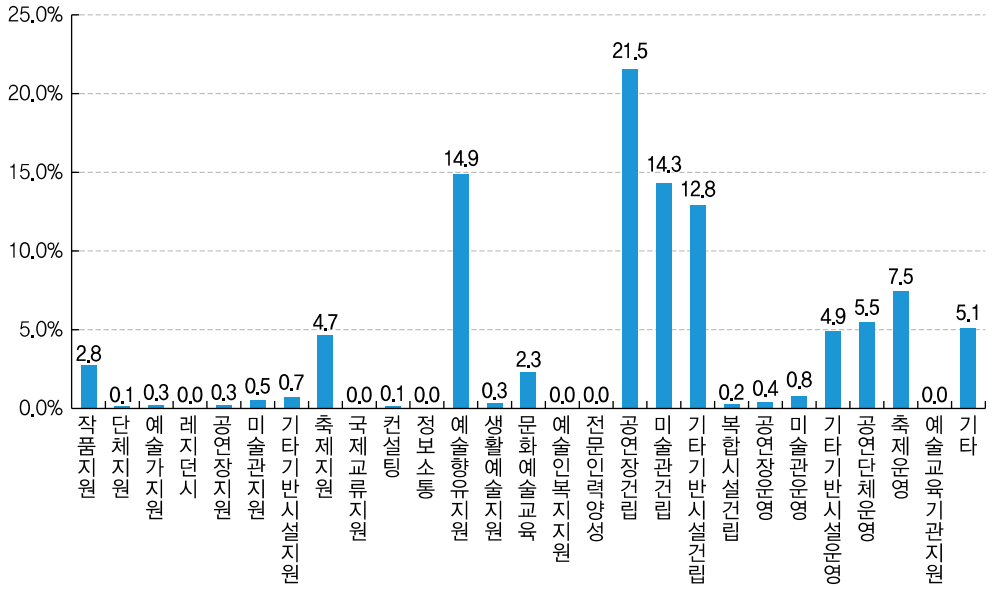

□ 직접 실행한 사업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 창작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중분류로 유형화하면, 광역자치단체 510,311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59.2%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17.2%), 교육 및 향유 지원(10.3%), 창작지원(8.9%) 순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문화재단에 위탁/이전한 사업의 경우 구분이 어려워, 이번 분석에서는 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을 광역자치단체에 포함하여 분석함

그림 3-65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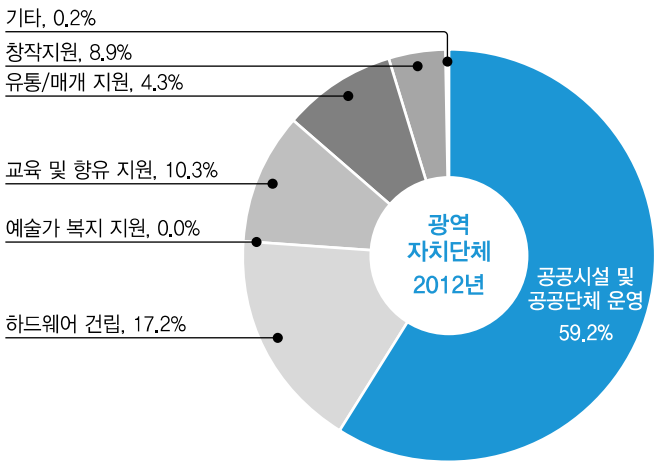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공연장운영(37.1%)이 가장 많고, 공연장건립(11.6%), 미술관운영(8.3%), 공연단체운영(6.9%) 순

그림 3-66 | 광역자치단체 사업(타기관 이전 제외)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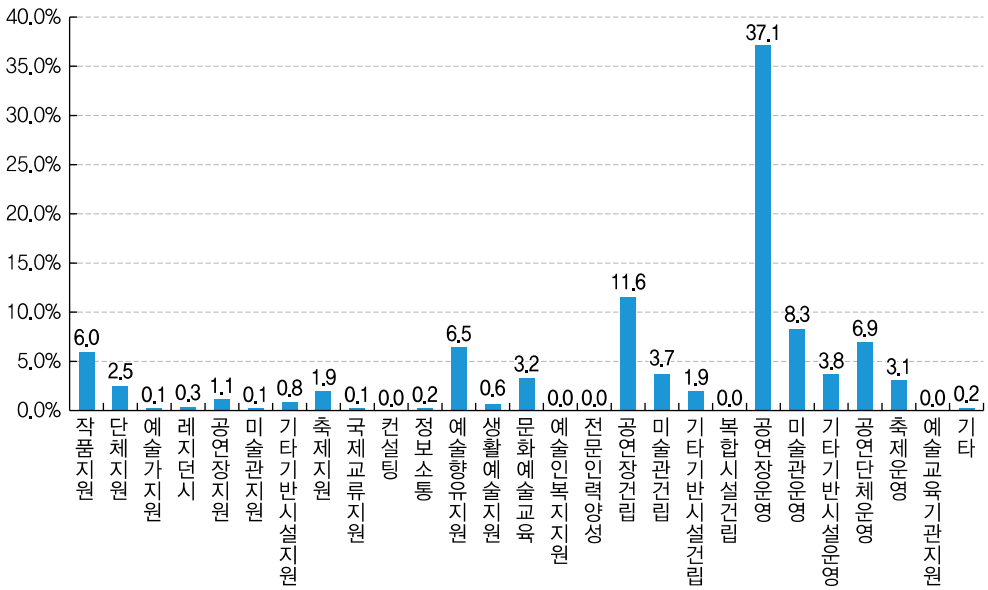

표 3-20 | 광역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45,532	8.9%	작품지원	30,800	6.0%
			단체지원	12,655	2.5%
			예술가지원	372	0.1%
			레지던시	1,705	0.3%
유통/매개 지원	21,778	4.3%	공연장지원	5,560	1.1%
			미술관지원	564	0.1%
			기타기반시설지원	4,178	0.8%
			축제지원	9,721	1.9%
			국제교류지원	582	0.1%
			컨설팅	0	0.0%
			정보소통	1,173	0.2%
교육 및 향유 지원	52,571	10.3%	예술향유지원	33,215	6.5%
			생활예술지원	3,038	0.6%
			문화예술교육	16,318	3.2%
예술가 복지 지원	5	0.0%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5	0.0%
하드웨어 건립	87,609	17.2%	공연장건립	59,000	11.6%
			미술관건립	18,755	3.7%
			기타기반시설건립	9,854	1.9%
			복합시설건립	0	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301,946	59.2%	공연장운영	189,366	37.1%
			미술관운영	42,295	8.3%
			기타기반시설운영	19,419	3.8%
			공연단체운영	35,229	6.9%
			축제운영	15,637	3.1%
			예술교육기관지원	0	0.0%
기타	870	0.2%	기타	870	0.2%
총금액	510,311	100%	총금액	510,311	100%

5) 기초자치단체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건립 순

○ 기초자치단체 실행 693,790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62.3%로 가장 많고, 하드웨어 건립(20.2%), 창작지원(6.4%), 교육 및 향유 지원(6.4%) 순

그림 3-67 | 기초자치단체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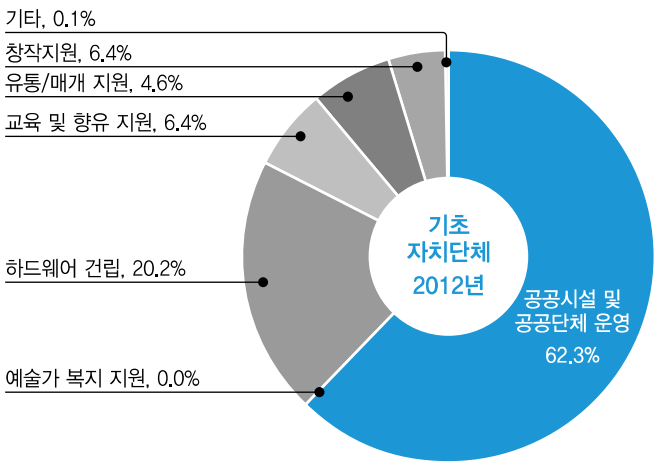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공연장운영(27.4%)이 가장 많고, 공연단체운영(18%), 공연장건립(11.8%), 기타 기반시설운영(11.6%) 순

그림 3-68 | 기초자치단체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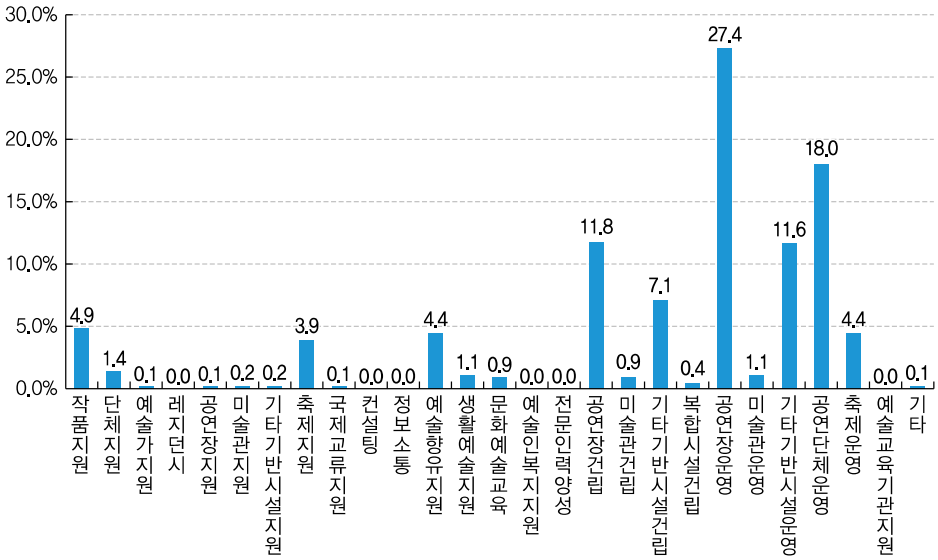

표 3-21 | 기초자치단체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44,081	6.4%	작품지원	34,140	4.9%
			단체지원	9,398	1.4%
			예술가지원	455	0.1%
			레지던시	88	0.0%
유통/매개 지원	31,674	4.6%	공연장지원	938	0.1%
			미술관지원	1,194	0.2%
			기타기반시설지원	1,331	0.2%
			축제지원	27,002	3.9%
			국제교류지원	846	0.1%
			컨설팅	158	0.0%
			정보소통	205	0.0%
교육 및 향유 지원	44,245	6.4%	예술향유지원	30,492	4.4%
			생활예술지원	7,388	1.1%
			문화예술교육	6,365	0.9%
예술가 복지 지원	187	0.0%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187	0.0%
하드웨어 건립	140,305	20.2%	공연장건립	82,126	11.8%
			미술관건립	6,451	0.9%
			기타기반시설건립	49,028	7.1%
			복합시설건립	2,700	0.4%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432,514	62.3%	공연장운영	189,776	27.4%
			미술관운영	7,306	1.1%
			기타기반시설운영	80,612	11.6%
			공연단체운영	124,575	18.0%
			축제운영	30,245	4.4%
			예술교육기관지원	0	0.0%
기타	784	0.1%	기타	784	0.1%
총금액	693,790	100%	총금액	693,790	100%

6) 시·도문화재단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통/매개 지원 순

○ 시·도문화재단 자체사업 33,120백만 원 중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39.9%), 유통/매개 지원(21.6%), 창작지원(19.1%), 교육 및 향유 지원(16.3%)로 4등분 구조가 됨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문화재단에 위탁/이전한 사업의 경우 구분이 어려워, 이번 분석에서는 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을 광역자치단체에 포함시키고 시·도문화재단은 자체사업만 분석함

그림 3-69 | 시·도문화재단 사업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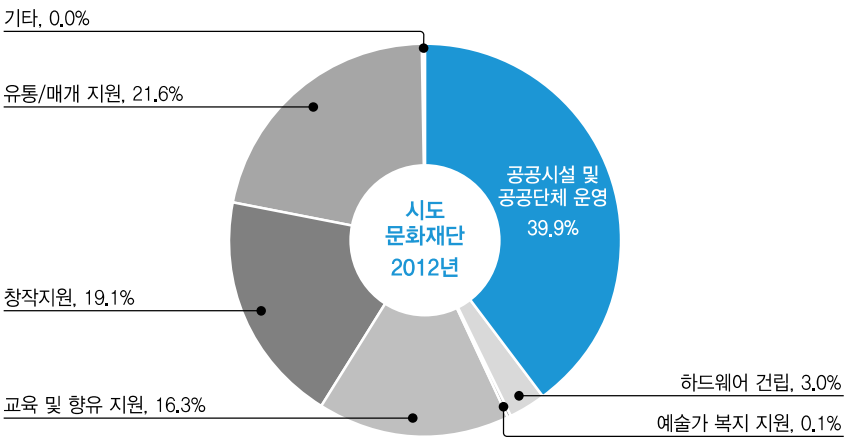

○ 소분류로 유형화하면, 기타기반시설운영(30.4%)이 가장 많고, 작품지원(17.5%), 축제지원(12.5%), 축제운영(9.6%), 문화예술교육(9.5%) 순

그림 3-70 | 시·도문화재단 사업 소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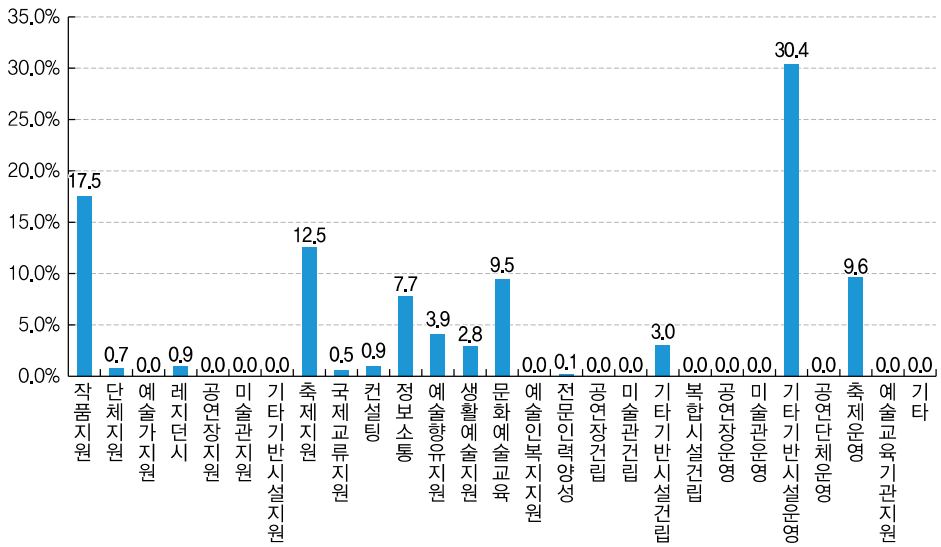

표 3-22 | 시·도문화재단 사업유형별 금액과 비율

유형 (중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유형 (소분류)	금액 (백만 원)	비율
창작지원	6,312	19.1%	작품지원	5,792	17.5%
			단체지원	220	0.7%
			예술가지원	0	0.0%
			레지던시	300	0.9%
유통/매개 지원	7,161	21.6%	공연장지원	0	0.0%
			미술관지원	0	0.0%
			기타기반시설지원	0	0.0%
			축제지원	4,146	12.5%
			국제교류지원	160	0.5%
			컨설팅	300	0.9%
			정보소통	2,555	7.7%
교육 및 향유 지원	5,387	16.3%	예술향유지원	1,305	3.9%
			생활예술지원	939	2.8%
			문화예술교육	3,143	9.5%
예술가 복지 지원	40	0.1%	예술인복지지원	0	0.0%
			전문인력양성	40	0.1%
하드웨어 건립	995	3.0%	공연장건립	0	0.0%
			미술관건립	0	0.0%
			기타기반시설건립	995	3.0%
			복합시설건립	0	0.0%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3,225	39.9%	공연장운영	0	0.0%
			미술관운영	0	0.0%
			기타기반시설운영	10,058	30.4%
			공연단체운영	0	0.0%
			축제운영	3,167	9.6%
			예술교육기관지원	0	0.0%
기타	0	0.0%	기타	0	0.0%
총금액	33,120	100%	총금액	33,120	100%

다. 사업유형별 실행주체

1) 창작지원

□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창작지원 122,708백만 원 중 광역자치단체가 37.1%로 가장 많이 하고, 기초자치단체(35.9%),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16.4%), 문화체육관광부(5.4%) 시·도문화재단(5.1%) 순

그림 3-71 |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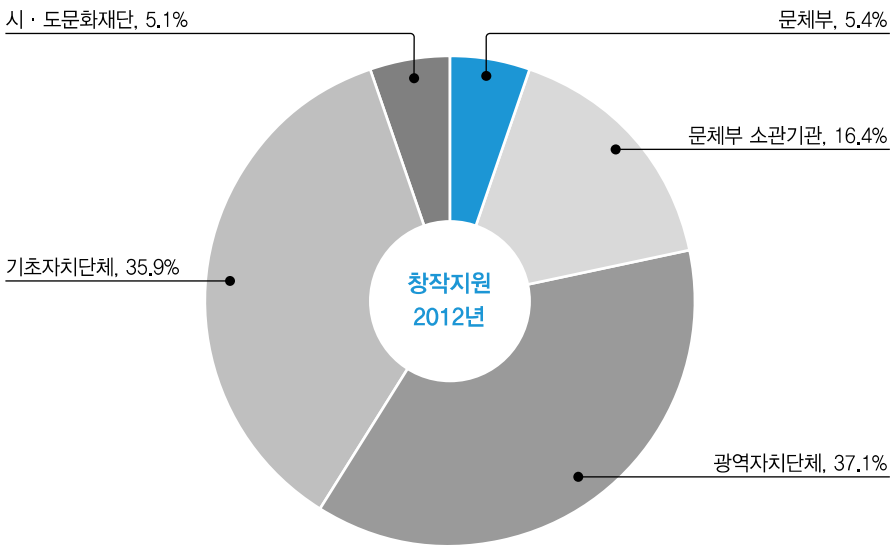

표 3-23 | 창작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창작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6,648	5.4%
문체부 소관기관	20,135	16.4%
광역자치단체	45,532	37.1%
기초자치단체	44,081	35.9%
시·도문화재단	6,312	5.1%
합계	122,708	100%

2) 유통/매개 지원

□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유통/매개 지원 81,294백만 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39%로 가장 많이 하고, 광역자치단체(26.8%),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20.6%), 시·도문화재단(8.8%), 문화체육관광부(4.9%) 순

그림 3-72 |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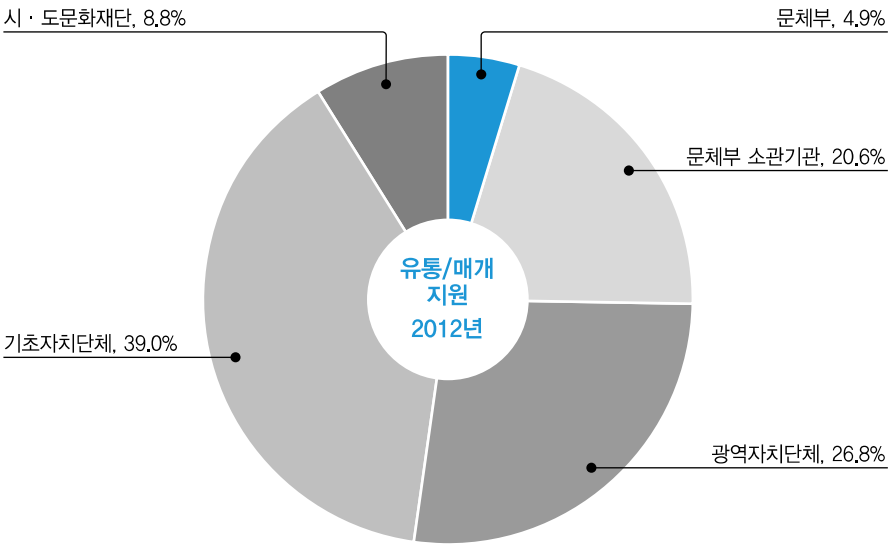

표 3-24 | 유통/매개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유통/매개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3,974	4.9%
문체부 소관기관	16,707	20.6%
광역자치단체	21,778	26.8%
기초자치단체	31,674	39.0%
시·도문화재단	7,161	8.8%
합계	81,294	100%

3) 교육 및 향유 지원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교육 및 향유 지원 201,850백만 원 중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48.2%로 가장 많이 하고, 광역자치단체(26%), 기초자치단체(21.9%), 시·도문화재단(2.7%), 문화체육관광부(1.2%) 순

그림 3-73 |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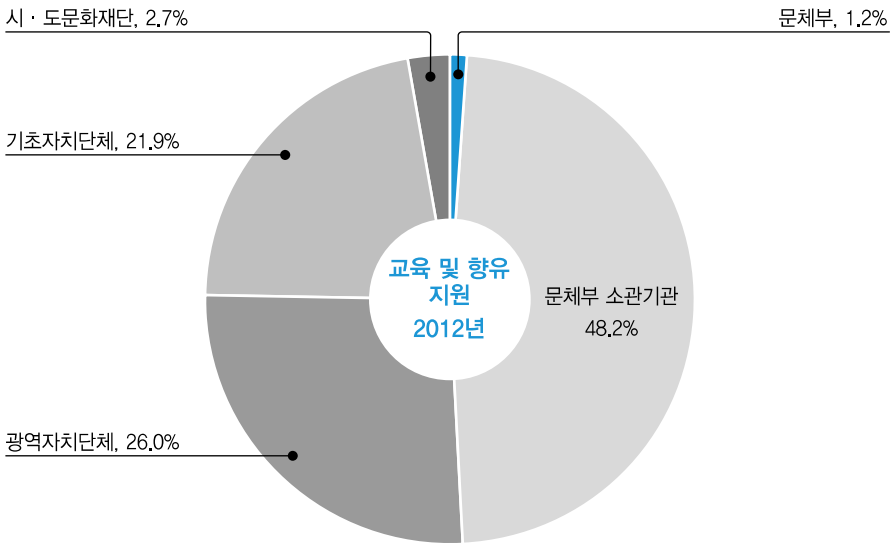

표 3-25 | 교육 및 향유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교육 및 향유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2,455	1.2%
문체부 소관기관	97,192	48.2%
광역자치단체	52,571	26.0%
기초자치단체	44,245	21.9%
시·도문화재단	5,387	2.7%
합계	201,850	100%

4) 예술가 복지 지원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문체부 순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예술가 복지 지원 6,375백만 원 중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52.9%로 가장 많이 하고, 문화체육관광부(43.4%), 기초자치단체(2.9%), 시·도문화재단(0.6%), 광역자치단체(0.1%) 순

그림 3-74 |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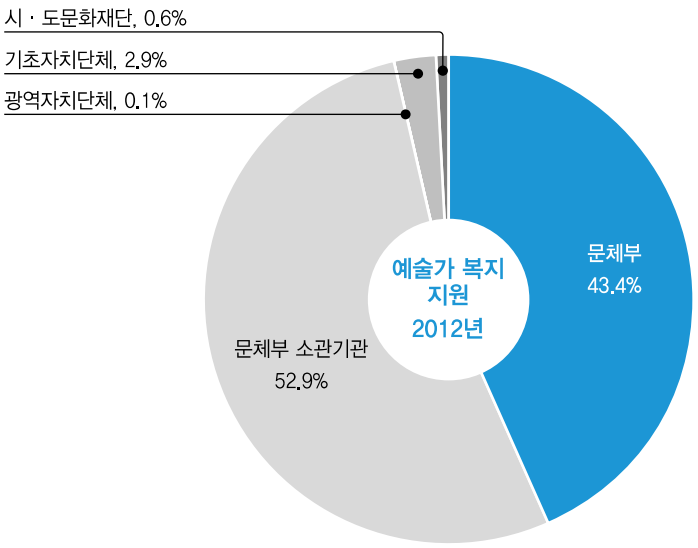

표 3-26 | 예술가 복지 지원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예술가 복지 지원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2,768	43.4%
문체부 소관기관	3,375	52.9%
광역자치단체	5	0.1%
기초자치단체	187	2.9%
시·도문화재단	40	0.6%
합계	6,375	100%

5) 하드웨어 건립

□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레벨1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하드웨어 건립 383,408백만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40.3%로 가장 많이 하고, 기초자치단체(36.6%), 광역자치단체(22.9%) 순

그림 3-75 |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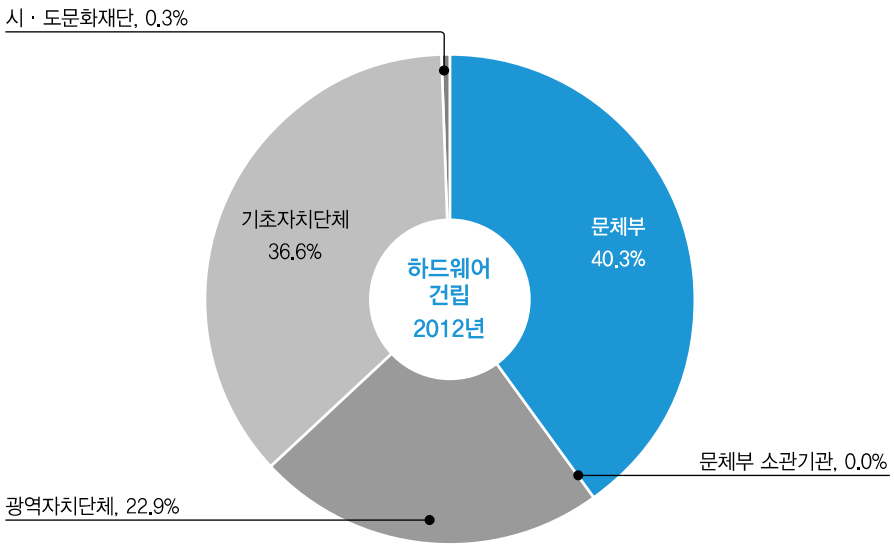

표 3-27 | 하드웨어 건립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하드웨어 건립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154,499	40.3%
문체부 소관기관	0	0.0%
광역자치단체	87,609	22.9%
기초자치단체	140,305	36.6%
시·도문화재단	995	0.3%
합계	383,408	100%

6)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 순으로 레벨1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1,037,984백만 원 중 기초자치단체가 41.7%로 가장 많이 하고, 광역자치단체(29.1%), 문화체육관광부(27.3%), 시·도문화재단(1.3%),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0.6%) 순

그림 3-76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중분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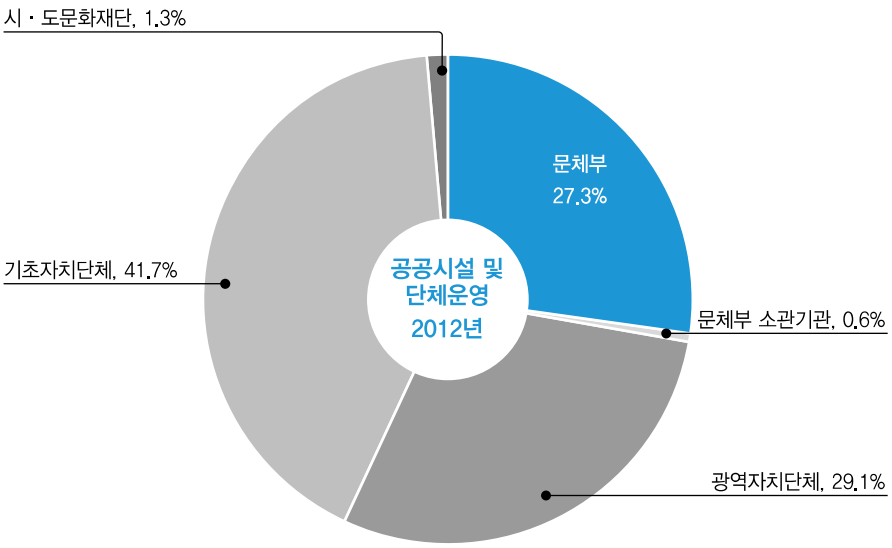

표 3-28 |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실행주체별 금액과 비율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금액(백만 원)	비율
문체부	283,744	27.3%
문체부 소관기관	6,555	0.6%
광역자치단체	301,946	29.1%
기초자치단체	432,514	41.7%
시·도문화재단	13,225	1.3%
합계	1,037,984	100%

8. 2012년, 2013년 지원규모 비교

가. 주체별 비교

□ 공공지원 총규모는 2012년 1조 8,355억 원에서 2013년 2조 348억 원으로 10.9% 증가함

그림 3-77 | 주체별 사업실행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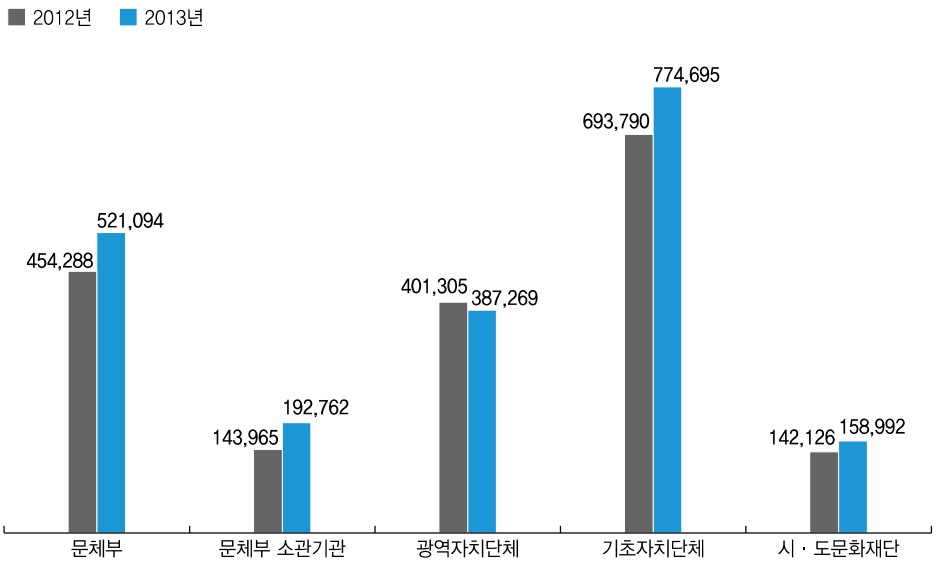

○ 사업실행비 기준으로 문체부가 2012년 454,288백만 원에서 2013년 521,094백만 원으로 14.7% 증가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2012년 143,965백만 원에서 2013년 192,762백만 원으로 33.9% 증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는 제외됨

○ 광역자치단체는 2012년 401,305백만 원에서 2013년 387,269백만 원으로 3.5% 감소

○ 기초자치단체는 2012년 693,790백만 원에서 2013년 774,695백만 원으로 11.7% 증가

○ 시·도문화재단은 2012년 142,126백만 원에서 2013년 158,992백만 원으로 11.9% 증가

나. 유형별 비교

□ 일부 유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에서 2012년보다 2013년 증가함

○ 모든 중분류 유형에서 2012년보다 2013년 증가함

그림 3-78 | 중분류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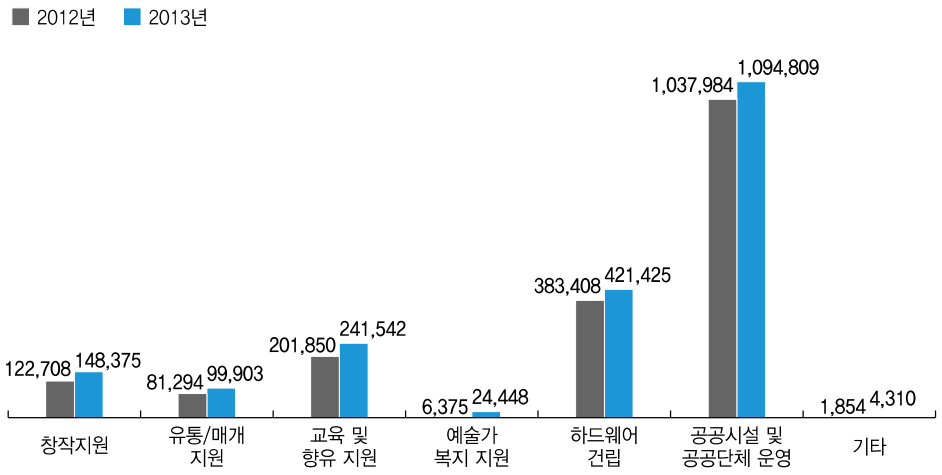

– 창작지원은 25,666백만 원(20.9%) 증가, 유통/매개 지원은 18,610백만 원(22.9%) 증가, 교육 및 향유 지원은 39,692백만 원(19.7%) 증가, 예술가 복지 지원은 18,073백만 원(283.5%) 증가, 하드웨어 건립은 38,017백만 원(9.9%) 증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은 56,825백만 원(5.5%) 증가

○ 예술가지원, 기타기반시설지원, 정보소통, 공연장건립, 기타기반시설건립, 미술관운영은 감소 그 외 모든 유형에서 증가

그림 3-79 | 소분류 유형별 사업실행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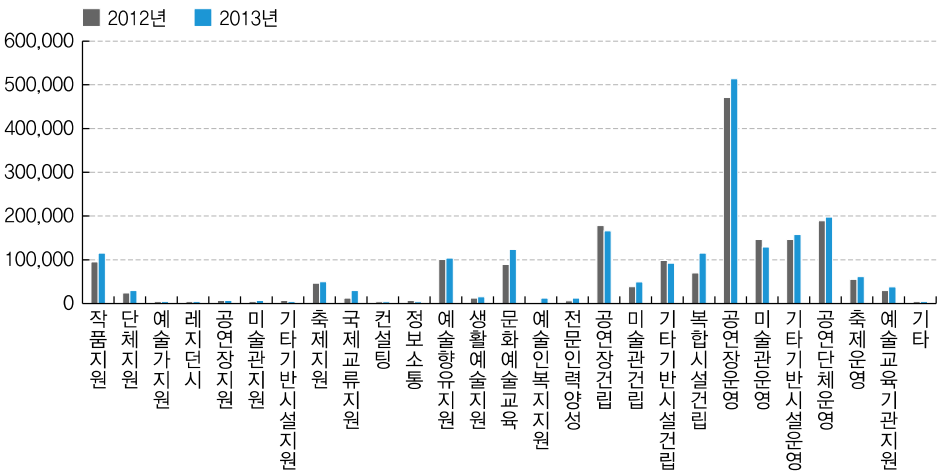

9. 수혜현황

가. 조사범위

1) 수혜 대상의 유형

□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수혜자는 각각의 사업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추출됨

○ 예술가, 예술단체, 공연장과 같은 문화예술시설, 학교 또는 군부대와 같은 문화예술시설 이외의 시설, 예술 강사와 같은 전문 인력, 일반 관람객 등 다양한 유형의 수혜 대상이 존재함

○ 수혜 대상은 사업의 유형(목적)에 따라 그 주요 주체에 변동이 발생함

– 예를 들어 창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예술가 또는 예술 단체가 1차 수혜자가 되고 관람객이 2차 수혜자가 됨

– 그러나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관람객이 1차 수혜자가 되고 예술가나 예술 단체는 2차 수혜자가 됨

표 3-29 | 사업유형별 수혜자 유형

사업	1차 수혜	2차 수혜
창작지원	예술인수 예술단체수	관객수
예술교육	교육대상자수	예술강사수
예술향유	향유자수	예술인수 예술단체수
예술인 복지	예술인수	없음

○ 따라서 모든 문화예술사업에서 추출되는 수혜자 단위를 일괄적으로 합산하는 것 보다 각각의 사업 목적 별로 1차 수혜자와 2차 수혜자를 분리하여 파악

○ 공연의 회수, 발간물의 발행부수, 자료 또는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회수 등도 수혜 결과에 대한 정량화 지표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수혜결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2) 조사대상 기관

□ 레벨2에 해당하는 시·도문화재단 12개와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6개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한 수혜 결과만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함

○ 수혜결과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조사결과 레벨1에 속하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수혜결과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레벨2에 한정

표 3-30 | 수혜자 조사대상 기관

시·도문화재단 12개	서울문화재단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6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대구문화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천문화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광주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나. 사업유형별 수혜현황

1) 창작사업

표 3-31 | 창작사업 수혜현황

대표 사업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 예술창작지원 • 지역문화예술지원 •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육성 • 차세대artiStar지원 • 청년문화 집중 지원사업 • 유망예술 육성 지원	예술가 27만 명 예술 단체 6천 개	관람객 1,200만 명

□ 창작지원사업에는 작품(프로그램)지원, 단체(운영)지원, 예술인지원, 레지던시 관련 사업이 해당되며, 직접 수혜자로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해당됨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실행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이 있음

○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약 27만 명의 예술가와 6천 개의 예술단체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창작지원사업의 2차 수혜자인 관람객은 약 1천 2백만 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2) 향유사업

표 3-32 | 향유사업 수혜현황

대표 사업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 문화바우처 • 방방곡곡사업 • 사랑티켓 • 생활속예술활동지원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 해피존티켓나눔사업	관람객 400만 명	예술단체 1700 개

□ 향유사업에는 일반 시민의 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동아리와 같은 생활예술지원사업들이 해당됨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실행하는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군부대, 교정시설, 복지 시설 등), 사랑티켓, 방방곡곡사업, 해피존 티켓나눔사업 등이 해당됨

○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약 4백만 명의 일반 관람객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향유사업의 2차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예술 단체도 약 1천 7백여 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3) 교육사업

표 3-33 | 교육사업 수혜현황

대표 사업	1차 수혜자	2차 수혜자
• 2013 초등학교 방과후 문화예술교실 지원사업 • 꿈tool 꿈tool 문화학교 • 아트힐링스쿨 •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예술꽃씨앗학교지원사업 •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학생 및 교육참가자 267만 명	예술강사 6천 명

□ 교육사업에는 일반 시민의 문화예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해당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행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프로그램 운영, 예술꽃씨앗학교지원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이 해당됨

○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약 267만 명의 학생과 일반 교육생이 직접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학생 255만 명, 직장인, 아동(청소년) 및 그 동반가족 약 6만 5천 명, 지역주민, 어르신 등 약 2만 명의 청장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교정시설 재소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약 3만 5천 명

○ 교육사업의 2차 수혜자인 예술강사 약 6천여 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4) 예술인 복지사업

표 3-34 | 예술인 복지사업 수혜현황

대표 사업	1차 수혜자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 문화복지전문인력양성 •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 문예회관연수단원운영사업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술인 취업지원·직업안정 기반 구축 • 예술인취업지원 교육사업 • 2013년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2만 1천 명

□ 예술인 복지사업에는 예술가의 직업기반 안정을 위한 교육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이 해당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운영,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전문인력 양성 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연수단원운영 사업 등이 해당됨

○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예술가 약 1만 4천 명과 예술 강사 약 7천 명 등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력 약 2만 1천 여 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10. 타 부처 예술지원 현황

가. 조사방법

1) 조사범위

▢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외 기타 기관들로 구성됨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7개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건설청 등 16개

○ 이외 공공기관과 부처 별 소관 기관들이 존재

▢ 예술지원을 하고 있는 문체부 외 타 부처는 총 14개 부 2개 청 외 5개 소관 기관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중소기업청

○ 문체부 외 타 부처의 소관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농어촌희망재단, 렛츠런재단, 국제교류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포함함

▢ 2013년도에 시행된 사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2014년도 신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함

2) 조사방법

▢ 상기 기관에서 발행한 예산안, 업무계획 등 자료를 통한 문헌조사('13, '14)

나. 조사결과

1) 타 부처 사업유형화

▢ 문체부 외 타 부처 사업은 5개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함

○ 사업의 속성에 따라 예술교육, 마을조성 등 5개의 유형으로 구분 가능

표 3-35 | 사업유형별 담당 부처 및 소관기관

사업유형	담당 부처 및 소관 기관
예술교육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한국과학창의재단
마을조성 (도시재생)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렛츠런재단
문화교류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문화산업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과 복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예술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운영됨
○ 가장 활발한 유형은 예술교육사업
– '예술교육' : 7개 부처 1개 청 1개 기관 15개 사업
– '마을조성(도시재생)' : 3개 부처 1개 청 2개 기관 9개 사업
– '문화교류' : 2개 부처 1개 기관 9개 사업
– '문화산업' : 4개 부처 4개 사업
– '고용과 복지' : 1개 부처 1개 기관 2개 사업
○ 농산어촌의 예술향유지원사업은 마을재생에 포함하였음

2) 문체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가 협업하는 '예술교육'

□ 교육부 : 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풍부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적 소외 아동·위기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학교예술교육사업' : 학생오케스트라(400교), 학생뮤지컬(130교), 예술동아리(500교), 예술중점학교 등 운영
○ '예술중점학교' :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계 중고등학교에 예술중점과정 설치(음악 13교, 미술 8교, 공연영상 2교)
○ 꿈과 끼를 키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소규모 학교에 전교생 1인 1예술활동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및 분야 다양화(30교)
○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의 학교도서관 보급 확대,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공간의 문화적 공간화 리모델링 등
□ 여성가족부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 지원
○ 청소년 문화존(126개소) 운영하여 130만 명 참여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전국 200개소) : 문화예술 등 활동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 개발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41개소)
□ 보건복지부 : 문화 사각지대의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351개소)
○ 장애인 문화소외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장애인복지관 90개)
□ 국방부 : 육·해·공군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재능 발굴
○ 장병 정서함양을 위한 우수도서 보급
○ 문화예술단체 부대 초청공연(230대대) 및 부대별 체험형 문화예술교육(195대대)

▢ 법무부 :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적응 유도
  ○ 교정시설 재소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재소자 교화 및 재사회화 도모(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42개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직장인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
  ○ 산업단지 근로자 및 중소기업 대상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직장 내 소통강화 및 창의계발(19개)
▢ ('14년) 통일부 : 북한이탈 청소년 및 가족에게 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심적 안정 도모 및 원활한 사회 적응에 기여(여명학교 등 4개 시설)
▢ ('14년) 경찰청 : 의경의 현장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여가 활용문화 정책을 위해 주기적 예술교육 실시(기동단·경비대·순찰대 등 35개 부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융합인재교육(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인재 양성

3) 문화를 활용한 '마을조성(도시재생)'과 농산어촌 예술향유기회 확대

▢ 행정자치부 : 취약 지역의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전국 25개소 선정 및 운영)
  ○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 등에 복합활용공간 조성으로 사회·문화·경제적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생활공간 개선형(야외쉼터, 벤치, 운동기구, 정원 등), 사회복지 확충형(북카페, 놀이방, 도서관, 다문화 지원센터), 수익사업 추구형(특산품 전시장, 체험실, 작업장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및 운영
▢ ('14년) 국토교통부 : 쇠퇴도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
  ○ 문체부와 협력하여 문화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
  ○ 11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16년부터 전국적 지원 확대 예정('14년 예산 306억 원)
  ○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의 H/W 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상권활성화 등 S/W 사업 지원
  ○ 도시재생 사업 외, 문체부(한국문화를 담은 고품격 공강 조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와 국토부(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의 협업을 통하여 한옥과 한국적 실내 공간 조성 도모
▢ 중소기업청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15개시도, 308개 시장)을 통하여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편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상징 조형물 등 설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인프라 정비 및 지역문화 발굴 보전,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읍·면 정비(80개소)를 통하여 농촌공원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문화공간 조성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활성화
○ 주민 주도의 농촌축제(18개소)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농교류 증진 및 농촌 가치 제고

□ 농어촌희망재단 : 농산어촌의 풍요로운 문화생활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도시민과의 문화격차 해소
○ 농어촌 문화예술순회공연 : 농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연위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추진
○ 농어촌 문화교실지원(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어버이 합창단) :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풍요롭게 하고, 책임·질서, 배려와 협동의 지역사회 공동체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25개소, 어버이 합창단 20개소 운영 지원
○ 농어촌 작은 문화교실지원 : 농어촌 문화소외 지역에 문화, 예술, 교양, 스포츠 강좌 등 지역 아동 및 주민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정기적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경비 지원

□ ('14년) 렛츠런재단 : 한국마사회 사업장 소재 지역주민과 경마 고객 등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문화햇살 오케스트라' 순회공연, 청소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테마 뮤지컬' 공연, 제작 협찬을 통한 할인티켓나눔 등

4) 국가브랜드 제고와 남북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의 교류' 확대

□ 외교부 :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 확대를 위하여, 문체부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외교부의 국제관계 전문성을 결합해 국제 문화교류와 공공외교 동시 증진
○ 재외공간을 활용한 각종 해외 문화행사, 우수 예술품 전시회 개최 및 지원
○ 외교관계수립 기념 행사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지원
○ 국가 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문화협정 체결 및 문화공동위원회 운영(101개국과 체결)
○ 문체부(한류콘텐츠 지속 확산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한국형 문화ODA 모델 개발 및 문화분야 ODA 확대)와 외교부(재외공관을 통한 공공외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 지원)의 협업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전 세계 확산과 문화ODA 확대 도모

□ 국제교류재단 :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인적·문화 교류사업 추진
○ 해외 유수 박물관에 한국실 설치(10개국 28개실) 및 한국유물 담당 객원 큐레이터 파견, 해외박물관의 한국담당 큐레이터 대상 워크숍 개최(11개국 30명 참가), 'Korea Day' 통한 한국실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교류 파트너십 사업, Korea Festival,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에서의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한국 문화예술 해외 소개 및 파급효과 극대화
○ 서울아트마켓(PAMS) 후원('09,'10,'11,'13) : PAMS Choice 선정작 해외 진출 시 항공비지원 (KF-PAMS Grant)

▢ 통일부 :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행사 지원

5)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산업통상자원부 : 문체부(창의적 디자이너 육성, 한국 패션문화 해외진출 등 문화적 접근 강화)와 산업부(패션브랜드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가 협업하여 한국 패션의 세계화 도모

▢ 미래창조과학부 :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활력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문체부(장르별 문화콘텐츠 육성)와 미래부(디지털콘텐츠 활성화 가능 기반 조성) 간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건강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 방송통신 서비스와 기기의 해외진출 시 문화콘텐츠 해외진출과 연계 등

▢ 해양수산부 : 해양경관이 수려한 등대를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해양관광산업인프라 구축

○ 팔미도, 간절곶 등 23개 유인등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 : 문체부(한식 홍보 및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와 농식품부(해외한식당 마케팅 및 한식콘텐츠 개발 등 해외진출)의 협업을 통해 한식 세계화 도모

6) '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부문 일자리 창출

▢ 고용노동부 : 문체부와 협업을 통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예술인 재교육 등을 통한 예술인 복지 확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노리단', '한빛예술단' 등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제4장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1. 개요
2. 민간지원규모 관련 보고서 고찰
3. 조사방법
4.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제4장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1. 개요

가. 조사목적

□ 민간부문 예술지원규모 추정을 목적으로 함

○ 본 장에서는 앞의 공공부문의 예술지원규모와 더불어 민간부문 예술지원규모를 추정하고 지원 분야, 장르 등의 규모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함

□ 민간 부분의 예술지원주체는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됨

○ 기업은 직접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경우와 법인형태로 재단을 설립해 예술지원을 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화 등의 기업은 사회공헌팀 등 특정 부서를 두고 여러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담당시키고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을 세우고 예술지원 활동을 진행 중임 (예)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 개인이나 여러 발기인이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경우 (예)옥랑문화재단, 수림문화재단 등

○ 개인이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경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나무 운동이나 크라우드 펀딩, 특정 단체(기관) 회원제도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개인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전체 지원액 중 비중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음

나. 조사대상

□ 민간부문 조사대상은 '기업'과 기업이 설립한 '재단'으로 한정함

○ 개인 기부자들의 경우 지원액이 크지 않고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의 민간 부분 예술지원 조사대상은 파악이 가능한 '기업'과 기업이 설립한 '재단'으로 한정함

○ 기업 중에서도 사회공헌 활동 금액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자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인 조사방법을 확정하고자 함

○ 구체적 조사절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4-1 | 민간부문 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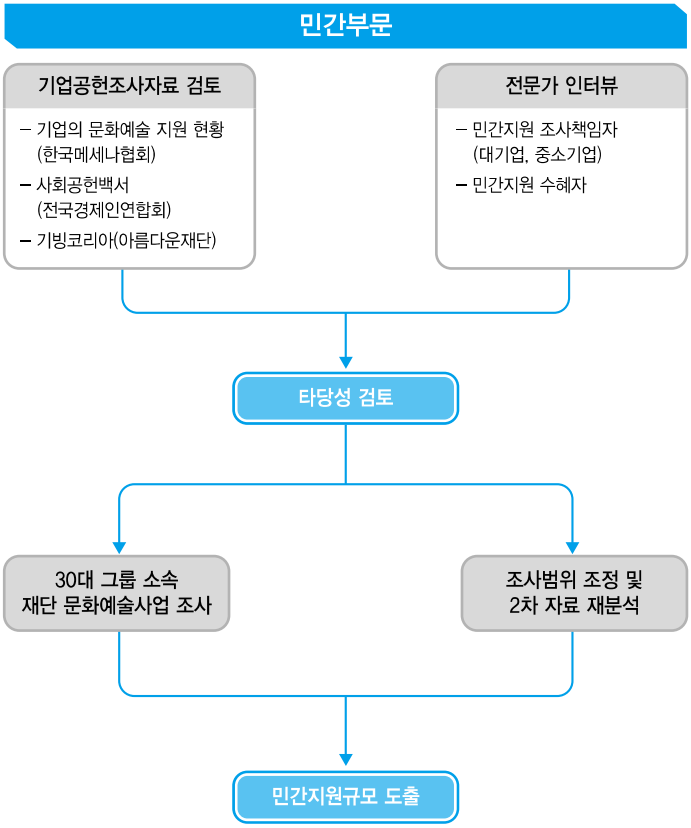

2. 민간지원규모 관련 보고서 고찰

가. 사회공헌백서

□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조사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매년 수행, 기업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발표하고 있음

– 주요 조사내용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규모, 임직원 사회봉사 실적 및 제도, 사회공헌 추진을 위한 사내 제도, 기업 사회공헌 인식조사 등을 포함함

○ 조사대상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및 전경련 주요 회원사 등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팩스, e-mail, 전화조사 등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012년 경우 600개 기업 중 255개사가 응답함

□ 2012년 기업의 사회공헌 기부액은 총 3조 2,500억, 문화예술 부문 1,800억 이하로 추정

○ 조사결과 기업들의 총 기부액은 3조 2,500억 원(기부금 약 62.5% = 2조 312억 원)이며 그 중 문화예술 및 체육 부문은 11.1%(약 3,600억 원)에 달함

– 분야별 지출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31.7%)이 가장 높고, 이어서 교육·학교·학술연구(16.1%), 문화예술 및 체육(11.1%) 순으로 나타남

○ 본 보고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의 비중을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체육부문 예산이 문화예술 보다는 훨씬 크리라는 의견이 공통적. 즉, 문화예술지원액의 상한선은 1,800억 이하일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그림 4-2 | 2012년 분야별 사회공헌 지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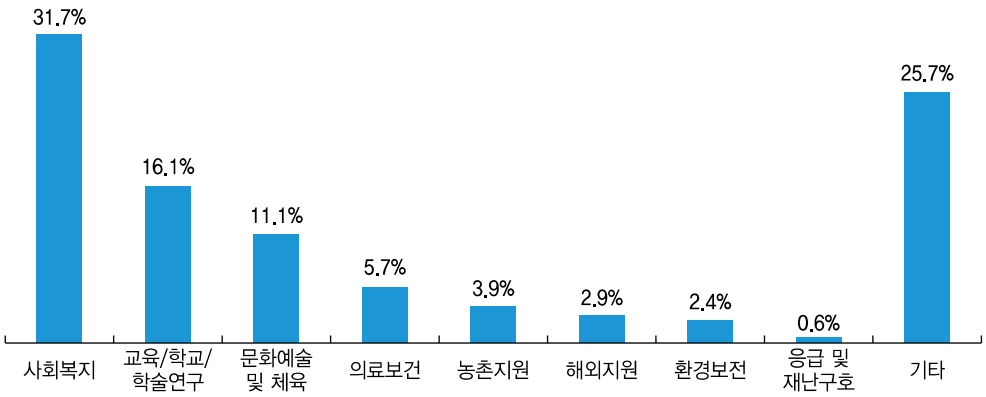

주: 1) 응답 기업 203개사 기준
2) 기타항목: 사회적기업, 전통시장지원, 군부대 위문, 지역사회 기금, 캠페인 지원 등
출처: 사회공헌백서(2013)

표 4-1 | 상위 30대 그룹 주요 재단 및 사업

그룹	재단	주요 사업
GS	GS칼텍스재단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울마루 조성사업
삼성	삼성문화재단	삼성미술관 Leeum, 삼성미술관 플라토 운영 호암미술관 운영, 문화예술지원사업
	호암재단	호암상 운영
LG	LG연암문화재단	LG아트센터 운영 메세나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두산	두산연강재단	문예진흥사업
SK	우란문화재단	프로젝트박스 시야
CJ	CJ문화재단	CJ아지트
현대자동차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사랑바우처,농산어촌초등학생교육지원(예술교실)&환아,가족대상힐링캠프, 문화예술분야 장학금 지급&문화예술분야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포스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아시아펠로십-아시아문학지 발간

출처: 행복나눔재단(2012), 2013 사회공헌백서, 현대차정몽구재단(2012)

나.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

▢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는 500~1000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조사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의사회공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하고 있음

–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사회공헌 실태를 이해하고 향후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 조사내용으로 사회공헌 활동현황, 사회공헌 비용, 대표 사회공헌 활동 사례 등을 포함

○ 조사대상은 매출 상위 501~1,000위 기업으로하며 표본프레임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소속기업 총 540개를 대상으로 함

–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조사 등의 조사방식 병행

– 2013년 조사에서는 총 540개 중견·중소기업 중 209개사가 응답함

▢ 사회공헌 활동 수행 기업 중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관심 있는 사회공헌(자원봉사) 분야라는 응답은 15.4%(2012년 활동 기준)

○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사회공헌활동을 한 기업은 20개였으며 평균 약 9억 9천6백만 원(직접사업 비용+기부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조사에 응답한 209개 기업 중 62.2%(130개)의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했다고 응답함(2012년 활동 기준)

–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거나 관심 있는 사회공헌(자원봉사) 분야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는 15.4%,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기부금은 평균 약 8억 원(현금+현물+시설 기부)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회공헌 보고서는 문화예술과 스포츠 기부를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며, 문화예술 기부에 관심있는 기업 수가 매우 적음을 보여줌

표 4-2 |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지출현황

(단위: 개, %, 백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미만	1~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사회복지	108	25	29.6	9.3	15.7	12	8.3	372.2
보건의료	11	18.2	18.2	9.1	18.2	18.2	18.2	465.7
학술·장학	41	7.3	19.5	12.2	22	22	17.1	572.8
문화예술·스포츠	20	20	15	10	10	30	15	996.4
환경보호	22	27.3	13.6	13.6	22.7	18.2	4.5	450.9
응급·재난구호	11	9.1	27.3	27.3	9.1	27.3	0	1010.8
농·어촌지원	10	20	30	10	30	10	0	299.5
해외구호	8	0	25	12.5	12.5	37.5	12.5	753.5
기타	3	33.3	0	0	0	33.3	33.3	548.8

출처: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2013)

표 4-3 | 분야별 기부현황–기부금

(단위: 개, %, 백만 원)

구분	사례수	1천만 원 미만	1~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미만	1~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모름/무응답	평균
사회복지	108	2.8	22.2	39.8	14.8	9.3	11.1	317
보건의료	11	0	18.2	27.3	18.2	18.2	18.2	463.7
학술·장학	41	2.4	7.3	34.1	22	14.6	19.5	404.6
문화예술·스포츠	20	5	20	25	15	15	20	799.5
환경보호	22	4.5	22.7	27.3	22.7	13.6	9.1	318.1
응급·재난구호	11	9.1	9.1	54.5	9.1	18.2	0	831.1
농·어촌지원	10	0	10	40	30	10	10	326.2
해외구호	8	12.5	0	37.5	25	0	25	206.8
기타	3	0	33.3	0	0	33.3	33.3	546

출처: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 백서(2013)

다. 기빙 코리아

□ 아름다운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2012년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

○ 지역사회에 기반한 중소기업 사회공헌, 그리고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지수〉를 조사, 발표한 바 있음

– '중소기업의 사회공헌'과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두 가지 주제를 다룸

–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범주를 '기부금' 항목에 한정하지 않고 홍보비 등 다양한 후원방식을 구분하여 조사함

– 주요 조사내용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 경험 및 조직, 2012년도 사회공헌 실적(활동여부, 기부금,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활동 성과 등을 포함

○ 조사대상은 매출액 2000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를 사용함

– 조사결과 103개의 기업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문화예술지원한 기업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개로 집계됨

– 사업범위는 문화예술지원, 공익, 후원/협찬 사업이 모두 포함되며, 예술장르와 대중문화 장르도 모두 포함

□ 조사결과 민간지원규모(2012년)는 총 1,336억으로 집계됨

○ 전체 기업에서 문화예술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기업은 5%대에 머묾

○ 지원대상으로 보면 예술단체가 62.2%로 가장 높고, 공공기관과 공연장이 각각각 25.7%. 다음으로 박물관(10.8%), 예술가 개인(9.5%) 순이었음

○ 장르 중에서는 미술/전시가 39.2%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교육(25.7%)이 다음. 서양고전 음악(21.6%), 연극(20.3%), 뮤지컬(17.6%)이 뒤를 이음

그림 4-3 | 문화진흥 기부대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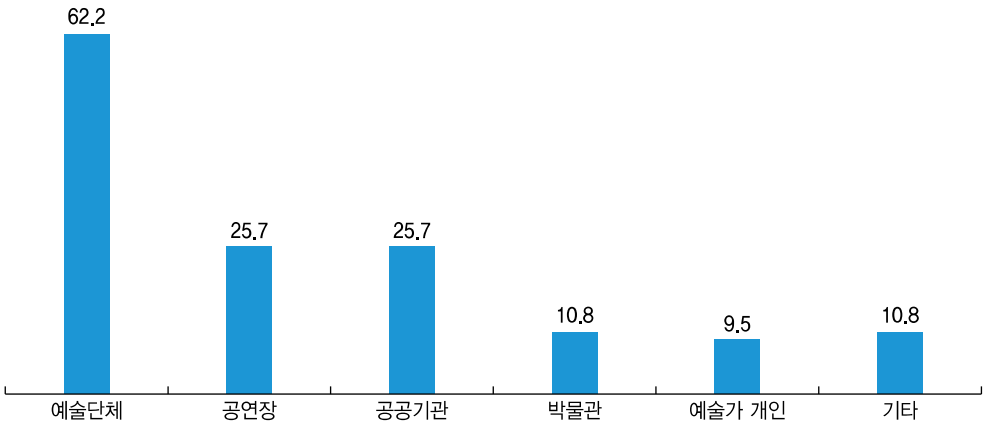

출처 : 기빙코리아 2013(아름다운재단)

그림 4-4 | 문화진흥 기부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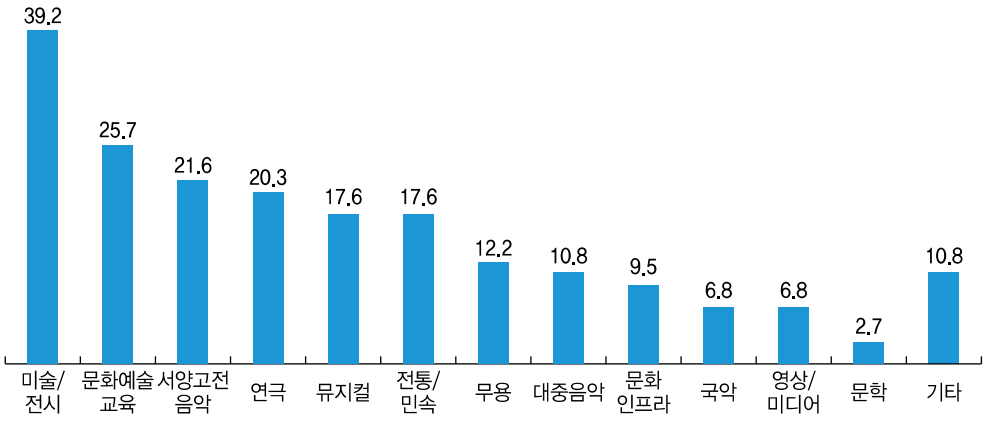

출처 : 기빙코리아 2013(아름다운재단)

라.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 한국메세나협회는 국내기업 및 국내소재 외국계 기업 등 상위 500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조사, 발표함

○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들의 예술지원 및 협력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메세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연차보고서 형태로 발표하고 있음

○ 주요 조사내용으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규모, 기업들이 문예위에 기탁한 조건부 기부금 지원 현황,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유형별 금액 등 포함

○ 지원항목에는 사회공헌 목적뿐 아니라 종업원 문화 활동, 마케팅 목적 활동 지원이 모두 포함됨

○ 조사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매출액 및 자산총계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조사 및 조건부 기부금 납부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함

– 총 779개 기업을 조사, 전체 응답기업 중 114개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했다고 응답

□ 2013년 민간 문화예술지원규모는 1,753억

○ 2013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은 1,109건의 사업에 1,664억 7천2백만 원을 지원. 이에 문예위 기부금 89억을 합치면 총 1,753억으로 집계됨

– 응답기업 442개(조사기업 779개) 중 문화예술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은 114개

– 2013년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약 9.4% 증가한 수치임

– 민간문화재단의 2013년 지원총액은 714억 원으로 전체 문화예술지원액의 41% 구성, 주요한 민간지원 주체임을 보여줌

–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지원액 합계÷지원기업수)'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4억 6천만 원이며, '건당 평균 지원금액 (지원액 합계÷지원건수)'은 26.1% 감소한 1억 5천만 원임

표 4-4 | 2013년도 한국메세나협회 직접조사 기업의 '자체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2	2013	전년대비(%)
지원기업수	110	114	▲ 3.6
지원금액	154,514	166,472	▲ 7.7
지원건수	760	1,109	▲ 45.9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	1,405	1,460	▲ 3.9
건당 평균 지원금액	203	150.1	▼ 26.1
기업당 평균 지원건수	6.9	9.7	▲ 40.6

* 문예위 기부금 제외

출처: 한국메세나협회(2013)

표 4-5 | 2013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건부 기부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2012	2013	전년대비(%)
지원기업수	471	563	▲ 19.5
지원금액	5,758	10,919	▲ 89.6
지원건수	597	861	▲ 44.2
기업당 평균 지원금액	10	13	▲ 32.3
건당 평균 지원금액	12.2	19.4	▲ 59.0
기업당 평균 지원건수	6.9	9.7	▲ 40.6

출처: 한국메세나협회(2013)

3. 조사방법

가. 조사방법

▢ 사전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민간지원규모 조사방법 확정

○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조사를 위해 민간예술지원 관련 조사자료 검토, 전문가 인터뷰 등 사전조사를 진행함

○ 사전조사결과 유사한 목적으로 기업 및 재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기존 조사에서 발표된 민간 예술지원규모의 편차가 크지 않고, 조사에 응답하는 기업 및 재단의 수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조사된 2차 자료 재분석 방향 검토

○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보다 2차 자료를 본 연구목적 및 범위에 맞게 재분석하는 것이 조사의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함

– 기업에서 예산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의 조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전문가 조사결과)

– 이러한 조사에 응답하는 기업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도 조사에 응대하는 기업은 유사하리라 보임

– 상반기 동일한 목적의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대상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조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재분석을 실시하기로 함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를 토대로 조사범위 조정 및 재분석 실시

○ 한국메세나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

○ 발표된 민간 기업 예술지원 조사 중 표본 수가 가장 많고 조사항목이 다양함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는 다양한 예술지원사업을 조사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이 중에는 기업의 '마케팅' 목적이나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목적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나. 조사범위

▢ 조사범위는 예술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대상으로 함

○ 본 분석에서는 마케팅 및 인적자원관리 목적의 사업은 제외하였으며 문화예술 직접 지원사업만 포함, 공공 예술지원과 조사대상을 동일하게 한정시킴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에는 예술지원의 여러 유형을 조사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기업의 마케팅 목적이나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같은 인적자원관리 목적의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음

– 예술지원사업에는 '예술영재 지원활동', '문화예술 단체 순수 지원', '문화예술 시설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기타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전략',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행사의 협찬/후원' 등이 해당된다고 봄

– 단, 위 조사범위에 시설 건립은 미포함되어 있음

○ 조사대상 장르도 콘텐츠 분야는 제외하고 순수예술 장르에 한정함

– 장르적 특성 역시 공공부문의 조사대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 '문학', '미술', '음악' 등 순수예술 장르만 포함하였으며, '영상/미디어'와 같이 산업화된 장르는 배제함

– 구체적으로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미술/전시', '문학', '인프라', '전통예술', '문화예술교육' 등이 포함됨

표 4-6 | 한국메세나협회 조사 사업유형[8)]

목적	사업유형
예술지원 차원	1. 예술영재 지원 활동
	2. 문화예술 단체 순수 지원
	3. 문화예술 시설 운영
	4.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5. 소외 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개
	6. 기타 문화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전략
마케팅 차원	7. 제품 디자인에 기존 예술작품을 활용
	8. 예술가가 제품 디자인 개발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직접 참여
	9. 기업 또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나 광고 등에 문화 예술을 적용
	10.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행사의 협찬/후원 (CI,BI노출목적)
	11. 고객관계관리(CRM)차원에서 고객에게 문화예술 혜택(공연/전시 티켓, 예술교육 기회 등)을 제공
인적자원관리 차원	12. 기타 문화예술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13. 종업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공연관람 및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등)
	14. 종업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15. 종업원 대상 문화예술을 활용한 직무능력 개발
	16.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문화 창출/정착
	17. 종업원과 종업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18. 기업의 문화적 사회공헌 활동에 종업원의 자원 봉사 참여 독려
	19. 회사 건물에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간 조성/ 문화적 리모델링
	20. 기타 문화예술을 활용한 경영 전략

예술장르			
1. 국악	2. 서양음악	3. 무용	4. 연극
5. 뮤지컬	6. 미술/전시	7. 문학	8. 인프라
9. 전통예술	10. 영상/미디어	11. 문화예술교육	12. 기타

* 위 표에서 색이 다르게 표시된 셀에 속한 사업유형 및 장르가 본 조사대상임

8) 한국메세나협회 설문지에는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지원', '마케팅 차원', '인적자원관리 차원'으로 명명함

4. 민간부문 예술지원 현황

가. 민간지원 사업유형별 규모

□ 기업의 예술지원 중 사회공헌 차원의 예술지원사업 비중은 77%, 마케팅 목적 13.5%, 인적자원 관리 차원이 9.5%를 차지(2013년 기준)

○ 기업의 예술지원사업을 보면 예술(활동)에 대한 직접 지원이 1298억으로 가장 많고 마케팅 목적이 227억(13.5%), 인적자원관리 목적이 169억(9.5%)로 구성되어 있음

– 마케팅 목적 중에서는 '예술가가 마케팅에 참여한 사업(6%)'과 '기업 이미지 구축에 예술을 적용'한 사업(4%)의 비중이 높음

– 인적자원 관리 목적에서는 종업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 사업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기업문화 창출한 사업이 가장 많음(3%)

□ 예술지원사업 중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운영'이 38%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 15%,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11%임

○ 기업은 '지역사회 예술지원'(25%)이 가장 많고, '문화예술 시설 운영'(18%), '문화예술단체 지원'(7%)로 다음 순

○ 재단은 '시설 운영'(67%)이 가장 많고, '문화예술단체 지원'(17%), '기타 사회공헌전략'(4%) 순으로 '시설 운영'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

그림 4-5 | 민간지원 사업유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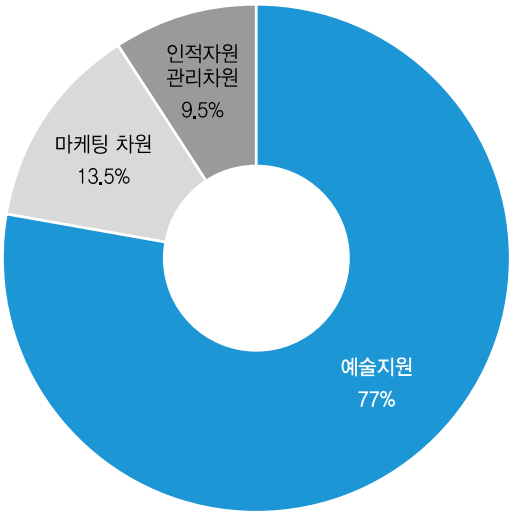

표 4-7 | 민간지원 세부사업별 비중

사업목적	사업유형	기업 (100%)	재단 (100%)	합계 (100%)	비중 (백만 원,%)
예술지원 차원	1. 예술영재 지원	-	1%	-	129,794 (77%)
	2. 문화예술단체 지원	7%	17%	11%	
	3. 문화예술 시설 운영	18%	67%	38%	
	4.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	25%	-	15%	
	5.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7%	-	4%	
	6. 기타 사회공헌 목적	5%	4%	5%	
	10. 예술가, 행사 협찬, 후원	4%	-	2%	
마케팅 차원	7. 제품디자인에 예술작품 활용	2%	-	1%	22,682 (13.5%)
	8. 예술가가 마케팅에 참여	7%	5%	6%	
	9. 기업 이미지 구축에 적용	6%	-	4%	
	11. 고객관계관리 혜택	3%	-	2%	
	12. 기타 마케팅 목적	3%	-	2%	
인적자원 관리 차원	13. 종원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1%	5%	3%	15,985 (9.5%)
	14. 종업원 문화예술교육 제공	-	-	-	
	15. 종업원 직무능력 개발	-	-	-	
	16. 문화예술 매개 기업문화 창출	5%	-	3%	
	17. 종원원과 가족에게 제공	-	-	-	
	18. 종업원 자원봉사 참여 독려	-	-	-	
	19. 공간 조성, 문화적 리모델링	-	-	-	
	20. 기타 경영전략 목적	6%	-	3%	

* 위 수치는 모든 장르를 포함한 수치임

나. 총 지원규모

□ 2013년 민간지원규모는 총 1,276억 원

○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유형 및 장르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산은 1,276억임

– 문화예술지원한 기업은 총 93개, 재단은 21개로 집계됨. 조건부 기부금을 한 기업은 539개에 달함

– 지원규모는 기업 680억, 재단 595억, 조건부 기부금 88.5억이며, 중복 응답한 액수(98.5억)을 제외하여 1,276억이라는 민간지원규모 총액 산정

○ 지원사업 건수로 보면 총 913건이며, 이 중 기업이 828건, 재단이 101건임

○ 사업 건당 지원금을 비교해 보면 기업은 731백만 원, 재단은 2833백만 원으로 재단이 기업의 4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4-6 | 기업과 재단 지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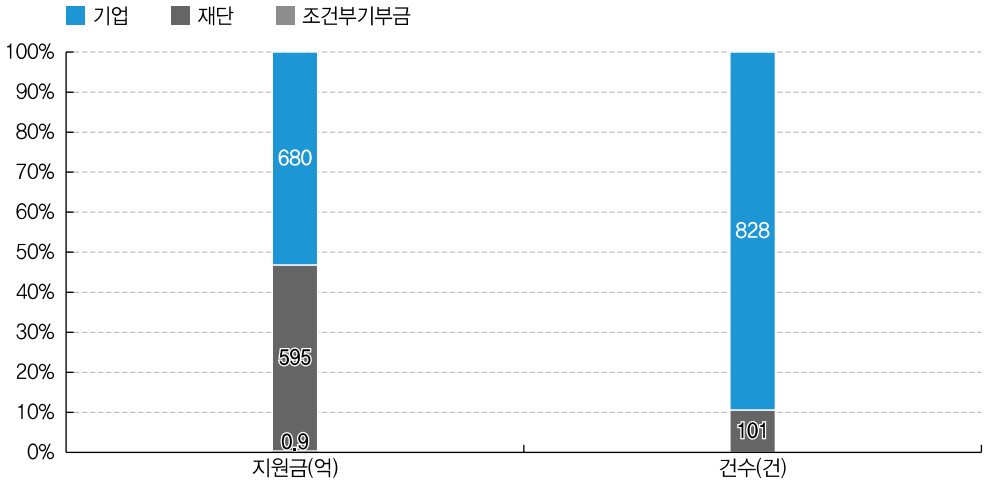

표 4-8 | 2013 민간기업 지원규모

구분	기업 (93)	재단 (21)	조건부 기부금 (539)	총*
지원금 (백만 원)	68,048 (53.3%)	59,506 (46.6%)	88.5 (0.1%)	127,632 (100%)
건수	828건 (89%)	101건 (11%)	-	913건
건당지원금	731.7	2,833.6	-	-

* 유형별 중복선택 9.85 제한 금액임(총 건수는 중복 계산 16건 제외한 결과임)

□ 문화예술지원액은 기업 사회공헌금액의 3.9% 수준

○ 사회공헌백서(2013)에서 발표한 기업사회 공헌금액 3조2,500억과 비교하면 문화예술지원규모(1,276억 원)은 3.9% 수준으로 비중이 낮음

○ 사회공헌백서에서 집계된 문화예술 체육 기부액은 3,600억이며 그 중 문화예술은 1/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다. 민간지원 유형 및 장르별 규모

□ 민간지원의 유형별로 보면 시설운영(50%) 비중이 가장 높음

○ 세부사업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 시설운영 지원(50%)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20%)이 높음

○ 문화예술단체 지원(13%), 소외계층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5%), 예술가, 행사협찬, 후원(5%), 예술영재 지원(1%) 순을 보임

그림 4-7 | 세부유형별 민간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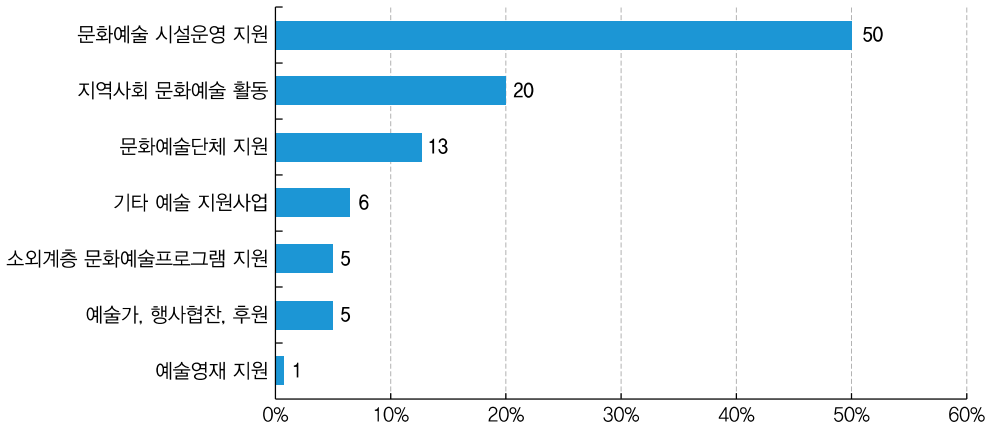

□ 장르 중에는 서양음악 지원이 가장 많고, 국악이 다음

○ 장르별 지원규모 역시 '인프라'가 757억(59%)으로 가장 높고 '문화예술교육' 15%로 다음 순('영상/미디어', '기타' 장르는 제외시킨 결과임)

○ 예술 장르 중에서는 서양음악이 104억(9%)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악이 40억(4%), 미술/전시(27억, 3%), 뮤지컬(22.6억, 3%) 순임

□ 재단 사업은 인프라 지원에 집중, 기업은 인프라, 교육에 관심

○ 재단은 인프라 지원이 483억으로 가장 높고 예술 장르 중에서는 문학이 20억으로 다음 순임

○ 반면 기업은 인프라, 예술교육 다음으로 서양음악에 대한 지원이 104억으로 장르별 지원액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9 | 기업, 재단의 장르별 지원규모

(단위: 백만 원)

장르	기업	재단	총 지원액(백만 원, %)	
국악	4,009	825	4,834	4%
서양음악	10,448	1,205	11,653	9%
무용	879	807	1,685	1%
연극	1,502	1,932	3,434	3%
뮤지컬	2,263	1,216	3,479	3%
미술/전시	2,702	1,548	4,250	3%
문학	357	2,033	2,390	2%
인프라	27,466	48,269	75,735	59%
전통예술	538	729	1,267	1%
문화예술교육	17,886	942	18,828	15%
합계	68,048	59,506	127,554	100%

*위 표는 직접지원만 분석한 결과이며 조건부 기부금은 미포함됨〈장르별 민간지원규모〉

▢ 장르별로 지원사업유형에서 차이를 보임

○ 서양음악 지원은 '예술가 행사 협찬/후원', '예술영재 지원사업'과 '문화예술지원단체 사업', '소외계층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국악은 '예술영재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지원 비중이 높음. 문학은 '예술영재지원'이, 뮤지컬은 '단체지원' 유형에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10 | 사업유형 및 장르별 지원 현황

	예술영재 지원	문화예술 단체 지원	문화예술 시설 운영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소외계층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가, 행사 협찬 후원	기타
국악	16%	15%	-	8%	-	-	4%
서양음악	40%	22%	-	10%	14%	53%	12%
무용	-	7%	-	1%	-	3%	2%
연극	-	8%	-	1%	3%	2%	20%
뮤지컬	-	13%	-	1%	3%	9%	5%
미술/전시	16%	13%	-	2%	1%	6%	12%
문학	23%	7%	-	0%	-	2%	11%
인프라	-	7%	97%	39%	5%	18%	16%
전통예술	-	5%	-	1%	-	1%	0%
문화예술교육	5%	5%	3%	38%	73%	4%	17%
합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라. 민간지원 지원방식별 규모

▢ 자체기획 비중은 75.7%이며 재단 사업은 대부분 자체기획으로 진행됨

○ 민간지원 중 자체기획은 기업이 418억, 재단은 578억으로 총 996억(75.7%)를 차지함

▢ 지원규모의 99%는 대기업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기준으로 보면 4천억 이상 기업의 지원액이 전체 지원규모의 99%를 차지함

그림 4-8 | 지원유형별 민간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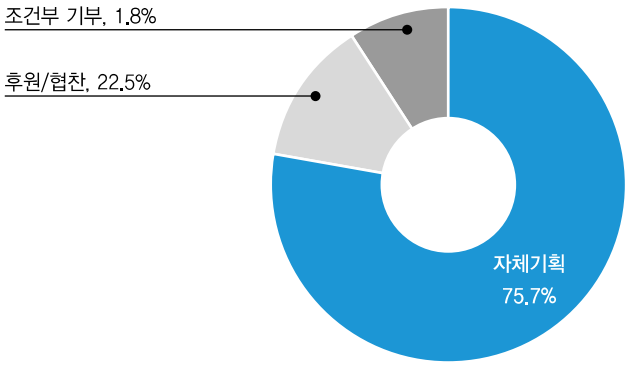

표 4-11 | 지원유형별 민간지원규모

(단위: 백만 원)

지원유형	기업	재단	총지원액	비율(%)
자체기획	41,796	57,801	99,597	75.7%
후원 및 협찬	26,230	3,404	29,634	22.5%
조건부 기부	1,764	541	2,306	1.8%

*응답한 기업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임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조사의 의미
2. 조사결과의 의미
3. 정책적 시사점
4.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조사의 의미

□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

○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만큼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고 분권화가 가속화되는 등 예술지원의 체계와 규모가 크게 변화

–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예술지원기능이 생겼음

– 지방정부가 출연한 문화재단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계속 증가추세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외의 지원주체가 생겼으며 이들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생긴 것임

○ 공공부문은 전수조사

– 2012년 및 2013년을 기준으로 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등 5개 카테고리의 265개 예술지원기관의 세출예산을 전수조사

표 5-1 | 조사대상 기관

구분	지원기관	개수	비고
정부	중앙정부	1	문체부 외 타 부처는 별도 조사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228	
	소계	246	
소관기관	문체부 소관기관	7	
	시·도문화재단	12	
	소계	19	
계		265	

○ 민간부문은 기업공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부 분석을 통해 민간지원의 전체규모 도공부문은 전수조사

□ 예술지원의 체계와 구조의 파악

○ 예술지원은 다양한 지원주체가 참여하는 체계이며 구조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문도 선적(Linear) 구조가 아니라 작동체계가 다른 지원주체들이 다양하게 개입하여 때로는 협력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협업

– 그림 5-1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예술지원 흐름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임

○ 예술지원을 위한 재원의 출처와 실행의 관계 파악

– 재원의 출처부터 예술지원의 실행에 이르는 구조를 파악

○ 예술지원의 체계와 구조에서 다양한 문제점 파악

–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 목표별, 재원의 출처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있음

그림 5-1 | 공공 및 민간부문 예술지원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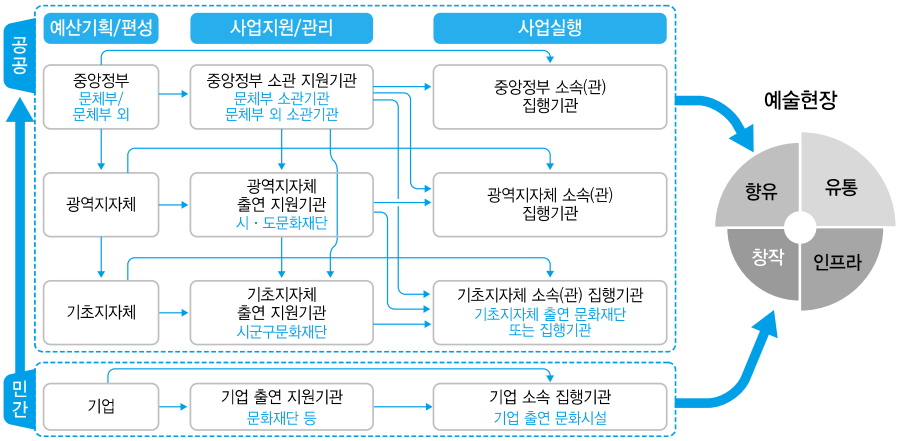

– 그림 5-2는 지원주체 중 문체부를 중심으로 문체부와 그 소관 지원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예술지원 사업의 흐름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임

그림 5-2 | 문체부를 중심으로 본 주요 예술지원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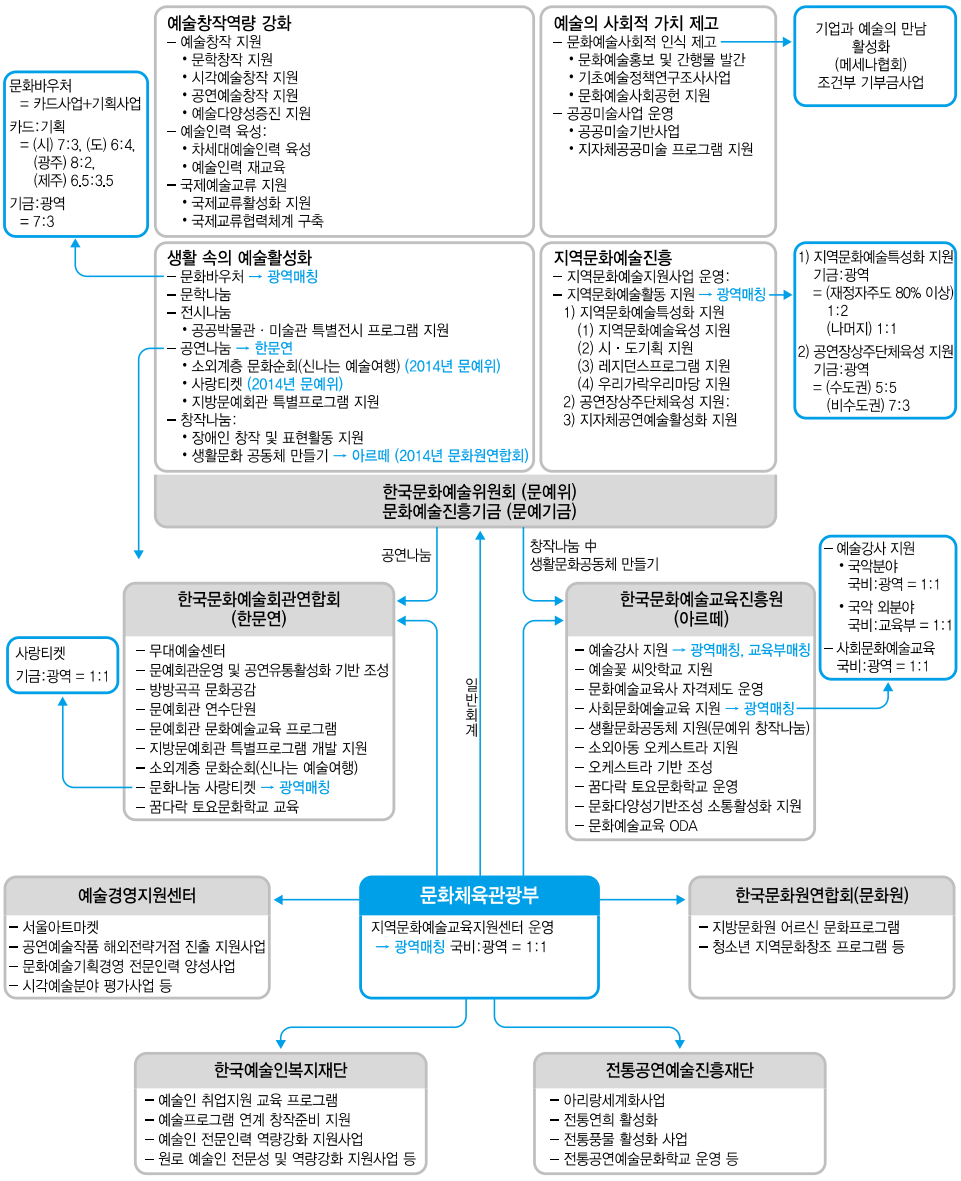

2. 조사결과의 의미

□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총규모는 2조 1,624억 원 (2013년 기준)

○ 우리나라 예술지원의 총규모는 2조 1,624억 원이며 이중 공공부문이 94%를 차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16배 많은 것으로 드러남

표 5-3 | 예술지원 총규모

(단위 : 백만 원)

구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지원규모	2,034,812	127,632

○ 공공부문의 예술지원사업에서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1조 6,831억 원을,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시·도문화재단이 3,518억 원을 집행

– 재원의 출처 측면에서는 문체부 37.4%, 광역자치단체 26.5%, 기초자치단체 33.5% 등으로 정부가 압도적

– 사업실행의 측면에서 보면 문체부 25.6%, 광역자치단체 19%, 기초자치단체 38.1%인 반면 문체부 소관기관이 9.5%, 시·도문화재단 7.8% 등으로 바뀜

– 이는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지만 실행은 지원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사업유형별로는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하드웨어 건립으로 공공부문에의 지출이 높음

□ 공공부문의 2013년과 2012년 지원 비교

○ 2013년 총 지원규모는 2조 348억 원으로 2012년 총 지원규모인 1조 8,355억 원에 비해 10.9% 증가함

그림 5-3 | 총 지원규모의 변화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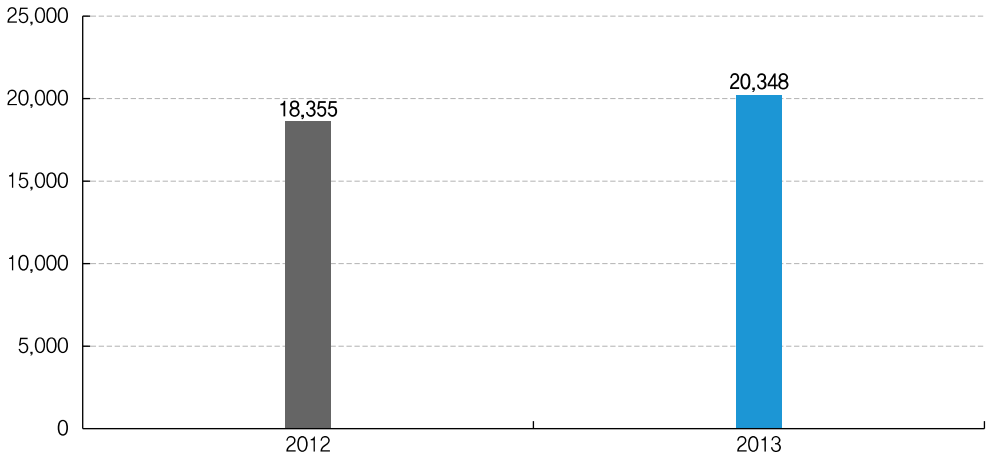

○ 모든 중분류 유형에서 2012년보다 2013년 증가함. 주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주체의 지원규모가 늘었음

그림 5-4 | 주체별 사업실행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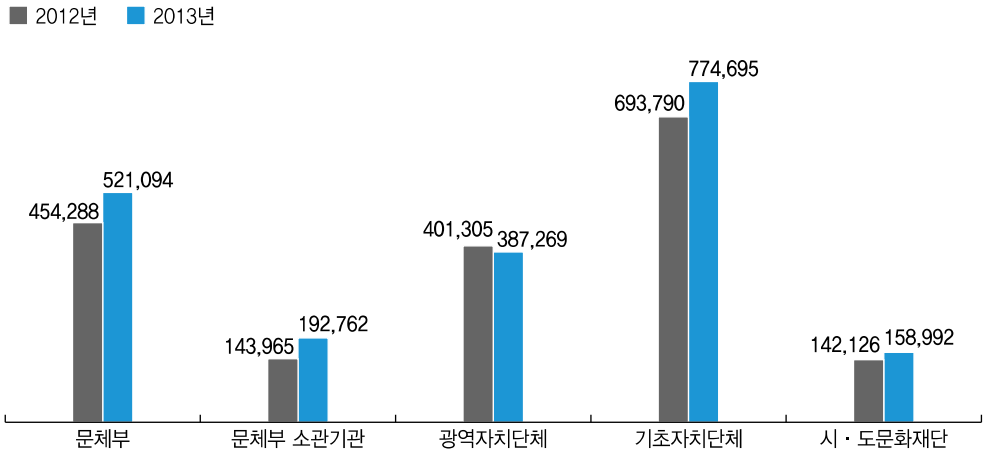

□ 공공부문에서 지원주체의 변화(2013년 기준)

○ '창작지원'의 주요 주체는 지방정부와 시·도문화재단으로 이동

그림 5-5 | 공공부문의 유형별 예술지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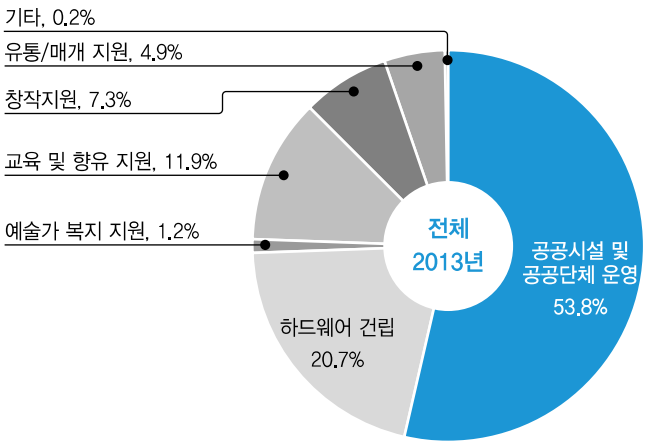

– 각 주체의 활동 중 창작지원의 비중으로 볼 때는 시·도문화재단〉문체부 소관기관〉광역자치단체〉문체부〉기초자치단체이며 지원규모로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문체부 소관기관〉시·도문화재단의 순임

표 5-3 | 공공부문 주체별 창작지원 현황

구분	주체	창작지원 비중(%)	창작지원(백만 원)
정부	문체부	6.7	50,757
	광역자치단체	10.3	62,703
	기초자치단체	6.6	51,139
소관기관	문체부 소관기관	14.9	41,569
	시·도문화재단	24.3	38,625

– '이전' 예산을 제외하면 문체부와 문체부 소관기관의 비중은 더 작아지므로 창작지원에서 지방정부 및 시·도문화재단의 비중은 훨씬 높아짐

○ '예술교육 및 향유'의 주요 주체는 문체부 소관기관 중심

– 예술교육 및 향유 지원사업은 예술지원사업 전체에서 12%를 차지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건립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임

– 문체부 소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문체부 소관기관이 시·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체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5-4 | 공공부문 주체별 교육 및 향유 지원 현황

구분	주체	예술교육 및 향유 지원 비중(%)	예술교육 및 향유 지원(백만 원)
정부	문체부	22.0	167,509
	광역자치단체	12.9	78,118
	기초자치단체	5.9	46,011
소관기관	문체부 소관기관	70.2	195,333
	시·도문화재단	47.2	75,120

□ 자체지출의 집중(2013년 기준)

그림 5-6 |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분포로 본 자체지출(이전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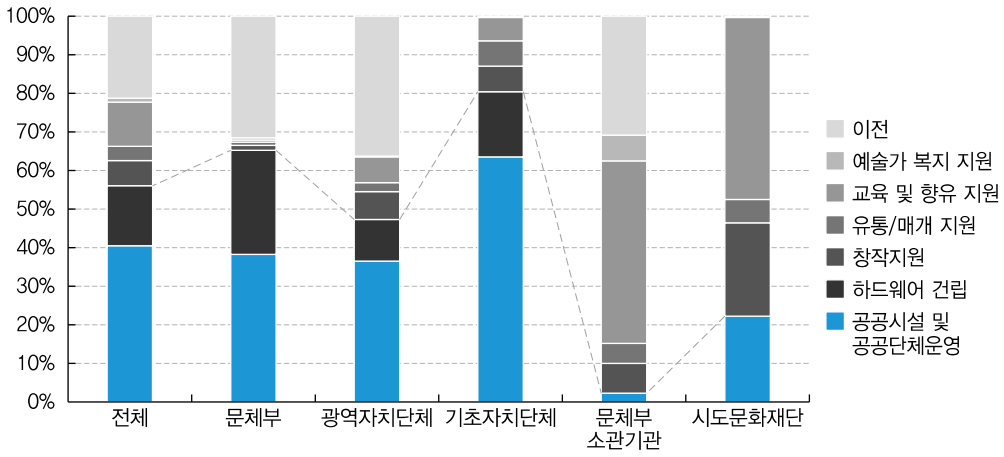

○ 공공부문에서의 자체지출은 56.1%

– 각 주체들이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공공부문의 시설, 단체를 운영하는데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은 56.1%(하드웨어 건립 15.5%,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 40.6%)

– 기초자치단체가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각 기초지자체가 건립, 운영중인 문예회관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

○ 민간부문에서의 자체지출은 59%

– 민간부문에서의 예술지원 중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기업이나 기업이 출연하는 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의미

그림 5-7 | 민간부문 예술지원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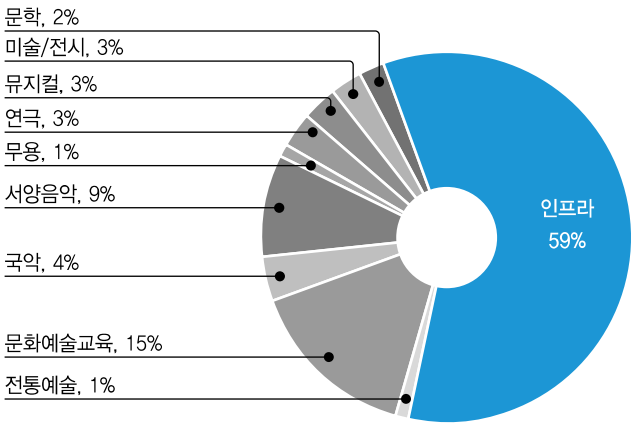

□ 공공부문에서 공공투입과 시장지원의 비중으로 보는 역할 구분

○ 공공투입 대 시장지원 비중 분석 결과 공공투입(74.5%)이 시장지원(25.5%) 보다 비중이 높음(이전금 제외한 총액 기준)

– 공공투입은 중분류 중 하드웨어 건립,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을 합한 1,516,234백만 원

– 시장지원은 그 외 창작지원, 유통/매개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 지원, 기타 유형을 합한 518,578백만 원임

그림 5-8 | 주체별 공공투입과 시장지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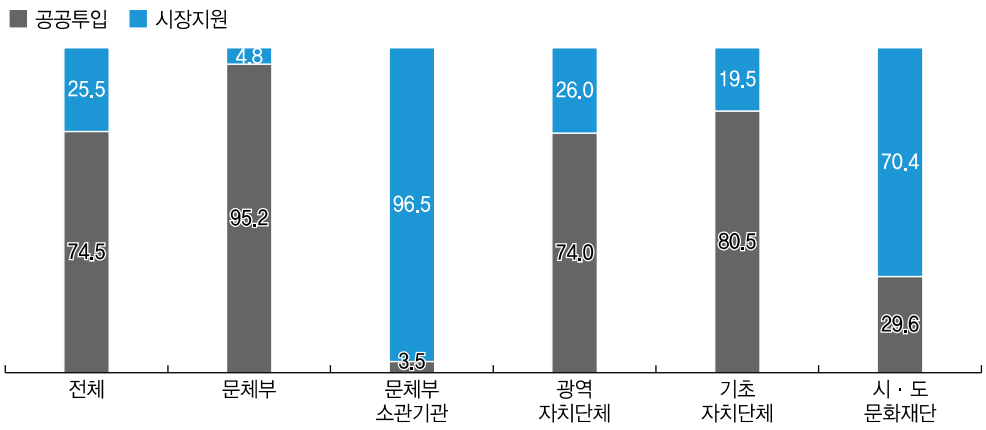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문체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공공투입이 시장지원 보다 많은 반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시·도문화재단은 시장지원이 공공투입 보다 많음

– 문체부는 직접실행 521,094백만 원 중 95.2%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4.8%가 시장지원임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직접실행 192,762백만 원 중 3.5%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96.5%가 시장지원임

– 광역자치단체는 514,135백만 원(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74%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26%가 시장지원임

–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실행 774,695백만 원 중 80.5%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19.5%가 시장지원임

– 시·도문화재단은 자체사업 32,126백만 원 중 29.6%가 공공투입이고 나머지 70.4%가 시장지원임

○ 주체별 시장지원 비중을 보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가장 높음

– 시장지원(518,578백만 원)은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35.9%, 기초자치단체가 29.1%, 광역자치단체가 25.8% 순으로 담당하고 있음

그림 5-9 | 주체별 시장지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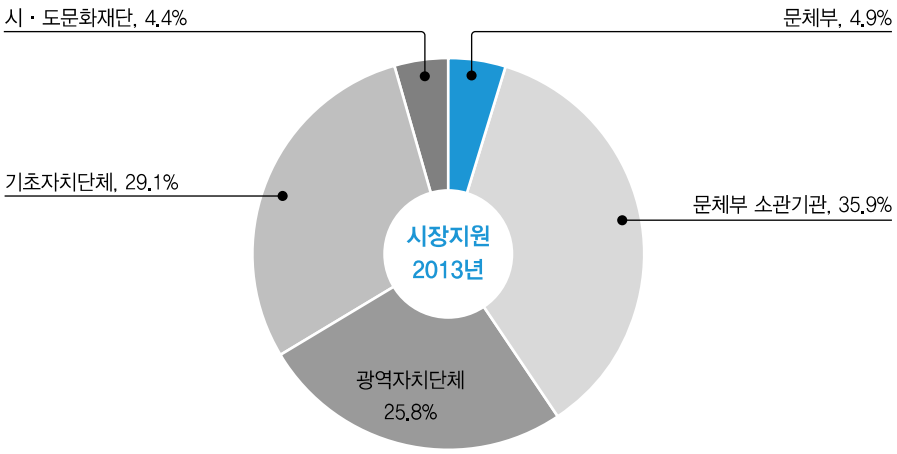

○ 이를 통해 예술지원의 역할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정부보다 정부가 출연한 소관기관이 예술시장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정부 중에서도 문체부는 역할 관계가 분명하지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의 조성과 지원사업의 실행이 아직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은 상태임. 과도기적인 현상일지 정부 수준에 따른 속성의 차이인지는 더 지켜볼 사항임

□ 민간부문의 주체 중 기업과 재단은 비슷함

그림 5-10 | 기업과 재단 지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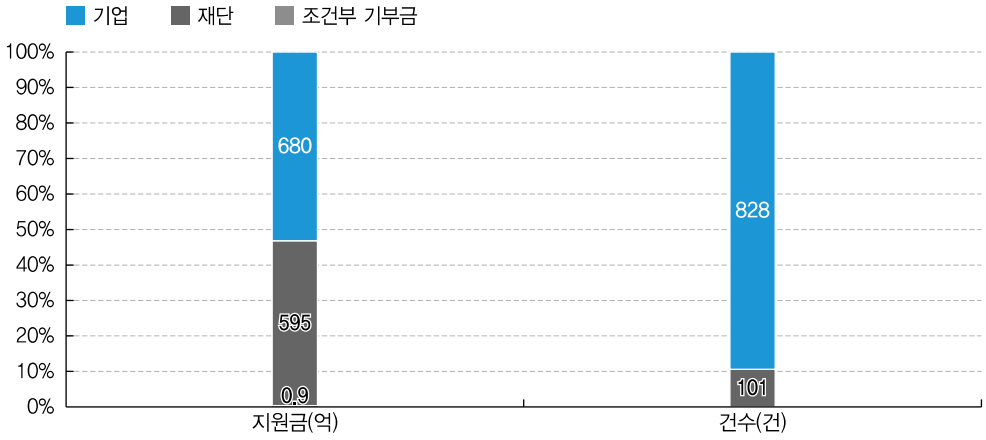

○ 민간부문에서 예술지원주체는 기업과 기업이 출연한 재단이 가장 중요
- 2013년 규모기준으로 기업이 53.3%이고 재단이 46.6%
- 건수 기준으로는 기업이 압도적이나 지원금 기준으로는 재단과 엇비슷

○ 민간부문에서 예술지원의 주체간의 관계는 공공부문의 주체의 구조와 관계와는 다름
- 공공부문은 상호보완적 관계지만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관련성 작음
- 재단은 하드웨어 지원 비중이 높으나 기업은 소프트웨어 지원 비중이 높음

□ 공공부문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 비교(2013년 기준)

○ 공공부문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을 비교해 보면 하드웨어 사업(60%)이 소프트웨어 사업(40%) 보다 많음
- 하드웨어 사업은 중분류 중 하드웨어 건립과 하드웨어 운영 중 소분류에서 공연장운영, 미술관운영, 기타기반시설운영을 합한 1,220,778백만 원
-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 외 유형을 합한 814,034백만 원임

그림 5-11 | 주체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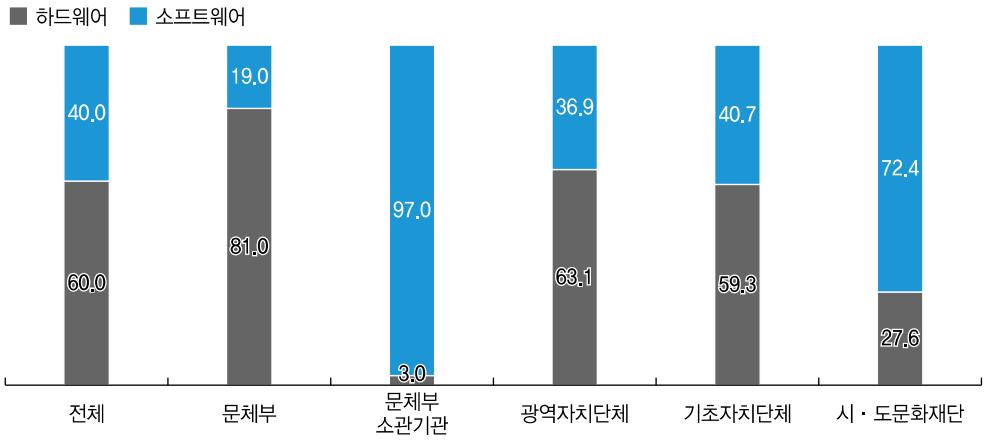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문체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하드웨어 사업이 소프트웨어 사업 보다 많은 반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시·도문화재단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 보다 많음

– 문체부는 직접실행 521,094백만 원 중 81%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19%가 소프트웨어 사업임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직접실행 192,762백만 원 중 3%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97%가 소프트웨어 사업임

– 광역자치단체는 514,135백만 원(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63.1%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36.9%가 소프트웨어 사업임

–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실행 774,695백만 원 중 59.3%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40.7%가 소프트웨어 사업임

– 시·도문화재단은 자체사업 32,126백만 원 중 27.6%가 하드웨어 사업이고 나머지 72.4%가 소프트웨어 사업임

□ 공공부문에서 하드웨어 건립지원과 운영지원 비교(2013년 기준)

○ 하드웨어를 건립하는데 지원되는 규모(34.5%)에 비해 운영에 지원되는 규모(65.5%)가 훨씬 큼

– 하드웨어 건립은 중분류 중 하드웨어 건립인 421,425백만 원이고

– 하드웨어 운영은 중분류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중 소분류가 공연장운영, 미술관운영, 기타기반시설운영을 합한 799,353백만 원임

– 하드웨어 건립의 추세에서 운영쪽으로 비중이 이동하였음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5-12 | 주체별 하드웨어 건립과 하드웨어 운영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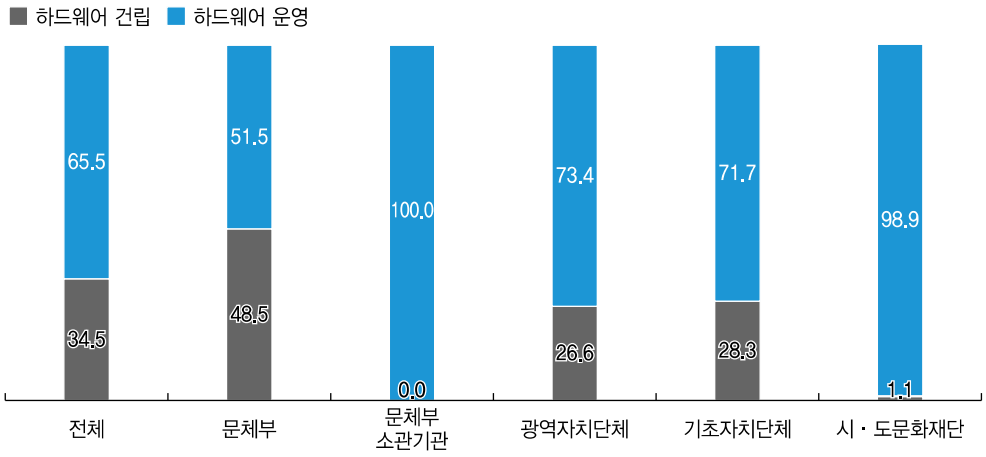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모든 주체에서 하드웨어 건립 보다는 하드웨어 운영이 많으나, 문체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드웨어 건립 비율이 어느 정도 있고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과 시·도문화재단은 하드웨어 건립이 거의 없음

– 문체부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 사업 422,216백만 원 중 48.5%가 하드웨어 건립이고 나머지 51.5%가 하드웨어 운영임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 사업 5,773백만 원 모두 하드웨어 운영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 사업 324,303백만 원(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26.6%가 하드웨어 건립이고 나머지 73.4%가 하드웨어 운영임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하드웨어 관련 사업 459,608백만 원 중 28.3%가 하드웨어 건립이고 나머지 71.7%가 하드웨어 운영임
– 시·도문화재단의 경우 자체사업 중 하드웨어 관련 사업 8,878백만 원 중 1.1%가 하드웨어 건립이고 나머지 98.9%가 하드웨어 운영임

○ 지원주체별로 보면 하드웨어 건립/운영/지원(1,237,759백만 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37.4%, 문체부가 34.2%, 광역자치단체가 26.9% 순으로 담당하고 있음

그림 5-13 | 주체별 하드웨어 건립/운영/지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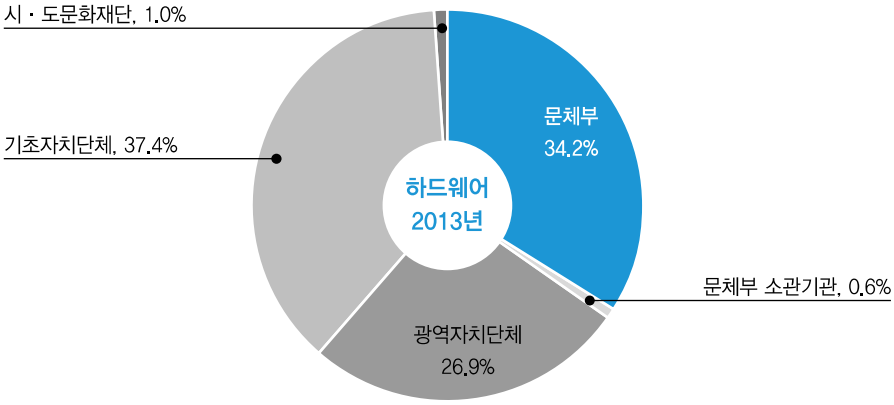

○ 지원주체별로 보면 소프트웨어(814,034백만 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38.7%, 광역자치단체가 23.3%,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이 23%, 문체부 12.1% 순으로 담당하고 있음

그림 5-14 | 주체별 소프트웨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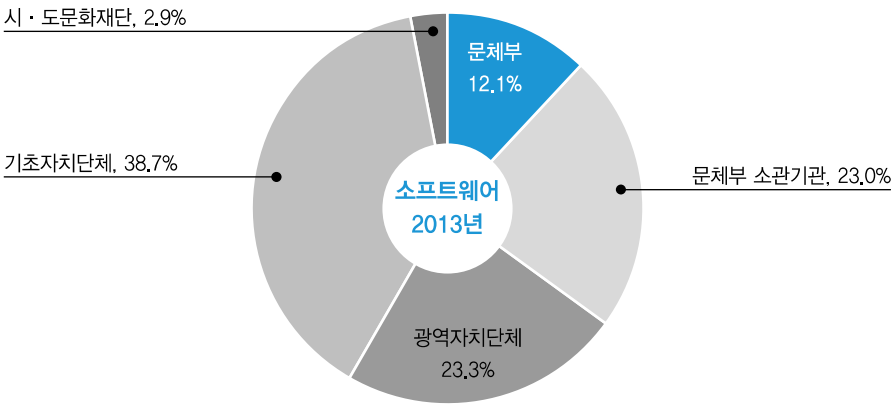

□ 공공부문에서 축제운영과 축제지원 비교(2013년 기준)

○ 공공에 해당하는 축제운영(55.8%)이 민간지원에 해당하는 축제지원(44.2%) 보다 다소 많음

– 축제운영은 중분류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지원 중 소분류가 축제운영인 60,499백만 원임

– 축제지원은 중분류 유통/매개 지원 중 소분류가 축제지원인 47,908백만 원임

그림 5-15 | 주체별 축제운영과 축제지원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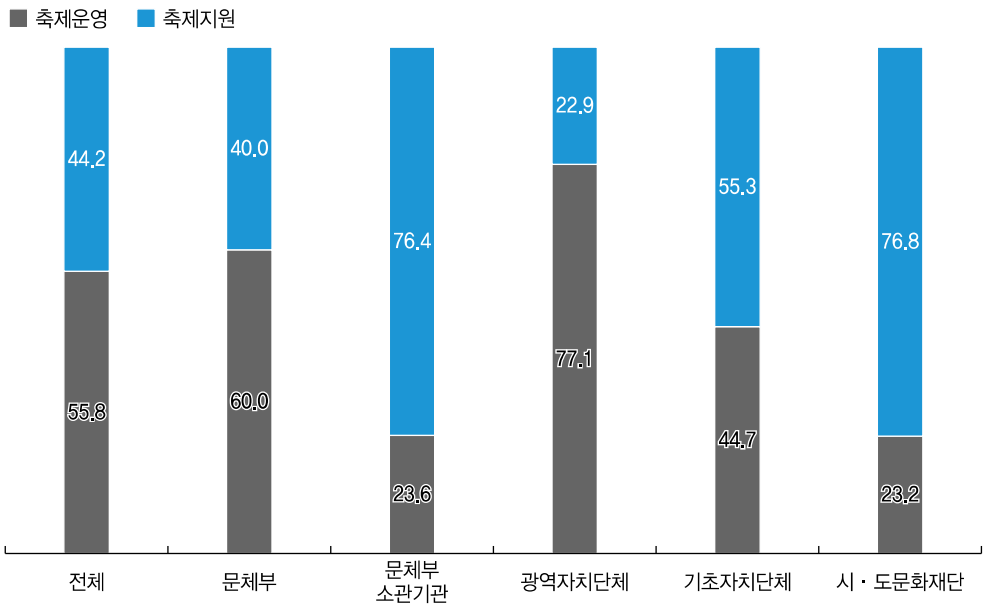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문체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운영이 축제지원보다 더 많으나,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기초자치단체, 시·도문화재단은 축제지원이 축제운영보다 많음

– 문체부는 축제운영 및 지원사업 5,880백만 원 중 60%가 축제운영이고 나머지 40%가 축제지원임

–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은 축제운영 및 지원사업 2,122백만 원 중 23.6%가 축제운영이고 나머지 76.4%가 축제지원임

– 광역자치단체는 축제운영 및 지원사업 37,598백만 원(시·도문화재단 위탁/이전 금액 포함) 중 77.1%가 축제운영이고 나머지 22.9%가 축제지원임

– 기초자치단체는 축제운영 및 지원사업 60,053백만 원 중 44.7%가 축제운영이고 나머지 55.3%가 축제지원임

– 시·도문화재단은 자체사업 중 축제운영 및 지원사업 2,754백만 원 중 23.2%가 축제운영이고 나머지 76.8%가 축제지원임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축제의 대부분(90.1%)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그림 5-16 | 주체별 축제운영/지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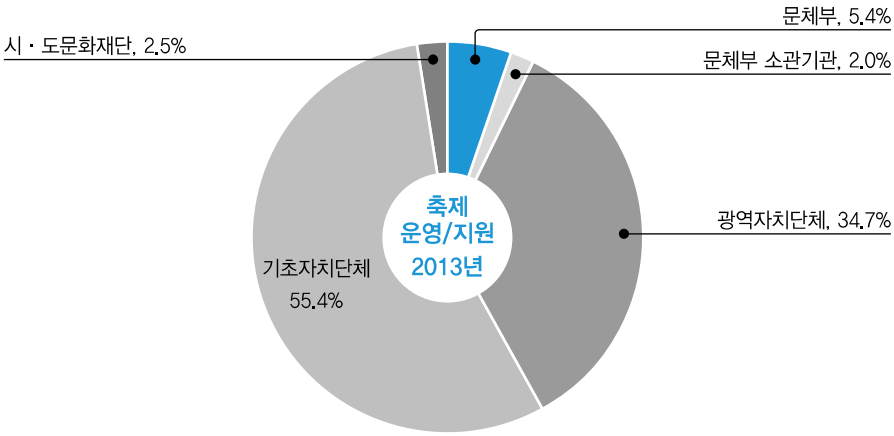

○ 이전에 따른 중복을 제외하고 직접 실행만 분석해 보면, 축제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108,407백만 원 중 55.4%가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고, 34.7%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지원주체 간의 공조와 협업 강화 필요

○ 예술지원의 주체는 중앙정부부터 기초지자체까지 세 단계의 정부와 각 정부가 출연한 지원기관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임

– 지방정부가 출연한 지원기관은 통합적 지원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예, 문화재단) 중앙정부 소관 지원기관은 영역별로 운영

○ 예술지원사업 중 지역협력형 사업 등 협업이 필수적인 사업과 정책이 늘어가고 있음

– 사업주체간의 전달체계의 재검토를 통해 공조와 협업 촉진

○ 지원주체간의 공조와 협업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주체간의 네트워킹(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한국메세나협회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 다른 속성을 가진 지원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 등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어야 함

○ 지원주체간에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조와 협업 촉진

□ 지원사업의 균형 도모

○ 예술지원사업은 건강한 예술생태계의 조성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의 달성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필요 있음

○ 현재 지원사업은 영역별로는 자체지출의 비중이 높은 편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자체시설, 단체를 운영하는데 투입하는 드는 예산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

– 이에 비해 창작지원과 예술가 복지 등에 투입되는 재원은 작은 편임
– 예술지원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전망과 정책적 목표 공유 필요
– 지원사업의 균형적 분포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움
– 지원주체간에 정책적 목표와 장기적인 전망을 공유하여 지원정책 구조 자체를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예술지원의 재원의 확충
○ 현재 공공부문의 예술지원 예산에 비해 민간부문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민간재원을 늘려야함
– 민간부문의 예술지원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함
– 단순히 민간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민간부문의 재원이 예술계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공공부문에서는 문예진흥 등 기금의 고갈에 대비한 대체재원을 찾아야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도 돌파구가 필요함
– '문화재정 2%' 방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지방의 예술재정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전망

□ 지원시스템의 개선
○ 예술지원제도의 시스템 확보가 급선무임
– (예술지원제도의 방향성) 전체적인 방향성 뿐 아니라 각 사업의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
– (예술지원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예측가능한 제도운영 필요
– (예술지원제도의 보완성) 영역별, 주체별 연관성과 보완성을 인정
– (예술지원제도의 효과성) 효율과 효과, 성과 측면에서 검토
○ 예술지원제도의 시스템은 개별 사업단위와 전체 생태계 차원에서 재설계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지원주체가 참여하는 예술지원제도는 각 주체들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고 전제로 함

4.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 지속적 조사의 필요
○ 우리나라 예술지원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필요
– 지속적으로 관찰할 경우 예술분야의 이슈와 정책적 관심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 등 민간부문의 관심 유도 가능
– 기업과 개인,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필요

□ 조사의 어려움
○ 조사대상의 범위의 생경함
– 현재의 예술지원기관의 체계와 이 조사는 일치하지 않음

– 이 때문에 예술의 범위, 지원의 범위, 장르, 수혜자 등 기본적인 개념과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따라서 각 주체들간에 공유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움

○ ‘예술’의 영역의 변화

–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과 같이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 있어 단순히 예술지원으로 묶기는 어려움

– 이러한 추세는 예술의 편익확대와 함께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예산 규모 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지속적 조사를 위한 장치 필요

○ 매년 실시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실태조사’와 같이 매년 조사하되 격년으로 주제별 조사 실시

– 기본조사는 예술지원사업의 전체 규모 파악을 위함

– 주제별 조사는 예술지원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주제를 설정하여 집중 조사. 예) 예술지원 개별 사업의 중복성 파악

○ 조사를 위한 체계 마련

– 전체 예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목표와 재원, 속성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범위를 명확하게 재조정 : ‘예술’, ‘지원’, ‘장르’, ‘수혜자’, ‘재원’ 등

– 특히 예술을 활용한 연관 사업도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수혜자 조사와 효과성 분석 강화

– 수혜자 측면의 조사가 대폭 보완되어야 함

– 수혜자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혜자를 조사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 파악에 기여

표 5-5 | 예술지원사업의 1차 및 2차 수혜자(안)

사업	1차 수혜	2차 수혜
창작지원	예술인수 예술단체수	관객수
예술교육	교육대상자수	예술강사수
예술향유	향유자수	예술인수 예술단체수
예술인 복지	예술인수	없음

○ 조사의 주체는 공동

–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가 주동이 됨

– 필요에 따라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등과 같은 지원주체 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

붙임 1. 공공기관 예산서 조사대상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1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1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단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	4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중구	21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충청남도	천안시	
				당진시	
			전라북도	전주시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재단(레벨2)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207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중구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	안산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전라북도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1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레벨2)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레벨2	중앙정부소관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레벨	정부수준	세부 구분	조사대상기관		기관수
레벨2	중앙정부소관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기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원연합회	
	시·도문화재단	시·도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12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참고문헌

김세훈(2014) 지역문화진흥과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대회

김소영, 안성아, 장대철(2013), 예술기반창조경영의 개념과 유형, 문화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남기범, 한동우(2014),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자원봉사 지수 발표, 기부문화 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4

박윤환(2012),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50권 제2호

아름다운재단(2012), 기빙 코리아

전국경제인연합회(2012), 사회공헌백서

한국메세나협회(2013),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3).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1),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2013), 중견·중소기업 사회공헌백서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발행일 2015년 1월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문의 061-900-2293
홈페이지 http://www.arko.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본 통계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의 승인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무단복제나 도용은 저작권법(제7조 5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Copyright(c)2015 by Arts Council Korea and Korea Network for Arts and Culture. All contents can 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2012-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